

01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정책연구

arts change the world

예술인 
복지모델
세부설계
연구

/ 2009. 08

예술인 복지모델 세부설계 연구

2009년 8월 인쇄

2009년 8월 발행

발행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편 집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110-766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숭동 대학로 100

전화 02-760-4500

팩스 02-760-4600

www.arko.or.kr

메일 arko@arko.or.kr

본 보고서는 무단전제를 금하며 가공 및 인용시 반드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인 복지모델 세부설계 연구라고
밝히셔야 합니다.

예술인 복지모델 세부설계연구에 관한 문의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예술인 복지모델 세부설계 연구

/ 2009. 08

제 출 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귀하

본 보고서를 예술인 복지모델 세부설계 연구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09년 8월 10일

주관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책임자 : 김태완

연구 원 : 원종욱, 이태진, 박영정, 김문길, 전지현

목 차

요 약	13
제1장 서 론	25
제1절 : 연구필요성 및 목적	26
1. 연구필요성	
2. 연구목적	
제2절 : 연구내용	28
1. 예술인 복지모델 가입기반 구축을 위한 방안 제시	
2. 유니버설 복지모델의 구체화를 통한 복지상품(안) 개발 및 분석	
3. 예술인 복지모델 관리운영체계 설계	
4. 예술인 복지모델 자산운용 및 재정확보 방안 분석	
5. 예술인 복지모델 운영을 위한 규정 정비 방안	
제3절 : 연구방법 및 기대효과	30
1. 연구방법	
2. 기대효과	
제4절 : 예술인 복지사업을 위한 노력	31
제5절 : 해외 사례	33
1. 독일 예술가사회보험제도	
2. 일본의 예능인 연금제도	
3. 미국의 예술인 길드	
4. 프랑스의 예술인 사회보장제도	

제2장	예술인 복지모델 가입 기준 설정	53
	제1절 : 예술인 복지모델 가입범위 및 규모	54
	1. 예술인 공제사업의 가입 대상 범위	
	2. 예술인 공제사업 가입 기준 및 절차	
	3. 예술인 공제사업 가입자 추정	
	제2절 : 예술인 공제사업 가입방안 및 저소득 예술인 지원방안	71
	1. 예술인 가입유도 방안	
	2. 저소득 문화예술인 복지모델 가입방안 및 지원방안	
	3. 고령예술인 공제사업 가입방안	
제3장	예술인 복지모델 (복지)공제상품 설계	77
	제1절 : 공제상품 설계의 기본 아이디어 - 유니버설 보험	78
	1. 유니버설 보험의 도입배경 및 개요	
	2. 유니버설 복지모델의 구체화를 통한 복지상품(안) 개발 및 분석	
	3. 다른 공제회 주요 운영상품	
	제2절 : 보장성 상품(안)	93
	1. 보장성 상품 제안의 배경	
	2. 보장성 상품 설계(안)	
	제3절 : 적립성 상품(안)	100
	1. 적립성 상품 제안의 배경	
	2. 적립성 상품 설계(안)	
	3. 적립성 상품 운영에 있어서 고려할 사항	
	제4절 : 중장기 예술인 복지모델 추진전략 및 로드맵	113
	1. 실업공제부금 개발	
	2. 기타 공제사업 개발	
	3. 공제사업 서비스 확대	

제4장	예술인복지모델 관리운영체계	123
	제1절 : 공제상품 공제금 납부 및 지원방안	124
	제2절 : 기존 공제회 조직	127
	1. 중소기업중앙회(노란우산공제)	
	2. 건설근로자 공제회	
	3. 과학기술인공제회	
	4. 시사점	
	제3절 : 예술인 복지모델 관리운영체계 제시	135
	1. 개요	
	2. 예술인 공제운영위원회	
	3. 예술인 공제사업본부	
	4. 예술인 공제사업 전달체계	
제5장	예술인 복지모델 재정운용 방안	149
	제1절 : 예술인 복지모델 정착을 위한 정부 역할과 지원방안	150
	1. 다른 공제회 출자금 및 부담금 현황	
	2. 재정확보 방안	
	제2절 : 예술인 복지모델 중장기 현금흐름 및 자산운용방안	156
	1. 예술인 복지모델 중장기 현금흐름분석	
	2. 예술인 복지모델 자산운용의 원칙과 성과평가 방안	

제6장	예술인 복지모델 운영을 위한 규정 정비 방안	171
	제1절 : 배경	172
	제2절 : 예술인 공제사업 법안	174
	1. 개요	
	2. 법안 초안	
	3. 시행령 초안	
제7장	결론	183
	참고문헌	189
	부록	191
	<부록 1> 예술인 복지관련 과거 논의 현황	192
	<부록 2> 예술인 공제 정관(안)	193
	<부록 3> 예술인 공제사업 약관(안)	199
	<부록 4> 직업분류 및 위험등급표	209

요약

1. 서론
2. 예술인 복지모델 가입 기준 설정
3. 예술인 복지모델 (복지)공제상품 설계 및 발전방안
4. 예술인 복지모델 관리운영체계
5. 예술인 복지모델 법(안) 규정

요약

1. 서론

- 문화예술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은 화려하거나, 일반 직종에 비해 독특한 특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임. 따라서 일반인들은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이 문화예술의 모든 것으로 생각하고 있음
 - 많은 문화예술 종사자들의 경우 산업적인 특성으로 인해 대부분의 문화예술인들은 부정기적인 고용계약과 근로활동에 따른 안정적인 임금경로 획득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일반 근로자들과 달리 4대 사회보험으로부터도 소외되어 있는 실정임
- 신정부들어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생활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예술인 공제회 설립은 국정과제로 선정된 바가 있음
- 예술인 공제사업은 문화예술인들이 겪고 있는 사각지대, 특히 노후소득보장에 있어서의 소득의 불충분성, 불연속성으로 인한 문제를 방지할 수 있음
 - 60세이후 문화예술인들이 은퇴시 국민연금에 대한 가입율이 낮고, 가입해도 충분한 연금가입기간을 확보할 수 없고 낮은 보험료로 인해 노후 소득이 낮아질 수 있음
 - 따라서 예술인 공제사업을 통해 노후소득보장에 있어 소득의 부족현상 즉, 소득 불충분성을 일부나마 해소할 수 있을 것임
 - 두 번째 문화예술인들은 근로자들과 달리 소득활동이 주기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며, 소득이 불연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많은 예술인들이 연금의 사각지대에 놓여져 있음
 - 예술인 공제사업의 경우 예술인들의 직업적 특성을 고려한 유니버설공제(자유납 형식)형태로 제도설계가 이루어짐으로써 문화예술인들의 불연속적인 소득활동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본 연구에서는 2008년 “예술인 복지증진을 위한 공제제도 도입방안”에서 연구된 예술인 공제회의 기본 골격을 기초로 예술인 공제회 운영을 위한 세부설계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 이를 통해 문화예술인들을 위한 기본적인 사회안전망을 구상해 볼 수 있을 것임

요약

- 문화예술인들의 작업환경이 개선됨으로써 중장년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문화산업에 종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함으로써 세대간 문화예술의 노하우가 이전되고 발전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임

2. 예술인 복지모델 가입 기준 설정

-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에서는 ‘문화예술’을 정의하면서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의 10개 장르를 열거식으로 제시한 바 있음
 - 예술인 공제사업에서는 제1단계로 논란의 여지가 없는 10개 장르를 대상 범위로 하여 출범을 하고, 이후 제2단계로 공예, 디자인, 만화, 곡예, 비보이 등의 장르 영역까지 그 대상을 확대해 나가는 방안이 현실적·실용적 방법임
- 예술인 공제사업에서는 작가, 화가, 조각가, 작곡가, 안무가 등 창작예술가와 배우, 무용수, 성악가, 연주자 등 실연예술가를 제1차적 가입 대상으로 설정할 수 있음
 - 예술에 대한 조사 연구 인력, 예술 프로그램 기획 인력, 공연이나 전시 관련 기술 인력, 예술 단체 및 기관의 행정 인력 등은 넓은 의미의 예술 생태계를 떠받치는 인력군이므로, 예술인 공제사업 구성에서 함께 고려해야 할 대상임

가. 예술인 공제사업 가입 범위(안)

- 현단계에서 예술인 공제사업의 가입 대상으로 분류되는 범위는 문예진흥법 제2조의 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등 10개 장르에서 활동하고 있는 창작예술가와 실연예술가, 예술교육가 등의 예술인과 기획경영 스태프, 기술 스태프, 행정관리인력 등 예술활동 지원 인력으로 함
 - 다음 단계로 곡예, 공예, 만화, 디자인, 비보이 등이 있으며, 만약 해당 장르가 예술인 공제사업 가입 범위로 확정되면, 10개 장르와 마찬가지로 해당 장르에서 활동하는 창작예술가와 실연예술가, 예술교육가 등의 예술인과 기획경영 스태프, 기술 스태프, 행정관리인력 등을 모두 가입 범위로 포함함

요약

- ‘예술 강사’와‘예술 시간강사’ 외의 예술교육가, 즉 예술 교수, 예술 교사, 예능강사에 대해서는 별도의 논의 과정을 거쳐 가입 범위로 수용할 수 있음

나. 예술인 공제사업 가입 기준

□ 사업체별 접근 방식에서는 예술인 공제사업 사무국에서 해당 사업체가 예술 산업체임을 인증하는 절차와 그 업체에 소속된 예술인 및 관련 종사자가 예술인 공제사업에 가입을 신청하는 두 단계로 나누어 진행될 수 있음

- 사업체 인증 단계에서는 업체에서 법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인적 사항, 업태 및 업종, 설립 연도, 설립 목적, 주요 사업 내용 등의 내용을 탑재한 신청서를 제출하면, 예술인 공제사업 사무국에서 대상 업체로서의 자격 여부를 결정한 후 인증 단체 리스트에 등재하여 공시
- 예술 산업 사업체가 리스트에 등재되었다고 하여 예술인 공제사업에 사업체 단위의 단체 가입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며, 예술인 공제사업의 가입 형식은 철저하게 개인별 가입을 원칙으로 함

□ 개인별 접근 방식에서는 ①예술소득, ②관련 자격증 및 수상 실적, ③예술 활동 실적을 기준으로 소정의 심사 절차를 거쳐 가입 자격 여부를 판정하도록 하며, 예술 관련 협회의 멤버십이나 예술계열 교육기관 수료를 나타내는 학력 등은 자격 요건에 포함하지 않음

- 예술소득은 최근 3년간 1회 이상 국세청에 자영예술가로 소득신고를 한 예술인 및 스태프로서 예술소득이 연평균 100만원 이상인, 최근 3년간 1회 이상 예술 프로젝트 관련 국고나 지방비 및 문예진흥기금 수혜 실적이 있는 경우
- 전문적인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거나 수상실적이 있는 예술인의 경우 가입 자격 부여
- 예술 활동 실적에 의한 가입 자격은 최근 3년간 일정 수준 이상의 활동 실적을 가지고 있는 예술인의 경우 관련 증빙 자료를 제출한 후 ‘자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가입 자격을 인정

요약

3. 예술인 복지모델 (복지)공제상품 설계 및 발전방안

가. 예술인 복지모델 공제상품

□ 예술인들의 욕구를 반영하여 공제상품은 크게 보장성 상품(상해보장측면)과 적립성 상품(노후연금측면)으로 구성됨

- 보장성 상품은 사망, 상해사망, 후유장해 및 의료실비 등을 지원하고, 공제사업 가입과 동시에 제공되는 공제사업의 보편적 공제상품임
- 적립성 상품은 노후 소득보장의 개념으로 본인이 납입한 공제부금과 이를 운용하여 발생한 수익을 더하여 향후 60세 이후에 일시금 또는 연금의 형태로 급여를 수령하는 상품임

□ 보장성 상품의 구성

- 본 연구에서는 상해사망은 유지하되, 예술인들의 활동과 관련된 위험종류를 확대하여 상해로 인한 후유장해와 상해의료비를 추가
- 보장수준은 상해사망은 2천만원, 상해후유장해는 1천만원, 상해의료비는 50만원, 100만원과 150만원 세 종류로 구성
- 보장성 공제상품의 첫 번째 플랜은 상해사망금 2,000만원과 상해후유장애 1,000만원, 상해활동지원비 50만원을 보장하는 것임
 - 위험률을 기준으로 1인당 보험료는 약 33천원(연간)수준이며, 이를 기준으로 초년도 총보험료는 약 6억 61백만원이 소요됨
- 보장성 공제상품의 두 번째 플랜은 첫 번째 플랜과 동일하지만 상해활동 지원비를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조정한 것임
 - 위험률을 기준으로 1인당 보험료는 약 43천원 수준이며, 이를 기준으로 초년도 총보험료는 약 8억 57백만원이 소요됨
- 보장성 공제상품의 세 번째 플랜은 첫 번째, 두 번째 플랜과 동일하지만 상해활동 지원비를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상향조정한 것임
 - 위험률을 기준으로 1인당 보험료는 약 45천원 수준이며, 이를 기준으로 초년도 총보험료는 약 9억 11백만원이 소요됨

요약

- 예술인들의 경우 본인들이 활동하고 있는 영역에 따라 보장성 상품에 대한 욕구가 달리 나타날 수 있음
- 예를 들어 연극, 무용수 등 활동이 많은 예술인들의 경우 상해활동지원비에 대한 욕구가 높을 수 있는 반면에 미술가, 작곡가, 시인 등은 상해활동지원비보다는 상해사망에 대한 욕구가 높을 수 있음
 - 분석결과 상해사망금을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조정시 보험료는 33,791원 수준이며, 연간소요예산도 6억 75백만원으로 상해활동지원비 상향시의 약 8억 6천만원, 8억 7천만원에 비해서는 낮다는 것을 볼 수 있음
 - 상해사망금을 4천만원으로 좀 더 높일 경우 1인당 보험료는 37,791원이며, 연간 총보험료는 약 7억 56백만원 수준으로 분석됨
- 적립성 상품의 구성
- 예술인 공제사업에서 국민연금 가입기회를 갖지 못한 예술인(무연금), 가입자라 하더라도 납부예외 기간이 길어 수급권 확보가 쉽지 않은 예술인(무연금), 가입기간을 채워 수급권 확보가 가능하더라도 낮은 신고소득으로 인한 적정한 연금액을 확보하기 어려운 예술인(저연금)을 대상으로 노후소득보장 지원
 - 지원방식은 예술인 스스로가 자신의 노후를 대비할 수 있도록 개인연금형 상품을 운영하고 정부가 개인이 납부하는 공제부금에 일정정도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함
 - 공제부금에 대한 정부지원 방식은 세 가지로 고려할 수 있음
 - (1안) 기준소득(35등급) 이하 자에 대해서, 저소득일수록 보조율을 높게 하되 보조율의 증가율이 커지도록 하는 방식
 - (2안) 기준소득(35등급) 이하 자에 대해서, 저소득일수록 보조율을 높게 하되 보조율의 증가율을 일정하게 하는 방식
 - (3안) 전체 소득등급자에 대해서 저소득일수록 보조율을 높게 하되 보조율의 증가율을 일정하게 하는 방식
 - 1안에 따른 개인별 연금수지의 시뮬레이션 결과 5등급 이하자의 경우 45.0%의 보조율을 적용함에 따라 20년 가입기간 동안 매년 140천원의 보조금을 받게 되며, 60세 이후부터 20년간 매월 84천원의 급여를 수급할 수 있게 됨

요약

- 보조금 지원 기준소득인 35등급자는 12.8%의 보조율에 따라 20년간 매년 337천원의 보조금을 받게 되며, 60세 이후부터 20년간 매월 551천원의 급여를 지급할 수 있게 됨
- 2안에 따른 개인별 연금수지의 시뮬레이션 결과 5등급 이하자의 경우 25.2%의 보조율을 적용함에 따라 20년 가입기간 동안 매년 79천원의 보조금을 받게 되며, 60세 이후부터 20년간 매월 73천원의 급여를 지급할 수 있게 됨
 - 보조금 지원 기준소득인 35등급자는 19.8%의 보조율에 따라 20년간 매년 520천원의 보조금을 받게 되며, 60세 이후부터 20년간 매월 585천원의 급여를 지급할 수 있게 됨
- 3안에 따른 개인별 연금수지의 시뮬레이션 결과 5등급 이하자의 경우 5.6%의 보조율을 적용함에 따라 20년 가입기간 동안 매년 17천원의 보조금을 받게 되며, 60세 이후부터 20년간 매월 61천원의 급여를 지급할 수 있게 됨
 - 보조금 지원 기준소득인 35등급자는 4.4%의 보조율에 따라 20년간 매년 116천원의 보조금을 받게 되며, 60세 이후부터 20년간 매월 510천원의 급여를 지급할 수 있게 됨
 - 최고소득등급인 45등급자는 4.0%의 보조율에 따라 20년간 매년 173천원의 보조금을 받게 되며, 60세 이후부터 20년간 매월 835천원의 급여를 지급할 수 있게 됨

나. 중장기 예술인 복지모델 발전방안

□ 고용보험 보험료 지원방안

- 고용보험제도는 근로자들이 실업을 당했을 경우 실업급여를 통해 일정기간 생활유지가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제도임
- 예술인 공제사업 가입자중 실업급여의 기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예술인을 대상으로 노동부와 협의를 통해 최소가입기간까지 보험료를 대납해주는 제도를 도입
 - 납입보험료 수준은 기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퇴직전 보험료를 지원하며, 고용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고용보험가입자

요약

의 평균보험료 수준으로 보험료 납입

□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방안

- 장기적으로 예술인 공제사업 가입자들이 최소한의 국민연금 가입기준(10년)을 가질 수 있도록 본인들이 납부한 보험료에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
 - 지원방안은 두가지로 본인의 국민연금 보험료 전액을 대출의 형태로 인출하여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과 본인부담금의 50%만을 지원하는 방안임
 - 이를 통해 우선적으로 정부가 운영하는 사회보험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유도 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 예술인들의 노후생활 안정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임

□ 예술인 공제사업 가입자중 저소득 예술인 배우자 및 자녀들을 위한 보장성보험 (Micro insurance) 가입유도

- 장기적으로 주소득자이외에 가구원의 질병으로 인한 의료비증가로 인해 가구의 생계유지가 어려울 것을 대비하여 예술인 공제사업 가입 예술인 이외에 저소득 예술인 가족에 한해 공제사업중 하나인 보장성 보험 가입을 지원
- 지원대상과 금액은 초기 채원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익과 공제사업의 수익사업 (예술작품, 공연 시 발생할 수 있는 수익 등) 일부를 활용하여 지원하도록 함

□ 긴급 생활안정자금, 의료비 및 학자금 등을 지원하기 위한 대출상품 개발

□ 예술인공제사업 가입 예술인들의 장기적 재무관리(Financial Management)를 위한 재무관리사 제도 운영

- 예술인들의 경우 직업적 특성으로 본인 혹은 가족들에 대한 재산관리·재무관리에 대해 매우 미흡하므로, 정기적으로 공제사업 가입자에 대한 재무상태를 평가·관리해 주는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예술인들의 현재는 물론 노후소득보장이 스스로 가능할 수 있도록 지원

□ 예술인 공제사업 가입자 관리를 위한 콜센터 및 가입유도를 위한 상담사 운영

- 가입자들의 불편을 상담하고 이를 지원하며, 예술인들이 공제사업에 가입을

요약

- 유도할 수 있도록 하는 콜센터 및 상담사 제도를 운영할 필요가 있음
- 콜센터 및 상담사 등을 활용하여 정부 및 민간단체에서 운영되고 있는 각종 복지제도(복지부, 노동부 등의 복지사업, 신용불량자 지원을 위한 사업 등) 등을 홍보하고 지원함으로써 예술인들의 복지사각지대 축소에 기여

4. 예술인 복지모델 관리운영체계

- 예술인 공제사업의 경우 예산 및 관리효율성을 높이고 공제사업에 가입한 예술인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는 목적 하에 기존 다른 공제회들과 달리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문화예술위원회) 산하에 별도의 조직을 신설
- 예술인 공제운영위원회는 예술인공제사업에 대한 이사회의 성격으로 공제사업 기획, 관리 및 기금관리 등에 대해 심의·의결하는 기구이며,
 - ① 예술인공제사업의 사업과 업무를 위한 기본 및 세부계획 수립과 변경 등에 관한 사항, ② 공제사업약관의 수립, 개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③ 예술인공제사업 공제부금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④ 예술인공제사업 사업 및 결산보고서에 관한 사항, ⑤ 가입자들의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의결, ⑥ 기타 공제사업 운영·집행을 위한 중요한 사항
- 공제사업본부는 예술인공제사업을 직접 관리·운영하는 조직으로 크게 회원자격심사위원회 및 산하에 5개팀을 두도록 함
 - 하위 5개팀은 공제사업팀, 회원관리팀, 복지급여팀, 기금관리팀, 전산정보팀으로 구성되며, 장기적으로 공제사업 및 상담사를 관리할 콜센터를 두도록 함
- 회원자격심사위원회
 - 회원자격심사위원회는 예술인 공제사업 가입자중 기존 예술단체, 예술작품 및 예술소득과 같이 명확히 예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를 제외한 가입희망자를 대상으로 자격심사위원회를 두도록 함
- 공제사업팀
 - 공제사업본부내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예술인 공제사업에서 운영중인 공제상품 총괄, 장단기적 공제사업운영계획 수립

요약

- 공제사업 약관 설계, 변경 및 개정에 관한 공제운영위원회 지원
- 공제사업관련 국회 및 정부부처에 대한 대외협력지원, 장기적인 재정확보 방안 모색

□ 회원관리팀

- 회원자격심사위원회를 지원하며, 예술인 공제사업의 회원 가입, 탈퇴 및 가입자 관리, 회원확충 방안 등을 수립
- 공제상품에 대한 공제금 납부연체 등 관리

□ 복지급여팀

- 예술인 공제사업 가입 회원들을 위한 복지사업 및 급여지급업무 총괄
- 공제사업 기금에 대한 준비금 적립, 회원에 대한 적립 및 보장성 상품 공제금 등 지급과 대출, 회계장부 및 전표관리와 정산, 결산을 맡도록 함
- 복지급여 대출, 다른 공제회와의 연계에 따른 회원복지 및 추가 회원복지사업 시행시 관련 사업 담당

□ 기금관리팀

- 공제사업본부 기금관리운용지침에 따라 공제부금 및 정부출연금을 관리·운용 함
- 공제부금 자산운용 평가결과에 대한 공제사업운영위원회 보고

□ 전산정보팀

- 예술인 공제사업관련 전산 및 정보관리체계 운영
- 예술인 공제급여 지급시스템 확충 및 지원

□ 예술인 공제사업이 문화예술위원회에서 시행되면, 서울 및 수도권 지역의 문화예술인들은 서울의 문화예술위원회를 활용할 수가 있음

- 지역문화예술위원회와 지역 문화재단과의 업무 협조시 부족한 지역사무소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예술인 공제사업 수행시 초기에 중요하게 갖추어야 할 분야는 전산시스템임

- 지역에서 발생하는 민원업무를 지역사무소가 없는 상태에서 일을 처리하려면

요약

-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전산시스템의 완비라 할 수 있음
- 지역의 문화예술인들이 편안하게 공제사업에 가입-공제부금 납부-급여 수령을 위해서는 전산화된 인터넷을 우선적으로 활용하고, 부족한 면은 직접(가칭) 콜센터를 활용할 필요가 있음

5. 예술인 복지모델 법(안) 규정

- 예술인공제사업을 위한 재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술인들을 위한 복지정책 시행,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복지사업에 대한 법적 정당성 확보를 위해 기존 문예진흥법의 일부를 개정
 - 문예진흥법 3조 1항(시책과 권장)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문화예술인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을 포함
- 법 39조를 신설하여 예술인공제사업을 문화예술위원회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기타 주요 조직에 대한 조항으로 구성함
- 법 40조(예술인공제의 가입)에서는 예술인 공제조합에 가입할 가입대상자들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되, 예술인들의 직업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사항들에 대해서는 공제사업 정관에 위임하도록 함
- 다음으로는 예술인 공제사업의 내용에 대한 내용을 다음 조항들에 담도록 하며, 예술인 공제사업(법41조)은 크게 세가지로 구성되어 있음
 - 먼저 ①가입자들에 대한 공제금의 지급, ②예술인공제기금 조성을 위한 사업, ③그 밖에 가입자의 복지·후생을 위한 사업임
- 법안 42조에서는 공제사업의 또 다른 주요한 골격이라 할 수 있는 공제사업의 재원에 대한 사항들을 담고자 함
 - 공제사업 자금의 조성은 네가지 방법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음
 - ①가입자가 납부하는 공제부금, ②정부 또는 지자체의 보조금·출연금, ③기타 민간에서의 출연금, ④공제기금의 수익으로 구성됨
- 예술인 공제사업의 사업내용 및 기금 등을 관리하기 위해 기존 문화예술위원회와는

요약

별도의 위원회 산하에 별도의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규정하기 위한 법률조항이 43조(예술인공제운영위원회)라 할 수 있음.

- 마지막으로 공제사업을 위해 규정할 조항으로는 공제가입자들에 납부한 공제부금에 대한 보호와 만일을 대비하기 위한 준비금 및 보험업법 배제 규정이라 할 수 있음(제44조(수급권의 보호), 제45조(준비금의 적립), 제46조(보험업법의 적용 배제), 제47조(자료의 요청))

제1장

서론

제1절 : 연구필요성 및 목적

1. 연구필요성
2. 연구목적

제2절 : 연구내용

1. 예술인 복지모델 가입기반 구축을 위한 방안 제시
2. 유니버설 복지모델의 구체화를 통한 복지상품(안) 개발 및 분석
3. 예술인 복지모델 관리운영체계 설계
4. 예술인 복지모델 자산운용 및 재정확보 방안 분석
5. 예술인 복지모델 운영을 위한 규정 정비 방안

제3절 : 연구방법 및 기대효과

1. 연구방법
2. 기대효과

제4절 : 예술인 복지사업을 위한 노력

제5절 : 해외 사례

1. 독일 예술가사회보험제도
2. 일본의 예능인 연금제도
3. 미국의 예술인 길드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필요성 및 목적

1. 연구필요성

- 문화예술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은 화려하거나 일반 직종에 비해 독특한 특성을 지니고 있다고 보는 것임. 따라서 일반인들은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이 문화예술의 모든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음
 - 또한 문화예술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본인들이 원해서 하는 일이므로, 성공하기 이전에는 생활이 어렵다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실정임
- 세계화와 더불어 산업이 발전하면서 문화콘텐츠 산업의 국가발전에 끼치는 영향은 매우 지대하다 할 수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는 여전히 이들 산업에 대한 지원이 매우 미미하며, 특히 문화콘텐츠 산업 발전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은 열악한 실정임
 - 많은 문화예술 종사자들의 경우 산업적인 특성으로 인해 일반 국민들에게 적용되고 있는 각종 사회안전망으로 부터의 혜택을 받는 것은 한계를 지니고 있음
 - 즉 대부분의 문화예술인들은 부정기적인 고용계약과 근로활동에 따른 안정적인 임금경로 획득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일반 근로자들과 달리 4대 사회보험 으로부터도 소외되어 있는 실정임
- 신정부들어 문화콘텐츠 산업의 중요성과 이들 산업에 종사하는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생활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예술인 공제회 설립은 국정과제로 선정한 바가 있음
 -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2008년 문화예술인 공제회에 대한 기초연구를 통해 예술인공제조합의 성격, 대상자, 기본 공제상품들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 바가 있음
- 위와 같이 신정부의 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들이 진행중이며, 향후 예술인공제회에 대한 기초연구를 좀 더 구체화하여, 시행방안을 논의함으로써 안정적으로 문화예술인들이 해당분야에서 종사할 수 있는 여건마련이 필요함

제1장 서론

2. 연구목적

- 예술인 공제사업은 문화예술인들이 겪고 있는 복지관련 문제들, 특히 노후소득보장에 있어서의 소득의 불충분성, 불연속성으로 인한 문제를 방지할 수 있음
 - 60세 혹은 65세 이후 문화예술인들이 은퇴할 경우 문화예술인들의 낮은 국민연금 가입실태에 따라 국민연금의 혜택을 받기 어렵고, 국민연금 가입자라고 하더라도 충분한 연금가입기간을 확보할 수 없으며, 보험료 수준이 낮아 적은 급여를 수급하게 되어 노후 소득이 낮아질 수 있음
 - 따라서 예술인 공제사업을 통해 노후소득보장에 있어 소득의 부족현상 즉, 소득 불충분성을 일부나마 해소할 수 있을 것임
 - 두 번째 문화예술인들은 일반 근로자들과 달리 소득활동이 주기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며, 소득이 불연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많은 예술인들이 연금의 사각지대에 놓여져 있음
 - 예술인 공제사업의 경우 예술인들의 직업적 특성을 고려한 유니버설공제(자유납 형식)형태로 제도설계가 이루어짐으로써 문화예술인들의 불연속적인 소득활동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본 연구에서는 2008년 “예술인 복지증진을 위한 공제제도 도입방안”에서 연구된 예술인 공제회의 기본 골격을 기초로 예술인 공제회 운영을 위한 세부설계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 이를 통해 문화예술인들을 위한 기본적인 사회안전망을 구상해 볼 수 있을 것임
 - 또한 문화예술인들의 작업환경이 개선됨으로써 중장년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문화산업에 종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함으로써 세대간 문화예술의 노하우가 이전되고 발전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임

제1장 서론

제2절 연구내용

1. 예술인 복지모델 가입기반 구축을 위한 방안 제시

- 예술인 복지모델 가입자격 및 기준 설정 분석
 - 기존 연구 및 사례 검토를 통해 예술인 각 장르별 가입자격 및 기준 설정
 - 예술인의 가입유도를 위한 복지모델 확대를 통한 제도적 지원방안 모색
- 저소득 문화예술인 공제회 가입 제고방안, 기준 및 지원방안 검토
- 예술인 복지모델의 장기적 재정안정과 지속적 발전을 위한 추진단계별 전략

2. 유니버설 복지모델의 구체화를 통한 복지상품(안) 개발 및 분석

- 유니버설 복지모델에 기초한 보장형, 적립형 공제상품의 개발·설계
 - 기초연구(조성한 외, 2008)에서 제시된 유니버설 복지모델의 구체화(공제료, 공제상품 및 공제금 수준 등)
 - 예술인 연령별 상해 및 사망 확률 등에 대한 기초 분석
 - 유니버설 복지모델에 기초한 보장부문 복지모델 사업에 대한 설계

3. 예술인 복지모델 관리운영체계 설계

- 기존 공제회 관리운영체계 검토
- 예술인 복지모델 관리운영체계 설계
 - 예술인 복지모델에 대한 관리운영조직 및 체계 제시

제1장 서론

4. 예술인 복지모델 자산운용 및 재정확보 방안 분석

- 예술인 복지모델 장단기적 수입 및 지출구조 분석
 - 국내 공제회 자산운용 실태, 운용 및 성과평가 체계에 대한 분석
 - 예술인 복지모델 자산운용을 위한 기본 원칙 및 자산운용 성과평가 방안
- 예술인 복지모델 제도 정착을 위한 정부의 역할과 지원방안 분석

5. 예술인 복지모델 운영을 위한 규정 정비 방안

- 예술인 복지모델 법제화를 위한 법안 정비 방안(법률, 시행령 등)
- 공제제도 운영을 위한 정관 및 공제사업별 약관(초안)작성

제1장 서론

제3절 연구방법 및 기대효과

1. 연구방법

- 국내외 문헌연구
- 유니버설 공제사업에 대한 분석
- 국내 공제사업에 대한 내용 및 공제상품 분석
 - 민간 자문단(삼성화재, 교보생명)을 구성하여 구체적인 상품설계 자문 및 기초 자료를 제공
- 복지, 문화예술 및 공제사업 관련 전문가 정책간담회
 - 복지, 문화예술 및 공제사업 관련 전문가 간담회를 통해 복지 및 문화예술분야에 대한 이해폭 확대

2. 기대효과

- 예술인 공제회 설립으로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내실 있는 지원 가능
 - 문화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에 대한 보상이라는 측면과 현실적인 생활상의 어려움에 대한 지원이라는 측면을 동시에 충족 가능
- 문화예술인의 안정적인 생계유지를 통해 청장년 문화예술 종사자들에 대한 직업적 안정감의 고취 및 지원사업을 통한 문화예술인간 연대감 형성
- 장기적으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지원을 통해 정부의 복지 사각지대 축소를 위한 대책마련의 한 예시가 될 수 있음
- 문화예술계 종사자들에 대해서도 적절한 노후보장의 한 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어 문화예술계 종사자들의 창작동기를 제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보다 근본적으로 우리나라 문화예술산업의 발전에도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제1장 서론

제4절 예술인 복지사업을 위한 노력

- 예술인들은 열악한 소득과 상해 및 노후 생활에 대한 지원을 위해 지난 20여년간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으며, 그 노력이 구체적 결실을 맺은 것은 1981년 예술인 의료보험조합의 설립이라 할 수 있음
 - 1984년에는 문화예술계 처음으로 영화인복지재단이 설립되어 영화인들의 노후 복지 및 공로영화인들을 위한 복지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음
 - 그러나 영화인복지재단은 영화인만을 대상으로 하고 대다수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지원은 전무한 실정이었으며, 현재도 영화인복지재단의 경우 영화진흥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공로영화인에 대한 지원과 저소득 영화인들의 생활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 이후 2002년 민족문화작가회의, 한국문인협회, 민예총, 예총 등이 함께 한국문화예술인복지조합 설립을 추진하였으며, 당시 한나라당 대선공약으로 문화예술인 복지조합이 제안되었음
- 2003년에 전국문화예술노동조합이 설립되었으며, 2004년부터 예술인복지지원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어 2004년 새예술정책으로 ①4대 보험 개선을 통한 예술인 복지 증진, ②가칭 ‘한국예술인공제회’ 설립 운영, ③예술인의 사회적 신분 보장을 위한 제도 도입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음
 - 2004년 이후에도 국회를 중심으로 예술인공제회 설립이 제안된 바가 있음
- 2005년 연극인복지재단, 영화산업노조가 출범하였으며, 2007년에는 미술인 노동조합, 전문무용수지원센터 등이 설립되었으며 구체적으로 예술인들의 복지지원을 위한 민간차원의 노력들이 이루어졌음
 - 2006년에는 연극인복지재단 주체로 ‘예술인 복지방안 모색을 위한 세미나’가 개최되었으며, 2007년 예술인 복지 증진을 위한 정책 포럼, 2008년 영화인 노후 복지지원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 등이 개최됨
- 현정부 국정과제에 예술인공제회 설립 검토가 포함되어 공제회 설립을 위한 기초연구들이 이루어지게 되었음
 - 열악한 생활에 놓여 있는 문화예술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차원의 지원방안

제1장 서론

이 예술인 공제사업이라 할 수 있으며, 공제사업에 대한 사항은 지난 2년간의 기초연구를 토대로 하여 진행되고 있음

- 예술인공제회 설립관련 기초 연구(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08년 3~6월)
- 공제회 설립관련 예술인 인식 및 복지수요조사(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08년 5~10월)
- 예술인공제회 설립 및 운영방안 연구(한국사회보험연구소, 2008년 6~12월)
- 예술인복지법 제정을 위한 대토론회(한국연극인복지재단, 2008년 11월 26일)
- 예술인복지증진을 위한 공제제도 도입방안 정책 심포지엄(한국사회보험연구소, 2008년 12월 17일)
- 전문예술인 범위설정 방향 및 구체방법 연구(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08년 12월~ 2009년 3월)
- 예술인복지모델 세부설계연구(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9년 4월~ 8월)
- 예술인복지제도 도입을 위한 토론회(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08년 7월 14일)

제1장 서론

제5절 해외 사례

1. 독일 예술가사회보험제도(Künstlersozialversicherung: KSV)

- 독일 예술가사회보험법(Künstlersozialversicherungsgesetz-KSVG)은 1971년에 입법과정이 시작되어 1981년에 관련 법이 통과되었음
 - 법 통과후 1983년 빌헬름스하펜시(市)에 예술가사회보험의 집행기관인 예술가사회금고(Künstlersozialkasse)를 설치하여 예술가사회보험을 본격적으로 시행함으로써, 가입대상이 되는 예술인들은 연금보험, 의료보험, 요양보험에 의무 가입하는 것이 가능하게 됨
- 지난 2007년에 이루어진 예술가사회보험법에 대한 3차 수정을 통해 제도에 대한 개혁이 있었으며, 특히 기업(저작권사용자)의 보험료 납부의무에 대한 집중점검이 이루어졌음
 - 검증과정을 통해 약 2만 2천개의 저작권사용자가 추가 발견되었으며, 현재 약 60만개의 저작권사용자가 존재
- 독일에서 예술가사회보험(KSV)은 많은 자영 예술가 및 언론출판인에게 신뢰할만한 사회보장제도로 자리잡았으며, 예술가사회보험(KSV)에 가입되어있는 자영 예술가 및 언론출판인은 연평균 13,000유로의 소득을 창출하는데,
 - 이는 일반근로자의 평균 세전금액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낮은 수준으로, 많은 자영 예술가 및 언론출판인들이 예술가사회보험(KSV)의 혜택에 의존
- 1983년 시행된 이후 예술가사회보험(KSV)은 지속적인 발전을 하였는데, 1983년 말, 제도시행 당시 피보험자는 12,000여명이었으나, 2008년 기준 피보험자는 160,000명 이상으로 13배 이상 성장하였으며, 매년 약 2만건의 신규 가입신청이 이루어지고 있음

가. 가입조건 및 보험료

- 예술가사회보험(KSV)가입대상자는 주업으로서 “문화예술활동을 영위하는 예술가 및 언론출판인”으로 하고 있으며, 취미나 여가로 예술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제외

제1장 서론

- 예술가의 법적 정의하에 구체적으로 예술가사회보험(KSV)에서는 가입대상이 되기 위해 두 가지 기준을 두고 있음
- 일반 자격조건으로는 첫째, 자영(self-employed)형태의 예술 또는 출판활동을 통해 소득을 창출해야 하며, 둘째, 해당 예술활동에 기초해 생계를 유지하는 주업 활동이어야 하며, 셋째, 활동이 일시적이지 않아야 한다는 것임(만약 행정적인 문제로 임시의 형태를 띤다면 그 기간은 최소 2개월까지여야만 함)
 - 또한 한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다면 가입이 불가하며, 단, 소득이 월 400유로 이하면 예외적으로 사회보험의 적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
 - 소득에서의 자격조건은 기본적으로 문화예술활동을 통한 연간수입이 최소 3,900유로 이상이어야 하나, 6년간 2회까지(2-out-of-6-exception)는 이 기준을 넘지 못해도 자격을 유지할 수 있음
- 예술가사회보험제도에 가입한 자영예술가들이 납부하는 보험료는 예술활동에 따라 얻은 과세소득(taxable income)의 약 35% 수준이며, 정규의 사회보험과는 반대로 소득기준점(income threshold)이 없음
- 원칙적으로 보험료는 개별 예술인(50%), 연방정부(20%), 예술인의 작품이나 서비스를 사용하는 기업(30%)이 분담하며, 이들 기업에는 출판사, 언론사, 사진 및 PR 대행사, 극장, 오케스트라, 합창단, 이벤트 기획사, 방송사, AV와 음악제작사, 박물관, 갤러리, 씨커스단, 예술인 훈련기관 등이 포함됨¹⁾
 - 정부와 서비스 이용 기업에서 보험료의 50%를 부담하는 것은 상업적 기업들은 예술인들의 창작품을 통해 기업적 이익을 추구함에 따라 이를 이용하는 것(utilizers)에 대한 대가로 인식하기 때문임
 - 기업의 보험료는 매년 독일 연방노동사회부와 사회보험금고(KSK)에서 평가를 하고, 이에 따라 예술인들에게 지급하는 모든 보수의 일정비율(2009년 기준, 4.4%²⁾)을 징수하도록 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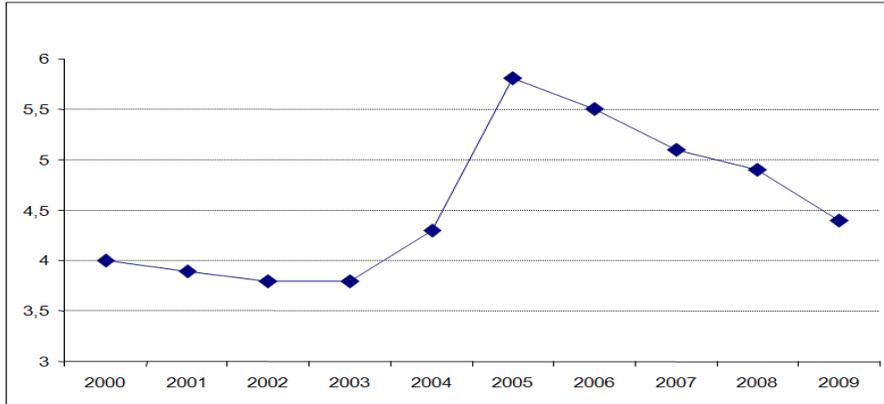
1) 예술가사회보험제도에서의 최근의 주요 논쟁은 정부의 기여율 20% 유지 여부와 자영 예술인들의 실업급여 수급의 필요성임

2) KSK 담당자 인터뷰에 따르면 2008년 2월 현재 10,000유로 기준으로 4.9%였음.

제1장 서론

[그림 1-1] 예술가 사회보험제도 기업 분담금 변화

(단위: %)



자료: Peschner(2009), 「독일의 예술가 사회보험(KSV)」, 한국보건사회연구원·독일 노동사회부 공동 세미나

나. 급여 및 조직

- 독일 예술가 사회보험제도를 통해 지원받는 급여는 건강보험, 노령연금, 요양보호 서비스를 제공 받게 되며 실업급여는 제공하지 않고 있음
 - 예술가 사회보험에 가입한 가입자들에게 주어지는 연금액은 본인이 납부한 보험료의 수준에 따라 결정됨
- 독일의 예술가사회보험제도를 운영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조직으로 예술가 사회보험금고(KSK)를 들 수 있음
 - 예술가사회보험은 약 200여명으로 구성된 예술가 사회보험금고에서 관리하고 있음
 - 예술가 사회금고는 예술인 사회보험제도의 집행기관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예술가 사회금고에서는 첫째, 예술인 사회보험 가입자의 신청, 가입자격 확인 및 관리 업무, 보험료 징수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 둘째 사회금고에서 징수된 보험료는 연금과 건강보험에 해당되는 기관에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사회보험금고의 경우 보험급여에 관한 업무는 수행하고 있지 않음
 - 보험급여에 대해서는 각각의 공단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건강보험은 건강보

제1장 서론

- 험공단(Krankenkasse), 연금은 연금보험공단(Rentenversicherung)에서 맡고 있으며, 해당자가 공단에 신청할 경우 급여를 수급 받을 수 있게 됨
- 이외에도 예술가 사회금고에서는 피보험자의 수입에 의거한 보험료 액수를 산정하며, 보험료 납부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모니터링도 동시에 수행

2. 일본의 예능인 연금제도

□ 예능인 연금 도입의 역사

- 일본의 예능인 연금제도는 1965년 일본예능실연가단체협의회(日本芸能實演家團體協議會, 약칭 예단협)가 창립되면서 그 발판이 마련되었음
- 당시 예단협은 예능인의 기술향상, 사회적 지위의 향상, 복리후생 증진이라는 설립취지를 표방하면서 설립총회에서는 복리후생 사업의 구체적인 목표로 의료기관의 설치, 연금보험제도의 확립, 공제제도의 촉진, 노인요양시설의 설치를 제시하였음
- 그 후 1973년 4월 일본 예능계 사상 획기적인 시도인 ‘예능인 연금’이 도입되었음
 - 도입 1년 후 1974년 3월말 가입자 수 1,144명, 부금총액 3,800만 엔이었던 예능인 연금은 30년이 지난 2003년 3월말에는 가입자수급자 총수 5,876명, 연금자산총액 150억 엔이라는 규모로 성장하였음
 - 지금까지 연금일시금수급자 수는 7,000명을 넘고, 지급총액도 120억 엔을 넘는 실적을 내고 있음
 - 여러 번의 제도개정을 통해서 예능인 연금은 시대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자생력을 가지게 된 것으로 평가받고 있음

□ 예능인연금의 가입자격

- 예단협의 정회원단체·지정단체(67개 단체)에 소속된 모든 장르의 예능 관계자
- 연령은 만 18세부터 만 70세까지
- 가입자의 배우자도 가입자격 부여

제1장 서론

□ 공제부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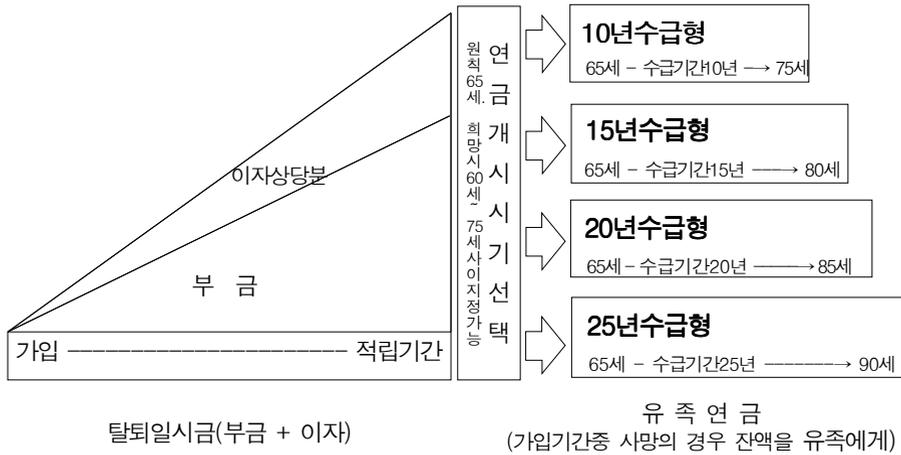
- 공적연금과 달리 예능인연금은 ‘스스로 적립한 부금은 본인에게 되돌아온다’고 하는 원칙에 의한 적립저축형 연금임
- 매월 1,220엔을 기초로 1구좌(월액 1,220엔)부터 300구좌(월액 366,000엔) 까지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음
 - 구좌 수의 증가는 매년 10월에, 감소는 수시로 가능
- 중도해지 없이 적립
 - 만일 적립도중에 탈퇴사망할 경우는 그때까지의 부금과 이자상당분을 「탈퇴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음
 - 연금수급 중에서 전액 수령하기 전에 사망할 경우, 나머지 기간분(期間分)을 「유족연금」 또는 「유족일시금」으로 유족에게 지급

□ 급여 - 연금

- 수급기간은 스스로 선택해서 지정할 수 있음
 - 수급기간은 10년, 15년, 20년, 25년의 4가지 유형 중 하나를 선택
 - 수령개시 이후에는 변경이 불가
 - 원칙적으로는 65세가 수급개시연령이지만 60세로 앞당길 수도 있고 75세 까지 늦출 수도 있음
- 연 4회(3, 6, 9, 12월의 각 15일) 3개월분을 지급
- 유족연금
 - 적립기간 10년 이상인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지급
 - 수급자 사망(잔여기간 = 보증기간-지급완료 기간)
 - 연금을 대신하여, 일시금 지급 가능

제1장 서론

[그림 1-2] 일본 예능인 연금의 구조



자료: 일본 예단협 내부자료

□ 특별가산연금

- 매월 적립 외에 언제라도 상황이 좋을 때에 불입하여 장래 연금을 늘릴 수 있는 특별가산연금이 있음
- 특별가산연금의 공제부금은 1구좌 10만 엔이며, 구좌 수는 자유롭게 몇 번이든 신청 가능함
- 단, 수급기간은 10년간 만으로 한정되어 있으며, 예능인연금과 합산해서 지급

□ 공제금의 보호

- 예능인연금은 신탁 재산
 - 예능인연금은 예단협과 신탁은행이 「신탁계약」 을 체결하여 운용
 - 그러므로 「신탁재산」 이 되므로 「신탁법」 의 적용을 받으며, 만일 신탁은행이 파산할 경우에도 보호됨

제1장 서론

□ 연금일람표

〈표 1-1〉 가입기간별, 구좌수별 연금일람표

(단위: 엔)

부금월액 \ 가입연령	25세 가입	35세 가입	45세 가입	55세 가입	60세 가입
	(40년 적립)	(30년 적립)	(20년 적립)	(10년 적립)	(5년 적립)
1구좌(1,220엔)	75,539	53,749	34,024	16,166	7,882
5구좌(6,100엔)	377,695	268,745	170,120	80,830	39,410
10구좌(12,200엔)	755,390	537,490	340,240	161,660	78,820
20구좌(24,400엔)	1,510,780	1,074,980	680,480	323,320	157,640
50구좌(61,000엔)	3,776,950	2,687,450	1,701,200	808,300	394,100
100구좌(122,000엔)	7,553,900	5,374,900	3,402,400	1,616,600	788,200

자료: 예단협 내부자료

□ 재정현황

〈표 1-2〉 최근 3년간 가입, 지급 및 자산, 재정현황

(단위: 천 엔)

구분		2005년도 말	2006년도 말	2007년도 말	전년도대비	
가입	적립연금	가입자 수(명)	3,471	3,356	3,201	-155
		평균가입 구좌수	13.0	13.0	13.1	+0.1
		평균연령	50	51	51	±0
	특별가산	가입자 수(명)	160	154	140	-14
		평균가입 구좌수	37.9	38.3	39.9	+1.6
		평균연령	58	58	58	±0
지급	적립연금	수급자 수(명)	2,270	2,263	2,237	-26
		연금지급액	714,724	746,147	764,450	+18,303
		일인당 지급액	315	329	344	+12
		탈퇴일시금	211,870	241,740	271,399	+29,659
	특별가산	수급자 수(명)	197	184	171	-13
		연금지급액	117,908	112,242	110,915	-1,327
자산	적립특별가산합계	일인당 지급액	599	610	648	38
		탈퇴일시금	30,671	15,181	22,008	+6,827
	부금액	부금액	705,104	691,046	642,937	-48,109
		자산총액(시가)	15,165,877	15,415,597	12,771,722	-2,643,875
	수정총합이율		19.46%	5.46%	-12.88%	-18.34%
	재정	책임준비금	17,560,034	17,620,135	17,137,566	-482,569
이차액(적립부족)		-2,394,157	-2,204,538	-4,365,844	+2,161,306	

자료: 예단협(2008), 『평성 19년도 결산보고』 .

제1장 서론

□ 예능인 연금의 발전전망

- 2008년 구좌수 변경 결과
 - 총 131명이 구좌수를 변경하였으며, 이 중 117명이 1,708개 구좌를 증설한 반면, 14명이 208개 구좌를 감소시켰음
 - 가입자의 다수가 구좌수를 증가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제도에 대한 예능인들의 호응도가 향상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예능인 연금의 다음 목표는 예능인을 위한 사회보장제도(연금건강보험노동재해보상 등)의 확립임
- 오랫동안 끊임없는 노력의 산물인 “문화예술진흥기본법” 제정을 통해 예능인연금은 30년의 실적을 발판으로 ‘언제까지라도 마음놓고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앞으로의 사명임
- 또한 ‘연금제도·공제제도의 추진, 의료기관·양로시설의 충실’이라는 목표도 시대에 걸맞게 현실성 있는 형태로 추구해야 할 과제임

3. 미국의 예술인 길드

가. SAGPH(Screen Actors Guild - Producer Pension and Health Plans)

□ 가입자격기준

- SAGP와 단체협약이 체결된 제작사에 채용되어 활동한 예술/연예인이 대상이 됨
- 활동의 범위는 영화, TV방송, TV광고, 교육용 영상물, 공영방송, 뮤직비디오 등에 출연한 사람이 대상이 됨
- 단체협약이 체결된 제작사에서 활동한 기간이 일정 기간을 넘어야 1년 가입기간이 부여됨
 - 1999년~2002년: 60일 이상(1년중)
 - 2003년 이후: 70일 이상(1년중)

제1장 서론

□ 가입절차

- 연금/의료보험제도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SAGP에 우선 가입해야 함
 - 협회가입비는 최초가입비 \$2,277 이고 월회비 \$58을 납입해야 함
- 다음으로는 고용확인관련 서류제출이 필요함
 - 출연진의 고용확인은 제작사와의 계약서류 또는 급여내역서 사본등의 제출이 필요함
 - SAGP는 고용확인에 대해 확인절차를 거쳐 가입여부를 결정함

□ 연금제도의 재원

- 연예인의 출연료 14.8%(영화), 14.3%(광고)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작사로부터 기여 받아 운영됨

□ 연금가입에 필요한 소득 기준

- 최저활동기간의 조건과 함께 최저 소득기준도 충족되어야 함
 - 1961년 ~1991: \$ 2,000(1년)
 - 1992년 ~1995: \$ 5,000(1년)
 - 1996년 ~1998: \$ 7,500(1년)
 - 1999년 ~2002: \$ 10,000(1년)
 - 2003년 이후 : \$ 15,000(1년)
- 최저 소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Alternative Eligibility Program Pension Credit이 적용됨
- 1년 소득이 일정수준 이하인 경우에는 Alternative Eligibility Credit도 부여받지 못하고 공백기간(Break in Service)으로 계산됨
- 1년 소득이 아래의 금액을 하회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Credit도 부여되지 않는 공백기간으로 계산됨
 - 1961년 ~1991: \$ 2,000(1년)
 - 1992년 ~1995: \$ 2,500(1년)
 - 1996년 ~1998: \$ 3,750(1년)

제1장 서론

- 1999년 ~2002: \$ 5,000(1년)
- 2003년 이후 : \$ 7,500(1년)
- 완전연금자격(Full Credit)을 부여 받기 위한 기준 금액의 1/2 수준임
- 최저소득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에 적용되는 Credit 기간에 대한 연금액 산정은 일반 Credit과 동일하게 자신의 소득에 비례하여 책정됨
- 그러나, Alternative Eligibility Program Pension Credit을 적용받는 경우, 다음과 같은 급여산정에는 적용받지 못하는 제한이 있음
 - 최저연금(월 \$220): 최저연금 보다 적은 금액을 적립한 경우, 이보다 적은 금액을 수령함
 - 조기퇴직연금(Early Retirement Pension)
 - 장애연금(Occupational / Non-Occupational)
 - 시한부선고 질병에 대한 의료보험
 - 원로연예인 의료보험

□ 연금의 수급충족기간(Vesting)

- 연금으로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최소가입기간은 10년임
 - 10년간 Credit을 부여 받으면 55세(조기) 이후에 연금을 수급할 자격조건이 발생함
 - 그러나,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연간 최저소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Alternative Credit을 부여 받아 10년을 충족한 경우, 최소수령연령은 55세(조기)가 아니라 65세(정상노령연금 수급연령)가 됨
 - 10년 Credit을 부여 받는 것이 정상적인 연금수급권이나, 5년 Credit을 획득한 후, 다른 조건은 충족 못시키고 활동조건(Activity Test)을 충족하는 경우, 제한적 5년 수급권이 주어짐(1999년 1월부터 시행)
 - 활동조건은 현역인 경우에는 1999년 이후에 1시간 세션의 출연활동을 하는 것으로 충족되고, 비현역인 경우에는 1 Credit을 획득해야만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이 됨
- 수급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매년 Credit을 부여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님

제1장 서론

- 1년간 소득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1년 임시공백기간(1-year Break in Service)으로 계산됨
- 그러나 임시공백기간이 연속으로 발생하고, 합계공백기간이 기존에 획득한 Credit 기간보다 긴 경우, 기존에 쌓은 Credit은 Limited 5 year Vesting에는 사용할 수 없음
- 예를 들어, 3년 Credit을 쌓은 연기자가 3년 또는 그 보다 긴 연속적인 공백기간을 가지는 경우, 기존에 쌓은 3년 Credit은 10년 Credit 조건으로 계산되지만 5년 제한적 수급권에는 사용할 수 없음

□ 연금급여수준

- 정상연금은 10년 Credit 적립후 65세 이후 수령함
 - 최저연금급여는 월 \$220, 최고연금급여는 월 \$6,000 임
- 연금은 확정급여(Defined Benefit)제도로 운영되며, 급여산정공식은 다음과 같음
 - 1996년 이전에 발생한 소득

〈표 1-3〉 급여산정공식- 1996년 이전소득

연평균소득	월급여액
\$ 0~2,500	4.75%(연평균소득)
\$2,501~5,000	\$114.25 + 4.21%(2,500 초과금액)
\$5,001~30,000	\$219.50 + 3.21%(5,000 초과금액)
\$30,001~50,000	\$1,022 + 1.82%(30,000 초과금액)
\$50,001~75,000	\$1,386 + 1.54%(50,000초과금액)
\$75,001~100,000	\$1,771 + 1.36%(75,000 초과금액)
100,001 이상	\$2,111 + 1.19%(100,000 초과금액)

제1장 서론

〈표 1-4〉 급여산정공식-1996년, 97년, 98년 발생소득

연평균소득	월급여액
\$75,00~50,000	\$272.50 + 3.5%(7,500 초과금액)
\$50,001~100,000	\$1,760 + 2.5%(50,000 초과금액)
100,001 이상	\$3,010 + 1.5%(100,000 초과금액)

〈표 1-5〉 급여산정공식 1999년 이후 소득

연평균소득	월급여액
모든 소득	3.5%(해당소득)

- 조기노령연금은 1개월 조기수급에 급여의 1%의 1/4만큼(0.25%) 감액: 1년에 3% 감액

□ 장애연금에는 일반장애연금과 상해연금(업무관련)이 있음

- 일반장애연금의 수급조건은 다음의 네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함
 - 완전장애가 발생해야 하며, 65세 미만이어야 하며, 최소 10년 이상의 가입 Credit이 축적되어야 하며, 장애 발생전 6년 이내에 최소 1 가입 Credit이 있어야 함
- 상해(업무관련)연금 수급조건은 다음 다섯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완전 장애가 발생해야 하며, 65세 미만이어야 하며, 최소 5년의 가입 Credit이 축적되어 있어야 하며, 장애 발생전 6년 이내에 최소 1 가입 Credit이 있어야 함
 - 연예활동중에 발생한 장애로서, 리허설, 오디션, 제작을 위해 이동간에 발생한 장애등에 한정됨
- 장애연금의 급여는 일반연금급여액과 동일하게 계산되며, 조기지급에 따른 감액은 없음
- 장애발생에 대한 증빙서류는 사회보장청(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에서 발급하는 장애증명서와, 의사의 장애증명서류가 제출되어야 함
 - SAGP 연금제도의 완전장애의 개념은 사회보장청의 개념보다 더욱 엄격하므로 사회보장제도의 장애급여를 수령한다고 해서 SAGP의 장애연금을 수령하는 것은 아님

제1장 서론

□ 시한부 질병 급여의 내용

- 사회보장청에서 장애를 산정하는데는 1년정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므로 SAGP 연금제도는 이 기간중 가입자 보호를 위해 시한부 질병급여를 지급함
-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정상은퇴이전 사망급여의 1/2을 지급함
 - 65세미만, 10 가입 Credit이상을 적립, 완전장애가 발생하고, 시한부선고를 받은 경우, 시한부선고는 의사로부터 환자가 1년 이내의 기대수명이 있다는 것을 서면으로 작성해서 제출
- 시한부 질병급여를 수령하는 경우, 일반적인 장애연금은 수령할 수 없으며, 기혼자인 경우 배우자가 시한부 질병급여수급에 동의해야 함
- 시한부 질병급여 수급금액은 유족급여 산정시 공제되고 계산됨

□ 유사 제도와의 가입연계

- 영화산업연금제도에 가입된 기간과 SAGP연금에 가입된 기간이 개별 제도의 수급권이 발생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는 가입자 중, 두 제도의 가입기간이 각각 5년 이상이고 총 10년이 넘는 경우에는 연금수급권을 부여함
- 단, SAGP연금급여액은 SAGP 가입기간에만 한정하여 산정함

□ 일시금 지급

- 생애 총소득합계가 \$1,000 이하인 경우, 연금으로의 수급권은 발생하지 않고 일시금이 지급됨
- 생애 총소득합계가 \$1,000~5,000 사이에 있는 경우, 연금과 일시금을 선택할 수 있음

□ 정상 은퇴후 유족연금의 지급과 수준

- 연금수령후 수급자가 사망하는 경우, 유족연금이 지급되며, 수급자연금의 50%가 배우자에게 지급
- 그러나, 유족연금액은 수급자와 배우자의 연령, 배우자의 기대수명에 따라 조정됨
 - 배우자의 연령이 수급자의 연령과 큰 차이가 있는 경우, 유족연금액은 조정됨

제1장 서론

- 생존한 배우자가 재혼을 하는 것은 수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기혼자인 경우, 별도 통보가 없는 경우, 유족연금(Husband-Wife)으로 지급
- 유족연금과 달리, 배우자 대신 다른 사람을 수령자로 선정할 수도 있음
 - Joint and Survivor Option은 기혼자의 경우, 부부 모두가 정상적인 유족연금 수급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됨
 - 배우자 외 다른 사람을 수급자의 사망이후 유족연금 수령자로 지정하는 제도임
- Ten-Year Certain Option 제도
 - 연금수급자가 120회 이상 연금을 수령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할 때, 120회에 부족하게 지급된 연금지급금을 배우자 또는 지정인에게 지급하는 제도임
 - Ten-Year Certain Option을 선택하는 경우, 수급하는 연금액은 조정이 됨

〈표 1-6〉 Ten-Year Certain Option선택에 따른 수급조정기준

수급자의 적용연령	요율(%)	수급자의 적용연령	요율(%)
55	98.20	67	93.55
56	98.001	68	92.86
57	97.80	69	92.12
58	97.56	70	91.32
59	97.29	71	90.46
60	96.98	72	89.54
61	96.64	73	88.55
62	96.25	74	87.50
63	95.81	75	86.37
64	95.33	76	85.19
65	94.79	77	83.96
66	94.20	79	82.69

- Partial Lump Sum Option의 지급
 - 연금과 일시불의 동시지급이 가능하며, 최초연금수급시 1년연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음

제1장 서론

□ 은퇴후 소득활동에 따른 연금수급권 변경

- 연금을 수령하면서 연예활동을 통해 1회당 최소출연료의 7배에 달하는 소득을 버는 경우, 연금수급이 정지됨
 - 2007년 기준으로 1회 최저출연료는 \$737이므로 월 연예소득이 \$5,200를 넘는 경우, 연금지급이 정지됨

□ SAGP연금제도는 다음과 같이 요약 정리됨

〈표 1-7〉 연금종류별 연금수급조건

연금종류	적용연령	수급조건
정상연금	65	10 가입 Credit
조기연금	55	10 가입 Credit
장애연금	65세 이하	10 가입 Credit, 신청전 6년내 최소 1가입 Credit
상해연금	65세 이하	5 가입 Credit 신청전 6년내 최소 1가입 Credit
시한부질병연금	65세 이하	10 가입 Credit
제한적 5년 Vesting 연금	65	5가입 Credit, 가입기간중 영구중단기간(Permanent Break)이 없는 경우
Service Pension	55	10 가입 Credit, SAGP에 5 Credit 이상, 다른 유사 연예인 연금제도에 5 Credit 이상

〈표 1-8〉 연금급여의 종류와 내용

급여종류	내용
Five-Year Certain	수급자가 60회 수급을 못하는 경우, 60회에서 부족한 금액을 유족(지정인)에게 지급
Ten-Year Certain	수급자가 120회 수급을 못하는 경우, 120회에서 부족한 금액을 유족(지정인)에게 지급
Husband-and-Wife	정상유족연금으로 연금의 50%가 수급자 사망후 배우자에게 지급
Joint and Survivor Option	배우자가 아닌 별도 지정인에게 수급자의 연금을 100% 지급하는 연금
Pop-Up Option	Husband-and Wife 나 Joint and Survivor Option 연금을 신청하였으나, 유족연금대상자가 먼저 사망하는 경우, 본래 수급자의 연금액이 상향 조정되는 선택권
Partial Lump Sum Option	일시금수령을 선택하면 1년치 연금을 일시불로 지급받은 후, 정상적인 연금을 지급받는 형태

제1장 서론

□ 의료보험의 내용

- 2003년부터 모든 가입자와 기존 수급자는 의료보험가입을 위해서 분기별 보험료를 지불해야함
 - Plan 1: 분기당 \$150
 - Plan 2: 분기당 \$195
- 또한, 의료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 분기당 보험료의 납부 뿐 아니라, 제작사와의 고용관계에서 발생한 소득이 일정수준을 넘어야 함
 - Plan 1: \$28,120(연소득)
 - Plan 2: \$13,790 또는, 74일 이상의 고용, 또는 40세 이상인 경우 소득이 \$10,000 이상(단, 10년의 가입Credit이 있는 사람의 경우)

나. Producer-Writers Guild Pension and Health Plans

□ 가입자격기준

- Guild와 단체교섭 계약관계에 있는 제작사에 고용되어 작가활동을 하는 경우 가입이 됨
- 1년의 가입 Credit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1년 8 Credit Week가 있어야 함
 - 소득기준으로는 1년에 \$5,000이상 소득이 있어야만 8주의 Credit Week가 주어짐
- 연금 산정기준이 되는 소득의 상한선은 \$225,000이며, 의료보험료 산정기준이 되는 소득의 상한선은 \$250,000임

□ 재정방식

- 재정은 작가들이 고용된 제작사의 기여를 통해 이루어짐. 제작사는 작가들이 받은 소득의 6%를 연금기여금으로, 9%를 의료보험기여금으로 각출함
 - 보험료 기여분은 연차적으로 인상되는 스케줄을 갖고 있음

제1장 서론

〈표 1-9〉 보험료 인상 스케줄

적용시작시점	적용종료시점	보험료각출률(%)
2003년 5월	2004년 4월	7.5
2004년 11월	2008년 9월	8.5
2008년 10월	2009년 3월	8.0
2009년 4월	2009년 5월	8.5
2009년 5월	2010년 5월	8.5
2010년 5월	2011년 5월	8.5

□ 연금수급연령

- 정상노령연금 수급연령은 65세 임
- 정상노령연금을 수급하기 위해서는 최소 5년 이상 가입을 해야 하며, 5년 가입 중에 장기실업(Permanent Break in Service)판정을 받지 않아야 함
 - 5년 연속 소득활동이 없는 경우에는 장기실업(Permanent Break in Service)판정을 받아서, 이전에 쌓은 Credit을 상실하게 됨
 - 5년 이상 가입을 하여 수급권을 확보한 후에는 실업기간의 장기화가 문제 되지 않음
- 조기연금개시 가능연령은 52세 임
- 연금수급권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은퇴하는 경우, 그 시점까지 확보된 기여금은 사망일시금으로 사용되거나, 사망일시금의 수혜자가 없는 경우, 기금에 흡수되어 다른 가입자들의 급여로 사용됨

□ 연금수령액

- 생애동안 적립된 보험료가 \$15,000 인 경우, 월수급액은
 - $48.30\% \times \$15,000 = \$7,245$ (연간 급여액)
 - $\$7,245 / 12 = \603.74 (월급여액)
- Joint and 50% Survivor Annuity Factor는 88%임
- \$15,000을 적립한 사람이 Joint and 50% Survivor를 선택하는 경우
 - 자신은 사망시까지 $88\% \times \$603.74 = \531.30 을 수급하며, 이 수급자가

제1장 서론

사망하는 경우, \$531.30의 50% 인 \$265.65가 배우자에게 지급됨

- 수령시점의 연기에 따른 급여상승은 1개월당 0.8%(65세 이후 59개월 까지)
- 그 이후 시점으로의 연기는 1개월당 1.2%가 적용됨
- 65세 이전 조기수급에 따른 급여액 조정은
 - 63세~55세: 연 4% 삭감
 - 55세~52세: 연 6% 삭감

□ 연금수령방식

- Joint and 50% Survivor Annuity를 선택하면 배우자에게 자신의 급여 50%가 사망 후에 지급됨
 - 배우자와 가입자와의 연령차에 따라 50% 지급액도 조정됨
 - 생존 배우자의 연령이 가입자 보다 적은 경우, 1세 차이 당 0.4%를 차감하며 1세 많은 경우에는, 1세당 0.4%를 추가로 지급함
- Five Year Certain Life Annuity를 선택하는 경우, 60회 정상연금수급이 어렵다고 생각되는 경우, 지정한 사람에게 60회에서 부족한 횟수만큼 정상연금이 지급됨
 - 물론, 사망이후 유족연금은 정상적으로 계산되어 지급됨
- Ten-Year Certain and Life Annuity 를 선택하면, 본인은 정상연금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받으며, 120회 수급에서 부족한 횟수의 연금은 지정한 사람에게 본인 수급액 만큼 지급되도록 할 수 있음
- 가입자가 연금수령 전 사망하며, 유족연금수급권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사망일 시금은 지정한 상속인에게 지급됨
 - 사망일시금은 가입자가 기여한 보험료 총액이며, 최저금액은 \$5,000 임

□ 시한부 질환급여

- 질환으로 인해 의사로부터 1년 이하의 시한부 선고를 받은 가입자는 사망급여의 75%에 해당하는 시한부 질환급여(일시금)을 선택하여 수급받을 수 있음
 - 연금권을 확보한 경우, 시한부 질환급여(일시금) 수급 후 잔여액은 연금으로 지급됨

제1장 서론

4. 프랑스의 예술인 사회보장제도

가. 공적연금제도

- 프랑스의 문화예술인은 법적인 신분³⁾에 따라 피용자와 자영자로 구분되며, 각각의 제도에 포괄됨
 - 피용자는 일반 민간부문 피용자의 제도와 동일하게 적용(1층의 CNAVTS(피용자) + ARRCO(비관리자) + AGIRC(관리자) + 2층의 기업연금 + 3층의 개인연금)
 - 자영자는 자영자 직역군 중 전문자유직 제도에 포괄(1층의 CNAVPL BASE + CNAVPL SUPPLEMENTARY)
 - 전문자유직에는 예술가 외에 운동선수, 관광직원, 공증인, 관청공무원, 의사, 약사, 보험관리인, 회계사 등의 직군들이 포함됨.
- 프랑스 문화예술 종사자를 위한 사회보장그룹인 오디앙스(Audiens)를 운영하고 있음
 - 오디오비주얼, 방송통신, 언론, 공연예술 등 문화예술 종사자들을 포괄
 - 문화예술 분야 종사 노동자들과 관련 사용자들의 노사합의에 의해 설립된 민간 기구로서 이들의 사회보험 보험료 징수와 급여 지급의 대행을 담당
 - 프랑스 사회보험 공단에서 담당하는 기초제도와 별도로 직역별로 운영되는 보충제도를 담당

나. 예술인을 위한 사회보장 체계³⁾

- 프랑스의 예술인을 위한 사회보장 체계는 크게 저작권료를 받는 예술인과 고용계약을 통해 고용된 예술인에 대한 제도로 구분됨
- 저작권료를 받는 예술인을 위한 사회보장 제도
 - 국가의 승인을 받은 공식적인 기구이며, 시각예술 분야의 작가들을 위한 사회보장을 담당하는 단체로 “예술인의 집”(la Maison des Artistes)이 있음

3) 목수정(2006)에서 발췌한 내용을 수록하였음

제1장 서론

- 예술인의 집은 직간접적으로 예술인의 활동에 도움을 주는 다양한 활동(국립박물관 무료출입증 발급, 법률지원 서비스, 사회적 소외에 대항하는 투쟁, 윌레회의, 레지당스 신청을 위한 자격조건 부여 등)을 수행하고 있음
 - 1978년 작가들의 사회보험을 관리하기 위해 만들어진 “작가사회보장협회”(AGESSA)가 있음
- 공연예술비정규직 실업보험제도(앵페르미땅, Assurance chômage des Intermittents du spectacle)
- 실업과 취업을 단속적으로 반복하는 속성을 가진 문화예술 분야의 직업인들에게 공연(혹은 촬영)이 없는 기간에도 실업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이들이 안정적으로 작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 배우, 연주자, 가수, 연출자, 영화감독, 기획자, 편집인, 음향조명 기술자, 무대 제작자, 소품기획자, 미용사, 분장사 등 모든 공연, 영화, 방송 관련 종사자 등이 그 대상이 됨
 - 연중 507시간(8시간 주5일 근무로 계산할 경우 약 3개월) 이상을 계약에 근거해 유급으로 일했다는 증거만 있으면, 앵페르미땅의 지위를 인정받아 일이 없는 시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음

제2장

예술인 복지모델 가입 기준 설정

제1절 : 예술인 복지모델 가입범위 및 규모

1. 예술인 공제사업의 가입 대상 범위
2. 예술인 공제사업 가입 기준 및 절차
3. 예술인 공제사업 가입자 추정

제2절 : 예술인 공제사업 가입방안 및 저소득 예술인 지원방안

1. 예술인 가입유도 방안
2. 저소득 문화예술인 복지모델 가입방안 및 지원방안
3. 고령예술인 공제사업 가입방안

제2장 예술인 복지모델 가입 기준 설정

제1절 예술인 복지모델 가입범위 및 규모

1. 예술인 공제사업의 가입 대상 범위

가. 예술인 공제사업 대상 장르 범위

- 예술 장르는 예술 활동의 산물인 작품의 특성에 의해 구분되는 분류체계임. 따라서 장르별 접근에서 중요한 것은 어떤 활동 또는 그 산물이 예술인가 아닌가를 구분하는 것임
 - 역사적으로 문학, 미술, 음악, 연극, 무용을 예술의 영역으로 보는 데는 거의 이견이 없을 것으로 보임
 - 근대의 산물인 사진이나 영화, 대중가요 등도 이미 예술의 영역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음
-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에서는 ‘문화예술’을 정의하면서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의 10개 장르를 열거식으로 제시한 바 있음
 - 이는, 합리적 분류 체계로 보기 어렵지만 현재 우리 예술계 또는 우리 사회가 수용하는 장르 체계이자 예술의 범위로서 현실적 정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 따라서 예술인 공제사업의 가입 대상을 논의할 때 장르상 예술 범위는 일단 문예진흥법상 10개 장르에서 출발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라 할 수 있음
 - 10개 장르는 잠정적이거나 사회적 합의를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임
- 예술인 공제사업 추진과정에서 문화예술진흥법상 10개 장르 외에 시각예술의 만화, 디자인, 공예와 공연예술의 꼭예, 마술, 비보이 등을 가입 대상 범위로 추가적으로 검토할 수 있음
 - 문예진흥법 제2조는 ‘미술’에 ‘응용미술을 포함한다’는 단서 규정을 담고 있는데, 그 규정을 적극적으로 해석하면 응용미술인 디자인과 공예, 만화는 ‘미술’에 해당되므로 자연스럽게 예술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음

제2장 예술인 복지모델 가입 기준 설정

- 다만, 이론적으로는 디자인이나 공예가 미술에 포함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지만 현실적으로는 모든 공예 활동이나 디자인 활동을 미술에 포함시킬 수는 없기 때문에 세부적인 기준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음
- ‘곡예’(마술 포함)는 공연법 제2조에 공연예술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예술의 범위에 포함하는 것이 당연하나 문예진흥법에 반영되어 있지 않으므로 예술계 전체의 ‘합의’를 얻기 위해서는 별도의 논의가 필요

□ 예술인 공제사업에서는 제1단계로 논란의 여지가 없는 10개 장르를 대상 범위로 선정하여 출범을 하고, 이후 제2단계로 공예, 디자인, 만화, 곡예, 비보이 등의 장르 영역까지 그 대상을 확대해 나가는 방안이 현실적·실용적 방법임

〈표 2-1〉 예술장르로 본 가입범위

구분	예술인 공제사업 가입 범위	추가 검토 범위
문학	문학(시, 소설, 희곡, 평론, 수필, 시나리오)	-
시각예술	미술(회화, 조각, 설치미술)	만화, 디자인, 공예
	사진	
	건축	
공연예술	연극(연극, 뮤지컬, 마임, 인형극, 비언어극)	곡예, 마술
	음악(기악, 성악, 오페라, 합창)	
	무용(발레, 현대무용, 한국무용)	
	국악(국악, 전통예능)	
대중예술	영화	-
	연예(드라마, 개그, 만담, 대중가요)	비보이 공연

나. 예술인 공제사업의 대상 직업 범위

- 예술 활동 과정을 작품을 창작하는 과정, 유통하는 과정, 향유하는 과정으로 구조화할 수 있는데, 그 구조에서 예술인이라 하면 주로 창작과정에 참여하는 인력을 지칭
- 예술인 공제사업에서는 작가, 화가, 조각가, 작곡가, 안무가 등 창작예술가와 배우,

제2장 예술인 복지모델 가입 기준 설정

무용수, 성악가, 연주자 등 실연예술가를 제1차적 가입 대상으로 설정할 수 있음

- 앞서 논의한 10개 장르의 범위와 한국표준직업분류 2007에 의거하여 ‘예술인’에 해당하는 직업을 추출하여 정리해 보면 9개 직업군 58개 직업으로 분류됨

□ 이러한 직업군 외에 예술에 대한 조사 연구 인력, 예술 프로그램 기획 인력, 공연이나 전시 관련 기술 인력, 예술 단체 및 기관의 행정 인력 등이 모두 넓은 의미로 예술 생태계를 떠받치는 인력군이므로, 예술인 공제사업 구성에서 함께 고려해야 할 대상임

- 특히 공연예술이나 영화의 경우에는 기술 관련 스태프가 없으면 예술의 존립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예술인 복지 프로그램의 대상에 포괄하는 것이 바람직

□ 가입 범위에 추가로 포함할 수 있는 대상으로는 다음의 세 가지 경우를 상정해 볼 수 있음

- ① 디자인, 공예, 만화, 곡예 장르의 창작예술가와 실연예술가
- ② 예술교육가
- ③ 예술제작 지원 인력

제2장 예술인 복지모델 가입 기준 설정

〈표 2-2〉 예술인 공제사업 가입 대상이 되는 예술인

번호	직업군	예시 직업	관련 장르	비고
1	작가 (2811)(2812)	시인, 소설가, 평론가, 수필가, 극작가, 드라마 작가, 구성작가, 시나리오 작가, 코미디 작가, 문학 번역가, 영상 번역가(11)	문학, 미술, 영화, 연예	창작예술가
2	시각예술인 (2841)(2842)(2843)	화가, 조각가, 서예가, 사진작가(4)	미술, 사진	창작예술가
3	건축가(23111)	건축사(1)	건축	창작예술가
4	작곡가 (28451)	작곡가, 국악 작곡가, 편곡가, 국악 편곡가, 관현악 편곡가, 음악 각색가(6)	음악, 국악	창작예술가
5	감독 및 지휘자 (2831)(28451)	연극 연출가, 영화 감독, 방송드라마 프로듀서, 예술감독, 지휘자, 관현악단 지휘자, 합창단 지휘자(7)	연극, 음악, 국악, 영화, 연예	실연예술가
6	배우 (2832)	연극배우, 텔런트, 영화배우, 성우, 코미디언, 개그맨, 만담가, 보조연기자(8)	연극, 영화, 연예	실연예술가
7	국악인 및 전통예능인 (2844)	국악인, 소리꾼, 국악 연주가, 전통 연극인, 전통 무용인(5)	국악	실연예술가
8	연주가 및 성악가 (28453)(2846)	연주가, 목관악기 연주가, 타악기 연주가, 금관악기 연주가, 건반악기 연주가, 현악기 연주가, 성악가, 대중가요 가수, 합창단원(9)	음악	실연예술가
9	안무가 및 무용가(2847)	안무가, 발레 각색가, 무용가, 한국무용가, 발레무용가, 대중업소 무용수, 백댄서(7)	무용, 연예	창작예술가 실연예술가
계	9개	58개		

- 먼저 만화, 디자인, 공예, 곡예, 비보이 등이 예술 장르로 추가되는 경우 각각의 장르에 따라 해당 장르의 창작예술가 및 실연예술가에 해당하는 만화가, 디자이너,

제2장 예술인 복지모델 가입 기준 설정

공예가, 곡예사, 마술사, 비보이 등이 예술인 공제사업의 가입대상으로 추가될 수 있음

- 다음으로 논의가 필요한 부분은 예술교육에 종사하는 인력을 예술인 공제사업에 포함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임
 - 우리나라의 경우 예술 현장에서 창작 활동에 참여하는 인력보다 예술 교육에 종사하는 인력 규모가 더 클 것으로 추정되며, 특히 대학 예술학과 교수는 대학에서의 교육 및 연구 활동이 주된 직무이지만, 실제로는 예술 현장에서의 창작이나 실연 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는 그룹이며, 예술계 내에서의 영향력도 절대적이어서 이들을 배제하고 예술인 공제사업을 논의하기 어려움
 - 그렇지만 대학의 예술학과 교수는 연간수입이나 특수직역연금의 수혜를 받는 사회보장체계상 특수집단에 해당하므로 예술인 공제사업 포함 여부는 별도의 논의를 거쳐야 할 것으로 보임
 - 중고등학교 예술교사는 예술 활동에의 참여보다는 예술 교육 업무를 주로 담당하고 있고, 사회보장체계상 특수직역연금의 수혜를 받는 특수집단이므로 별도의 논의를 거쳐야 함
 - 예능학원 강사 역시 예능 교육이 주 업무이므로 별도의 논의가 필요함
 - 예술교육가 가운데서는 예술활동을 하면서 예술교육에도 참여하는 ‘예술강사’는 1차적 대상에 포함하는 것으로 적극 고려할 수 있음
- 마지막으로 예술제작 지원인력에는 무대기술을 담당하는 기술 스태프와 프로그램 기획·제작을 담당하는 기획·경영 스태프, 그리고 예술 단체나 기관에서 행정관리나 시설관리를 담당하는 지원 인력으로 나누어볼 수 있는데, 이 가운데 전문적인 직능을 갖추어야 하는 기술 스태프와 기획·경영 스태프는 예술인 공제사업의 제1차적 가입 대상으로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함
 - 공연이나 전시 프로그램, 영화 필름 등의 크레딧에 명단이 올라 있으면서 해당 직무를 담당한 경우는 모두 예술인과 동일하게 예술인 공제사업의 가입 대상으로 포함함
 - 행정관리인력은 예술활동만을 주업으로 하는 예술사업체 종사자에 한하여 가입 대상으로 포함

제2장 예술인 복지모델 가입 기준 설정

다. 예술인 공제사업 가입 범위(안)

- 현단계에서 예술인 공제사업의 가입 대상으로 분류되는 범위는 문예진흥법 제2조의 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등 10개 장르에서 활동하고 있는 창작예술가와 실연예술가, 예술교육가 등의 예술인과 기획경영 스태프, 기술 스태프, 행정관리인력 등 예술활동 지원 인력으로 함
 - 다만 예술교육가의 경우 현재 대학에서 예술학과 교수직에 있거나 중고등학교 예술 교과 담당 교사인 경우, 그리고 사설 예능학원 강사로 재직중인 경우는 제외하고, 그 밖의 '예술강사'의 직함으로 학교문화예술교육이나 사회문화예술 교육에 종사하는 경우만을 포함함
 - 기획경영 스태프나 기술 스태프의 경우에는 피고용자의 지위에 있던 프리랜서로 활동하던 관계 없이 가입 범위에 해당하지만, 행정관리인력은 예술사업체의 피고용자 지위에 있는 경우에만 포함함
- 다음 단계로 별도의 논의 과정을 거쳐 가입 범위로 수용할 장르 범위로는 곡예, 공예, 만화, 디자인, 비보이 등이 있으며, 만약 해당 장르가 예술인 공제사업 가입 범위로 확정되면, 앞서 10개 장르와 마찬가지로 해당 장르에서 활동하는 창작예술가와 실연예술가, 예술교육가 등의 예술인과 기획경영 스태프, 기술 스태프, 행정관리인력 등을 모두 가입 범위로 포함함
- 또한 '예술 강사'와 '예술 시간강사'외의 예술교육가, 즉 예술 교수, 예술 교사, 예능 강사에 대해서는 별도의 논의 과정을 거쳐 가입 범위로 수용할 수 있음
 - 이 부분은 10개 장르는 물론이고 추가로 가입 범위로 수용된 장르의 경우에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할 수 있을 것임

2. 예술인 공제사업 가입 기준 및 절차

- 예술 활동에 종사하는 예술인 또는 예술 산업에 종사하는 종사자로 대상을 제한하여도 예술인 공제사업 가입 자격에 대해서는 보다 명료하고 엄격한 자격 기준의 설정과 적용이 필요
- 예술인 공제사업의 가입 자격 및 기준을 정하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접근

제2장 예술인 복지모델 가입 기준 설정

- 하나는 사업체별 접근 방법으로 예술 산업에 속하는 사업체에서 직원 또는 단원 등 고용관계를 가지고 활동하고 있는 예술인 및 관련 종사자는 해당 업체에서 일정기간의 근무경력을 충족하면 가입 자격을 얻는 것으로 설정하는 방법
- 다른 하나는 고용관계에 놓여 있지 않으면서 사업별로 예술 활동에 참여하는 프리랜서 예술인 및 관련 스태프는 별도의 판정 기준 및 절차를 거쳐 가입 자격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

가. 사업체 인증을 통한 가입 자격 부여

□ 사업체별 접근 방식은 예술인 공제사업 사무국에서 해당 사업체가 예술 산업체임을 인증하는 절차와 그 업체에 소속된 예술인 및 관련 종사자가 예술인 공제사업에 가입을 신청하는 두 단계로 나누어 진행할 수 있음

- 사업체 인증 단계에서는 업체가 법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인적 사항, 업태 및 업종, 설립 연도, 설립 목적, 주요 사업 내용 등의 내용을 탑재한 신청서를 제출하면, 예술인 공제사업 사무국에서 자격 여부를 결정한 후 인증 단계 리스트에 등재하여 공시
- 단체 인증을 위해서는 국제청 업종코드 체계를 활용하는 것이 보다 실용적인데, 소분류 '921. 영화, 방송 및 기타공연 관련 산업'에 분류된 업종 가운데 세세분류 악극단(921402), 극단(921403), 일반영화제작(921502)은 공연 및 영화 제작업의 성격이므로 예술인 공제사업 대상이 되는 '예술 산업체'로 판정할 수 있음
- 영화배급업(921100), 영화상영업(921200), 기타 예술관련 산업(921401), 공연장 운영업(921901)과 같은 유통업종의 경우 예술인 공제사업의 가입 대상 예술 사업체로 포함시킬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좀 더 필요함
- 또한 출판업이나 방송업은 전체 사업 가운데 예술 출판이나 예술 프로그램 제작이 구분되지 아니하므로 협의의 예술 산업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함

□ 그렇지만 예술 산업 사업체가 리스트에 등재되었다고 해서 예술인 공제사업에 사업체 단위의 단체 가입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며, 예술인 공제사업의 가입

제2장 예술인 복지모델 가입 기준 설정

형식은 철저하게 개인별 가입을 원칙으로 함

- 가입 가능 단체로서의 인증 절차가 완료되면, 해당 사업체의 직원 가운데 예술인 공제사업 가입 희망자에 한하여 개별적으로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 소정의 심의 절차를 거쳐 가입
- 가입을 희망하는 직원(예술인 및 예술 산업 종사자)은 예술인 공제사업 사무국에서 제공한 소정의 가입 신청서 및 근무하는 사업체에서 발행하는 재직증명서 및 가입 직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본을 제출하여 간단한 서류심사 후 가입 여부를 확인받게 됨
- 공인된 예술 사업체 근무자의 경우 그 직무에 관계없이 모든 직원이 가입 자격을 얻는 것으로 하며, 또한 정규직 임시직(파트타임 제외) 관계없이 근무기간이 연속하여 12개월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가입 자격을 획득하는 것으로 함

□ 이러한 사업체별 접근은 개인의 직업(직무)이 무엇이든 관련 사업체에 종사하는 인력, 예를 들면 공연시설에 근무하는 사무원·안내원·운전원·전기기사 등이 모두 포함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절차가 용이할 수 있음

□ 또한 인증을 신청한 예술 사업체가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예술인 공제사업 가입 대상 단체로 인정하도록 하면 행정 비용도 줄어들면서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을 것임

- 첫째, 설립 주체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국공립 예술단체인 경우에 인증 단체로 인정(공연분야 국공립 예술단체는 2006년도 12월 현재 191개 단체이고 9,562명이 종사하고 있음)⁴⁾
- 둘째, 광역사도에 의해 전문예술법인이나 전문예술단체로 인정받은 경우에는 모두 인증 단체로 인정(전문예술법인단체로 지정된 예술단체는 2008년 12월 현재 308개)⁵⁾
- 셋째, 최근 3년간 1회 이상 소정의 심의절차를 거쳐 국고나 지방비 및 문예진흥기금을 보조 받은 실적이 있는 단체인 경우 보조금 액수의 규모에 상관없이 인증단체로 인정⁶⁾

4) 문화관광부(2008), 『2007 공연예술 실태조사』, 185쪽

5) 문화체육관광부(2009), 『공연예술진흥기본계획 2009』, 75쪽.

제2장 예술인 복지모델 가입 기준 설정

나. 개별 신청에 의한 자격 부여 방식

- 개인별 접근 방식에서는 ①예술소득 ②관련 자격증 및 수상 실적, ③예술 활동 실적을 기준으로 소정의 심사 절차를 거쳐 가입 자격 여부를 판정하도록 하며, 예술 관련 협회의 멤버십이나 예술계열 교육기관 수료를 나타내는 학력 등은 자격 요건에 포함하지 않음

1) 예술소득에 의한 자격 기준

- 예술소득의 경우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면 증빙 서류 확인만으로 가입 자격 부여
- 최근 3년간 1회 이상 국세청에 자영업예술가로서 소득신고를 한 예술인 및 스태프로서 예술소득이 연평균 100만원 이상인 경우
 - '예술소득'과 '예술관련 소득'의 구분 : 작가를 예로 들면 작품 원고료나 작품집 인세는 '예술소득'에 해당하고 강연료나 강의료는 '예술관련 소득'에 해당하며, 연주자의 경우 출연료나 오케스트라에서 받는 임금은 '예술소득'에 해당하고 강연료나 예술교육 사례비는 모두 '예술관련 소득'에 해당
 - 『문화예술인 실태조사 2006』에 의하면 예술인 가운데 예술 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가 27.2%, 월 10만원 이라는 응답이 5.8%로 연간 예술 소득이 120만원 이하인 경우가 전체의 33%에 해당함. 따라서 연간 수입이 100만원 이상이면 전문 예술인으로서 직업적 활동을 전개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음
 - 또한 소득 기준을 연간 100만원 이상으로 올릴 경우 예술인 가운데 소득기준 가입 대상자가 지나치게 축소될 우려가 있음
 - 한편 통계청 『농어업법인조사(2004)』의 '농업인 및 어업인' 정의에서 농축산물 및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 100만원 이상인 자로 규정한 사례가 있음
 - 국세청 신고액 기준이므로 실제 해당자가 많지 않을 수 있음
- 최근 3년간 1회 이상 예술 프로젝트 관련 국고나 지방비 및 문예진흥기금 수혜

6) 다만 단체 인증 자체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단체 소속 직원 및 단원에게 예술인 공제사업 가입 자격 부여를 위한 것이므로, 보조금 수혜 실적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해당 단체가 직원 및 단원과의 고용계약을 유지하고 있으면서 예술 산업에 해당하는 사업체라야 한다. 그 경우 단순히 동호회나 동인제 형식으로 운영되는 예술 단체는 인증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구체적인 인증 절차는 해당되는 보조금 프로그램을 열거식으로 공지한 후 해당되는 단체의 경우 인증 신청시 관련 프로그램명, 보조금 수령 액수, 결과보고 및 평가 결과 등을 증빙하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도록 하며, 예술인 공제사업 사무국에서는 보조금 관련 프로그램을 주관하는 기관(한국문화예술위원회, 서울문화재단 등)과의 업무 협력을 통해 크로스 체크하도록 한다.

제2장 예술인 복지모델 가입 기준 설정

실적이 있는 경우

- 소정의 심의 절차를 거쳐 국고나 지방비, 문예진흥기금의 보조 대상으로 선정된 경우에 한함
- 보조 받은 사업이 예술 프로젝트인 경우에 한함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역문화재단으로부터 기금 수혜 실적을 증빙하는 서류를 발급 받아 예술인 공제사업 사무국에 제출

2) 전문적인 자격증 및 수상 실적에 의한 자격 기준

- 전문적인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거나 수상실적이 있는 예술인의 경우 가입 자격 부여
 - 해당하는 자격증이나 경연대회, 예술상에 대해서는 예술인 공제사업 사무국에 서 적절한 심의절차를 거쳐 선정한 후 공지
- 건축분야의 건축사, 무대예술인전문인과 같이 예술계 내부의 자격제도가 있는 경우 자격증 보유자는 모두 예술인 공제사업 가입 자격 취득
 - 가입 신청자는 관련 자격증 사본을 예술인 공제사업 사무국에 제출
 - 국토해양부장관에 의해 부여되는 건축사 자격을 보유한 자는 모두 예술인 공제사업 가입 대상으로 인정할 수 있음(2007년 12월 현재 16,210명)

〈표 2-3〉 건축사 자격자 배출현황

(단위: 명)

구분	2002년 이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배출자수	14,427	467	421	193	502	200
누계	14,427	14,894	15,315	15,508	16,010	16,210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 의해 수여되는 무대예술전문인 자격자는 모두 예술인 공제사업 가입 대상으로 인정(무대예술전문인 자격증 발급 누적 건수는 2008년 12월 현재 1,764건)

- 권위 있는 경연대회나 신춘문예 등을 통해 입문한 경우

제2장 예술인 복지모델 가입 기준 설정

- 권위 있는 경연대회나 신춘문예 등에 대해서는 예술인 공제사업 사무국에서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사전에 선정하여 공지하도록 하고, 이 리스트에 없는 대회의 서류가 접수되면 별도의 심의 과정을 거쳐 판정을 내리도록 함
- 해당 수상 실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또는 원본을 예술인 공제사업 사무국에 제출

□ 권위 있는 주요 예술상의 수상실적이 있는 경우

- 권위 있는 주요 예술상에 대해서는 예술인 공제사업 사무국에서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사전에 선정하여 공지하도록 하고, 이 리스트에 없는 대회의 서류가 접수되면 별도의 심의 과정을 거쳐 판정을 내리도록 함
- 해당 수상 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또는 원본을 예술인 공제사업 사무국에 제출

3) 예술 활동 실적에 의한 가입 기준

□ 다음으로 예술 활동 실적에 의한 가입 자격 부여는 최근 3년간 일정 수준 이상의 활동 실적을 가지고 있는 예술인이 관련 증빙 자료를 제출한 후 해당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자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다음 기준에 의해 가입 자격을 인정

- 이 심의에서는 자격 여부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제출된 실적물이 해당 조건을 충족한 것인지 여부만을 판정
- 특히 자비 출판이 가능한 단행본 출판이나 자비 전시가 가능한 대관전시 실적의 경우, 분야별 심사위원회의 개인별 심사가 엄격히 이루어져야 함

□ 문학분야 : 최근 3년 동안의 권위 있는 문예지 발표 건수나 단행본 출판 실적을 근거로 가입 자격 부여

- 소설가는 최근 3년 동안 문예지나 단행본 소설선집에 신작 단편소설 3편 이상을 발표했거나 문학 전문 출판사에서 창작집을 1권 이상 출간한 경우 가입 자격을 인정
- 시인은 최근 3년 동안 문예지 또는 단행본 시선집에 신작 시 9편 이상을 발표했거나 문학 전문 출판사에서 시집 1권 이상을 출간한 경우 가입 자격을 인정

제2장 예술인 복지모델 가입 기준 설정

- 극작가는 최근 3년간 문예지 및 연극잡지에 3편의 이상의 신작 희곡을 발표했거나 1편 이상의 신작 공연이 이루어진 경우 가입 자격을 인정
 - 시나리오작가는 최근 3년간 문예지 및 영화잡지에 3편의 이상의 신작 시나리오를 발표했거나 1편 이상의 신작 영화가 제작된 경우 가입 자격을 인정
- 시각예술분야 : 최근 3년 동안 개인전 또는 그룹전, 기획전, 초대전 등의 전시 실적을 기준으로 가입 자격 부여
- 화가는 최근 3년간 전시회에 출품한 작품이 3편 이상이거나 갤러리의 기획에 의한 개인전 실적이 1회 이상인 경우 가입 자격을 인정
 - 조각가는 최근 3년간 전시회에 출품한 작품이나 조각 공원 등에 설치한 신작 작품이 3편 이상이거나 갤러리의 기획에 의한 개인전 실적이 1회 이상인 경우 가입 자격을 인정
 - 큐레이터 등 전시 기획자는 최근 3년간 일정 규모의 전시회 기획 실적이 1건 이상인 경우 가입 자격 인정
- 공연예술분야 : 최근 3년 동안 참여한 공연 실적을 기준으로 참여 정도에 관계없이 가입 자격 인정
- 연극배우는 최근 3년 동안 10회 이상의 연극 공연 작품을 기준으로 3편 이상 출연한 실적이 있는 경우 가입 자격을 인정
 - 연극연출가는 최근 3년 동안 10회 이상의 연극 공연 작품을 기준으로 1편 이상 연출한 실적이 있는 경우 가입 자격을 인정
 - 무용가는 최근 3년 동안 3편 이상의 무용 공연 작품에 출연한 실적이 있는 경우 가입 자격을 인정
 - 안무가는 최근 3년 동안 3편 이상의 무용 공연 작품에서 안무를 담당한 실적이 있는 경우 가입 자격을 인정
 - 연주가는 최근 3년 동안 3편 이상의 오케스트라 연주회나 공동 출연 연주회에 출연한 실적이 있거나 1회 이상의 독주회 개최 실적이 있는 경우 가입 자격을 인정
 - 성악가는 최근 3년 동안 3편 이상의 오페라나 공동 출연 연주회에 출연한 실적

제2장 예술인 복지모델 가입 기준 설정

- 이 있거나 1회 이상의 독주회 개최 실적이 있는 경우 가입 자격을 인정
 - 작곡가는 최근 3년 동안 3곡 이상의 신작 악곡을 선집 음반이나 연주회를 통해 발표한 실적이 있거나 1건 이상의 독집 앨범이나 개인 작곡발표회 실적이 있는 경우 가입 자격을 인정
 - 무대기술 스태프는 최근 3년 동안 3편 이상의 작품에 참여한 실적이 있는 경우 가입 자격을 인정
 - 공연 기획자는 최근 3년간 공연 기획 실적이 1건 이상인 경우 가입 자격 인정
- 대중예술분야 : 영화의 경우 영화관에서 공개 상영된 필름, 방송의 경우 방영이 이루어진 프로그램의 건수를 기준으로 가입 자격 부여
- 영화배우는 최근 3년 동안 영화관에서 개봉된 3편 이상의 영화에 출연한 실적이 있는 경우 가입 자격을 인정
 - 영화감독은 최근 3년 동안 영화관에서 개봉된 영화 1편 이상을 연출한 경우 가입 자격을 인정
 - 텔런트는 최근 3년 동안 텔레비전에 방영된 드라마에 3편 이상 출연한 경우 가입 자격을 인정
 - 가수는 최근 3년 동안 3편 이상의 공동 출연 연주회나 방송음악회에 출연했거나 1회 이상의 단독 콘서트 실적이 있는 경우, 그리고 선집 앨범에 3편 이상의 신곡을 발표했거나 1건 이상의 독집 앨범을 출판한 실적이 있는 경우 가입 자격을 인정
 - 영화 기술 스태프는 근 3년 동안 3편 이상의 작품에 참여한 실적이 있는 경우 가입 자격을 인정

제2장 예술인 복지모델 가입 기준 설정

3. 예술인 공제사업 가입자 추정

가. 예술인 공제사업 가입 대상자의 규모

- 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등 10개 장르에서 활동하고 있는 창작예술가와 실연예술가, 기획경영 스태프, 기술 스태프 등의 고용규모를 보면 2007년 현재 17만 여명으로 나타남
 - 한국고용정보원의 『직업지도 2008』에서 직업세분류 중 예술인 공제사업 제 1단계 가입 범위에 해당하는 직업군의 종사자 규모를 산출해 본 것임
 - 큐레이터 직군에 포함된 문화재 보조원, 사서 및 기록물관리사, 연예인 및 스포츠 매니저에 포함된 스포츠 매니저 인력을 제외한다면 15만 명에서 17만 명 사이로 추정됨
 - 이 가운데 ‘예술인’에 해당하는 창작예술가와 실연예술가의 수만 별도로 산출해 보면 12만 6천여 명으로 산출됨
- 별도의 논의를 거쳐 예술인 공제사업 가입 대상으로 추가될 수 있는 예술교육가와, 만화디자인·공예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예술인의 규모를 산출해 보면 모두 42만여 명으로 나타남
 - 한국고용정보원의 『직업지도 2008』에서 직업세분류 중 예술인 공제사업 추가 가입 범위에 해당하는 직업군의 종사자 규모를 별도로 산출해 본 것임
 - 사설 예능학원의 예능강사가 14만명으로 엄청난 규모를 가지고 있으며, 디자이너 또한 23만 명의 대규모 직업군에 해당함
 - <표2-4>와 <표2-5>의 가입 대상 규모를 합산하면 모두 59만여 명으로 나타남

제2장 예술인 복지모델 가입 기준 설정

〈표 2-4〉 『직업지도 2008』에 나타난 예술인 공제사업 가입 대상자 규모

직업세분류	종사자수(명)
작가 및 관련 전문가	18,936
번역가	11,948
큐레이터 및 문화재 보존원/사서 및 기록물관리사	13,217
화가 및 조각가	8,080
사진작가 및 사진사	29,617
국악 및 전통예능인	2,759
지휘자·작곡가 및 연주자	14,161
가수 및 성악가/무용가 및 안무가	7,014
감독 및 기술감독	21,918
배우 및 모델	11,690
촬영기사	8,586
음향 및 녹음 기사	3,924
영상·녹화 및 편집 기사	7,390
조명기사 및 영사기사/기타 연극·영화 및 영상 관련 종사자	6,937
연예인 및 스포츠 매니저/미술사 및 기타 문화·예술관련 종사자	4,320
합계	170,497

〈표 2-5〉 『직업지도 2008』에 나타난 예술인 공제사업 추가 가입 대상자 규모

직업세분류	종사자수(명)
예능 강사	145,897
만화가 및 만화영화 작가	11,403
제품 디자이너	31,350
패션 디자이너	44,603
실내장식 디자이너	40,677
시각 디자이너	65,793
웹 및 멀티미디어 디자이너	49,489
공예원	20,768
귀금속 및 보석 세공원	10,389
합계	420,369

제2장 예술인 복지모델 가입 기준 설정

나. 예술인 공제사업 가입 기준을 고려한 초기 가입자 추정 규모

- 예술인 공제사업이 시작되는 제1차년도의 가입 대상자 규모는 최대 17만 명까지로 추정되지만, 이 가운데 실제로 예술인 공제사업 가입 자격 기준을 충족한 예술인이 어느 정도이고, 또 그 가운데 가입 의지가 있어서 실제 가입을 하게 되는 예술인은 어느 정도인지 추정하는 것은 쉽지 않음
- 2008년도 하반기에 실시한 예술인공제회에 대한 예술인 인식 조사에서는 그 명칭에 대한 인지도가 18.8%로 낮았음에도 불구하고 가입 의사는 48.5%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음⁷⁾
 - ‘반드시 가입하겠다’고 적극적 의사 표시를 한 예술인도 17.0%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음
 - 예술인공제회가 존재하지 않는 조건에서 가입 의사를 밝힌 것이므로 17.0%의 예술인이 모두 제1차년도부터 예술인 공제사업에 가입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임
 - 제1차년도 가입 대상자의 규모를 17만 명으로 잡고, 앞의 예술인 인식 조사 결과를 단순 대입해 보면 가입 희망자는 82,450명이고, 그 가운데서 적극적 가입 의사를 가진 예술인 공제사업 대상자는 28,900명으로 나타남
 - 또한 가입 대상자 17만명을 창작예술가와 실연예술가 12만 6천여명으로 제한하여 산출하여 보면 적극적 가입 의사가 있는 예술인은 21,420명으로 나타남
 - 따라서 초기 가입자수는 대략 21,420명에서 28,900명 정도에 이를 것으로 추정됨
- 제1차년도 가입 이전에 제도 도입과정에서 예술인 공제사업에 대한 홍보가 어느 정도 이루어진다고 가정했을 때, 제1차년도 가입자 규모는 최소한 2만명은 상회할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으므로 이 연구에서는 초기 가입자 규모를 일단 2만명으로 설정하여 공제사업 운영방안을 설계하였음

7) 박영정(2008), 『예술인공제회 설립에 대한 예술인 인식 및 복지수요 조사』, 문화체육관광부, p125

제2장 예술인 복지모델 가입 기준 설정

〈표 2-6〉 예술인 공제사업 가입자 규모 추정

(단위 : 명)

구분	가입 대상자 규모 (17만명)	가입 대상자 중 예술인 규모 (12만 6천명)
가입 의사 예술인 비율 (48.5%)	82,450	61,110
적극 가입 의사 예술인 비율 (17.0%)	28,900	21,420

다. 예술인 공제사업의 장기 가입자 규모 추정

□ 예술인 공제사업이 장기적으로 받아들여질 가입자 규모는 <표 2-6>을 기준으로 할 경우 단기적으로는 2만명, 장기적으로는 작게는 6만명, 많게는 8만명선까지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다른 공제사업들과 달리 예술인들의 소득이 열악하기 때문에, 사업 초반에는 전문예술가단체 등의 사업체, 문예진흥기금 수혜 실적 등이 있는 예술인들이 우선적으로 가입할 것으로 예상됨
- 이후에는 공제사업본부의 가입자격 심사를 통과한 예술인들이 가입자격을 획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가입자들이 늘어나는 속도는 빠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따라서 초기 예술인 공제사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한 조건을 갖추기 위해 약 3년간은 2만명선에서 가입자가 유지되다 장기 약 10년에 걸쳐 최대 8만명까지 증가하는 것을 가정할 수 있음
- 가입자에 대한 사항은 공제사업에 투여될 출연금, 보조금 등의 재원과 가입자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지원수준에 따라 가입자 스스로 혹은 공제사업본부에서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본 보고서 제5장의 2절의 적립성 상품의 중장기 현금흐름 분석(표 5-5)에서는 최대 8만명까지 확대될 것을 전제로, 사망률을 고려하여 해마다 인원이 일정하게 증가하는 것을 가정하고 있음

- 이에 따르면 중기로 볼 수 있는 4년차인 2013년에는 약 4만명, 5년차인 2014년에는 약 4만 7천명, 그리고 6년차인 2015년에는 5만3천명 정도가 될 것으로 추정

제2장 예술인 복지모델 가입 기준 설정

제2절 예술인 공제사업 가입방안 및 저소득 예술인 지원방안

1. 예술인 가입유도 방안

- 많은 예술인들의 공제사업 가입은 예술인공제사업의 성과와 발전을 위해 중요한 사항임
 - 첫째, 공제상품이 보험의 성격을 지니므로 많은 사람들이 공제사업에 참여할 수록 위험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며,
 - 둘째, 예술인들이 공제사업에 참여함으로써 문화예술인들이 서로의 예술성을 인정하고 함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는 연대성을 강화할 수 있음
- 예술인들의 적극적 가입유도를 위한 방법은 ①공제사업 가입과 동시에 상해보험을 가입시켜 준다는 점을 적극 알리는 것과 ②적립성 상품에 대해 공제부금 수준별로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임
- 예술인의 가입을 위한 홍보 및 현장네트워크 구축방안
 - 예술인 공제사업 시행후 공제사업에 대한 초기 홍보활동은 예술인은 물론 일반인의 예술인공제사업에 대한 인식에 높은 영향력을 미칠 것임
 - 예를 들어, 소기업소상공인공제사업에서는 공제사업 시행시 적극적으로 신문과 방송을 통한 대국민 홍보를 시행하였음⁸⁾
 - 이에 반해, 국민연금제도는 홍보부족으로 인해 지금까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로써 초기 제도도입이후 연금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높이기 위한 홍보가 부족하였으며, 이후 각종 언론 및 전문가들의 문제점 지적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해 많은 국민들이 여전히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많은 불신을 지니고 있음
 - 그나마 최근들어 많은 국민들이 제도에 대해 바르게 인식할 수 있게 되었다고 평가받고 있지만, 정부와 연금공단의 적극적인 언론홍보에도 불구하고 초반의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는 것은 여전히 어려운 문제로 남아 있음
 - 위와 같이 초기에는 공제사업에 대한 기대와 우려의 목소리들이 동시에 발생할

8) 연구진도 방송, 신문 등을 통해 노란우산공제가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음

제2장 예술인 복지모델 가입 기준 설정

수 있으며, 일정한 부문에서 공제사업에 대한 부정적 의견도 많이 나타날 수 있음

- 따라서 공제사업본부가 꾸러질 경우 공제사업팀(가칭)에서는 예술인 공제사업에 대한 홍보를 맡아 언론 및 방송 등을 통해 예술인은 물론 일반인들도 예술인공제사업을 인식할 수 있도록 알리는 작업을 선행
 - 초기에는 공제사업에 대한 이해와 정보부족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가입대상자들의 오해를 보완할 수 있도록 전문가를 영입하여 체계적으로 홍보사업을 진행하고 언론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 논평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
- 수도권 거주 예술인들에 비해 지방에서 활동하고 있는 예술인들은 예술인공제사업의 시행과 주요내용들에 대해 상대적으로 풍부한 정보를 얻기 어려울 수 있음
- 현 문화예술위원회 조직에 공제사업본부가 꾸러질 경우 지방조직부채로 인해 지방예술인들에게 사업에 대해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 수 있음
 - 따라서 지방 예술위원회 혹은 문화예술재단들과의 협조를 통해 초기에 협력조직의 일부 직원들이 공제사업에 대한 홍보를 담당하거나 공제사업본부에서 일부 인건비 지원을 통해 지방에서 공제사업을 홍보하고 관리하는 직원을 채용하는 방안 검토
 - 위와 같은 외부 직원 혹은 일시적 직원의 활용은 단순히 제도 홍보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제도초기 나타날 수 있는 가입, 공제부금 납부, 해약 등의 민원 및 이의신청을 함께 담당하도록 교육 및 지원
- 가입유도를 위해 기존 공제회들의 경우 언론보도 및 기고, 방송 이외에도 각종 홍보책자, 브로셔 등을 제작하고 이를 배포함으로써 제도홍보를 강화
- 과학기술인공제회는 기획홍보실내 홍보센터를 통해 설립초기부터 지금까지 주요 사항들에 대한 홍보동영상을 포함하여 브로셔와 공제회 홍보소식지를 2007년부터 제작하여 배포하고 있음
- 공제사업본부를 중심으로 찾아가는 홍보 및 각종 문화행사 지원
- 공제사업 시행 전후에 각종 문화예술단체, 기관, 협회 등을 대상으로 예술인

제2장 예술인 복지모델 가입 기준 설정

공제사업을 알리는 각종 회의 및 행사 등을 개최

- 필요할 경우 혹은 지방 문화예술인들을 위해 직접 예술인들의 작업현장으로 찾아가는 홍보방안 마련
- 공제사업본부 차원에서 정부(문화체육관광부 등), 정부산하 예술기관 주최 각종 문화 및 예술행사, 각종 예술공연 및 전시행사 등에 대한 행사지원을 통해 예술인 및 일반인들의 예술인공제사업에 대한 인지도를 높일 수 있음
 - 특히 지방자치단체별로 최근 들어 많은 지역문화 축제 및 문화행사(국제영화제, 연극제 등)들이 개최되고 있으므로 행사에 참여하는 예술인들을 간접적으로 지원하거나 함께 참여함으로써 공제사업에 대한 홍보 강화

2. 저소득 문화예술인 복지모델 가입방안 및 지원방안

- 예술인 공제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저소득 예술인들에 대한 지원이라 할 수 있음
 - 예술인 공제사업의 가입자격을 예술성이 명확하게 확인되고 인정되는 예술인과 단체만을 대상으로 할 경우 자칫하면 예술인 공제사업이 소득이 높은 예술인들의 추가적인 소득보장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는 점임
 - 이미 각종 사회보장제도를 통해 혜택을 누리고 있는 예술인들만이 공제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변모될 수 있음
 - 따라서 모든 예술인들이 참여할 수 있으며, 안정적 소득을 가진 예술인뿐 아니라 소득이 낮은 예술인들도 모두 참여할 수 있는 공제사업을 도입하는 것이 중요한 관건이라 할 수 있음
- 여기서는 예술인 공제사업의 주요 목적중 하나인 저소득 예술인들을 지원하고 가입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들이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함
 - 저소득 예술인들이 공제사업에 가입할 수 있는 유인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음
 - 첫 번째는 저소득예술인들의 예술인 공제사업 가입시 적립성 보장상품에 대한 가입기준을 낮게 설정하며, 공제부금 납부가 어려운 경우에도 최소 공제부금

제2장 예술인 복지모델 가입 기준 설정

납부시 가입자격을 계속 유지시켜주는 방안임

- 두 번째는 적립성 공제상품에 가입한 예술인들에게 공제부금에 대한 추가 인센티브 지원시 하후상박(소득이 낮은 가입자에게 많은 인센티브 제공)으로 공제부금을 지원하는 방안임
- 세 번째는 가입과 동시에 보장성 공제상품에 가입시켜 줌으로써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임
- 네 번째는 다른 보험상품들과 달리 예술인 공제사업에서 운영예정인 적립성 상품은 공제부금 납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는 점임

□ 첫째, 예술인 공제사업에서 운영할 적립성 공제상품은 가입자의 소득과 희망에 따라 공제부금을 납부 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부여

- 저소득 예술인들의 경우 많은 액수의 공제부금을 선택할 수 없고 지속적으로 공제부금을 납부할 수도 없는 것이 현실임
- 따라서 저소득 예술인들을 고려하여 공제부금의 기본계좌금액을 낮게 설정하여 저소득 예술인들이 이 최소공제부금만 납부하면 공제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함
- 유니버설공제의 특징을 활용하여 정기적·지속적으로 공제부금을 납부하지 않더라도 반기 혹은 1년 동안에 최소 공제부금을 납부한 가입자에 대해서는 공제사업 가입자격을 계속 유지시켜 주는 방안임

□ 둘째, 적립성 공제상품의 경우 문예진흥기금에서 각출하는 재원의 일부를 공제사업 가입자들에게 지원할 경우 소득이 낮은 사람에게 지원비율을 높여 지원금액이 하후상박이 되도록 제도를 설계

- 이 경우 각출금의 비율과 저소득 예술인과 고소득 예술인간의 지원비율을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 저소득 예술인들에게 많은 혜택을 부여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 연금수령시 본인 부담금에 비해 높은 연금급여를 수령할 수 있을 것임

□ 셋째, 예술인 공제사업에 가입시 가입회원 모두에게 보장성 상품에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

- 공제사업 가입과 동시에 지원하는 상품으로 소득이 높고 낮음에 상관없이 지원

제2장 예술인 복지모델 가입 기준 설정

하는 상품임

- 저소득 예술인들의 경우 낮은 소득으로 인해 미래에 발생할 위험에 대비하여 보험상품에 가입할 여유를 지니고 있지 못함
 - 예술인 공제사업에서 가입과 동시에 보장성 상품을 지원함으로써 저소득 예술인들의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할 수 있으며, 부양가족들에게도 희망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공제상품이라 할 수 있음

□ 넷째, 저소득 예술인들의 경우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발생하지 않는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어 공제부금 납부방식의 다양성 확보

- 저소득예술인들은 정기적으로 공제부금을 납부하는 것에 대해 부담을 지닐 수 있으므로, 예술인 공제사업에서는 형편에 맞게 납부방식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함
- 즉 사업장(예술기관단체)소속 예술인과 지속적 소득이 가능한 프리랜서 예술인들은 월납, 분기납으로 공제부금을 납부하지만 저소득 예술인들은 공제부금을 소득이 발생시 납부할 수 있도록 함
- 이를 통해 공제부금 납부에 대한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임

3. 고령예술인 공제사업 가입방안

□ 예술인 공제사업 도입시 주요 공제상품중 하나인 적립성 상품의 경우 연금의 특성에 따라 일정연령을 넘어선 고령계층은 적립성 상품에 가입할 수 없게 됨

- 즉, 연금상품의 경우 최소가입기간을 가입하고 연금수급연령에 도달해야만 연금에 대한 수급권을 지니게 됨
- 예를 들어 최소가입기간을 10년으로 연금수급개시연령을 60세로 할 경우 도입 당시 50세 이상의 노령계층은 적립성 상품에 가입할 수 없게 됨
- 따라서 공제사업 도입시 55세 혹은 60세 이상의 고령예술인은 공제사업에 가입 하더라도 연금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문제가 있음

□ 보장성 상품의 경우에도 고령예술인의 경우 사망률, 상해에 대한 위험률이 청장년층에 비해 높아짐에 따라 보험요율이 높아지고 보험료에 대한 부담이 증가할 수 있음

제2장 예술인 복지모델 가입 기준 설정

- 위와 같은 연령상의 특징을 고려시 현재의 고령예술인이 공제사업에 가입할 수 있는 여건이 매우 어렵다 할 수 있음
 - 그러나 고령예술인들의 문화예술 발전에 대한 기여와 노후 소득이 낮아진다는 점을 고려하여 공제사업에의 가입과 지원방안에 대한 모색이 필요함
- 우선 적립성 상품의 경우 55~64세 사이의 고령예술인은 본인이 희망할 경우 적립성 상품에 가입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설정함
 - 동 연령대의 문화예술인이 예술활동을 통해 정부 혹은 지자체 등의 지원금을 받을 경우 청장년 예술인과 동일한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함
 - 그러나 사전에 연금수령액이 낮을 수 있다는 점을 공지할 필요가 있음
- 보장성 상품의 경우 보험료 인상에 대한 공제사업의 부담을 고려하여 우선 제도 시행이후 고령연령층의 위험률과 경험률의 축적에 따라 지원방안을 고려
- 고령예술인의 경우 공제사업의 주요 상품인 적립성 및 보장성 상품을 통한 지원은 한계를 지닐 수 있으므로, 별도의 지원방안을 강구
 - 첫째, 기존 고령 문화예술인 소득지원제도라 할 수 있는 원로문화예술인 지원과 한국영화인복지재단의 공로영화인 지원사업들과의 연계를 통해 생활비 지원을 강구
 - 둘째, 공제사업 기금의 축적과 재원규모에 따라 혼자 살거나, 일정소득 이하의 고령문화예술인들을 대상으로 의료비와 주거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의 검토

제3장 예술인 복지모델 (복지)공제상품 설계

제3장

예술인 복지모델 (복지)공제상품 설계

제1절 : 공제상품 설계의 기본 아이디어 - 유니버설 보험(Universal Life Insurance)

1. 유니버설 보험의 도입배경 및 개요
2. 유니버설 복지모델의 구체화를 통한 복지상품(안) 개발 및 분석
3. 다른 공제회 주요 운영상품

제2절 : 보장성상품(안)

1. 보장성 상품 제안의 배경
2. 보장성 상품 설계(안)

제3절 : 적립성 상품(안)

1. 적립성 상품 제안의 배경
2. 적립성 상품 설계(안)
3. 적립성 상품 운영에 있어서 고려할 사항

제4절 : 중장기 예술인 복지모델 추진전략 및 로드맵

1. 실업공제부금 개발
2. 기타 공제사업 개발
3. 공제사업 서비스 확대

제3장 예술인 복지모델 (복지)공제상품 설계

제1절 공제상품 설계의 기본 아이디어 - 유니버설 보험(Universal Life Insurance)⁹⁾

1. 유니버설 보험의 도입배경 및 개요

- 유니버설 보험은 1970년대 말 미국에서 등장한 신종 보험형태로 금융시장의 변동에 따른 신축성과 현실성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고안된 생명보험 형태임
 - 1970년대 후반부터 고금리 및 고인플레이 현상으로 미국의 주식시장은 금융투자자들로부터 매력을 잃게 된 반면, 단기금융시장이 투자대상으로서 높은 관심을 끌게 됨
 - 보장금리만을 지급하는 기존의 전통적인 보험상품과 증권투자에 비중을 두는 변액보험¹⁰⁾은 시장에서 선호가 떨어짐에 따라 해약하는 비율이 늘어났으며 이로 인해 생명보험회사의 수지는 급속히 악화하기 시작함
 - 이에 대한 자구책으로 기존의 종신보험형태를 저축부분과 사망보장부분으로 분리시키고, 저축부분에 대해서는 높은 이자율이 확보되는 단기금융시장에 투자하여 높은 수익률을 가입자에게 보장하는 유니버설 보험(Universal Life Insurance)을 도입함
 - 이와 같이 시장력 확보에 주력한 유니버설 보험은 보험가입자들로부터 상당한 호응을 얻으면서 급속하게 확대됨
- 기존의 종신보험이 정기적으로 보험료를 내야하고 오랫동안 그 돈을 찾을 수 없는 한편 해약할 시에는 막대한 원금손실이 불가피하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는 반면에, 유니버설 보험은 이러한 기존 종신보험의 문제점을 보완한 상품이라고 할 수 있음
 - 유니버설 보험의 가장 큰 특징은 보험계약자의 욕구 변화에 부응하는 유연성(flexibility)이라고 할 수 있음. 보험계약자는 보험수요 변동에 따라 저축액, 보장액, 보험료 납입 시기와 금액 등을 조정할 수 있으며 아울러 보험료 납부도 중단할 수 있음. 보험료 미납시 회사는 그 계약의 저축 부분으로부터 보장부분

9) 본 절에서 유니버설보험의 구조·계약형태 및 특징과 관련해서는 한국FPSB(2009)의 『위험관리와 보험설계, 중 유니버설 생명보험에 대한 설명을 토대로 요약 정리했음을 밝혀둠.

10) 기존의 종신보험 상품과 달리 보험금액이 보험계약준비금의 투자실적에 따라 변동되게 함으로써 인플레이에 대응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을 둔 변액보험(Variable Life Insurance) 역시 고인플레이의 대응책이 되지 못함에 따라 점차 인기를 잃게 됨.

제3장 예술인 복지모델 (복지)공제상품 설계

과 사업비부분의 비용을 공제함

- 저축과 보장 부분이 분리되어 있으며, 보험료의 각 구성요소가 개별화되어 있어 개별적으로 가격이 산정됨
- 유니버설 보험은 투자형 생명보험으로 시중금리 수준의 금리 부여함
-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초기단계이지만 미국에서는 생명보험 계약의 일반적 상품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2007년 7월 미국계 메트라이프생명이 처음 상품을 낸 이후 삼성생명과 교보생명이, 외국계에서는 PCA생명과 AIG생명이 도입(조성한 외, 2008)

2. 유니버설 복지모델의 구체화를 통한 복지상품(안) 개발 및 분석

가. 유니버설 적립 모델에 기초한 복지상품의 개발 설계

□ 예술인들의 공제 복지수요에 대한 기초분석

- 일반적으로 공제는 조합원이 공동으로 일정한 부담금(출자금, 출연금, 부금, 기금, 예탁금 등)을 모아 조합원 가운데 일정한 공제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 공동으로 조성한 재산을 운용하여 자금대여, 보증 및 투자를 하는 것임
- 이 경우 수익이 우선시 되지 않는다는 점과 수학적인 가정 등에 대한 감독기관의 통제가 높지 않다는 측면에서 민간의 금융상품과 구별 될 수 있을 것임
- 선행연구(「예술인공제회 설립에 대한 예술인 인식 및 복지 수요 조사」, 「문화예술인공제회 설립을 위한 기초연구」)를 통해 분석해 볼 때, 복지수요는 각 문화예술인 별 특성에 따라 노후보장에서부터 각종위험보장에 이르기까지 직종별로 다양하게 나뉘질 수 있음¹¹⁾
- 문화예술인으로 통칭되는 문학, 연극, 음악, 무용, 영화, 어문, 출판, 문화기관 종사자의 경우 각각의 복지 수요에 있어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임

11) 박영정 외(2008)의 연구결과,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았으면 하는 분야중 가장 필요로 하는 지원은 노후(은퇴 후) 연금제도, 질병상해에 따른 의료비 및 생활비 지원, 4대 사회보험에 대한 보험료 지원의 순서로 나타났다. 예술인공제회에서 운영했으면 하는 상품으로는 노후연금 상품운영이 51.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실업급여 지원이 12.7%, 주거안정지원이 11.0%로 나타났으며, 이외에도 자녀교육비 지원(9.3%), 업무상 상해지원(6.8%) 등의 순서로 조사되었음

제3장 예술인 복지모델 (복지)공제상품 설계

- 현재 추진 중인 예술인공제사업의 경우 정부의 지원을 기반으로 기본적인 보장구조를 설계하고 그 이상의 복지수요에 대해 확대된 조립형 모델을 구축함으로써, 각각의 문화예술인 직종별로 필요한 욕구를 선택하는 방안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 기본적인 보장이란, 최저사망보증(재해사망, 재해장해)을 설정하고, 추가적으로 예술인들의 노후 보장을 지원하는 형태가 될 것임
 - 즉 선행연구의 복지수요 항목을 나열하고, 이후 위험보장 및 노후보장을 중심으로 확장이 가능한 구조를 갖추도록 할 수 있음
 - 재해사망, 재해장해를 기본계약으로 구성
 - 특정한 자격(기간, 소득 등)을 갖춘 회원에 대해 노후보장상품을 제공
 - 해당상품안에 가입 유인책을 제공
 - 계약자의 부담금 징수와 관련하여 원천징수 형태의 적립금 확보가 힘들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임금근로자의 숫자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임
 - 또한 자영예술인으로부터의 자율적인 적립 유도도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
 - 따라서 제도가 정착되기까지 정부의 지원금 및 세제 등을 통한 가입 유인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예술인들의 적립형 복지수요에 대한 혜택은 공제사업 초기 책정된 지원 예산에 따라 좌우될 것임
 - 가장 기초적인 형태로는 재해장해와 관련된 기본보장을 해주고 계약자 본인의 적립분은 노후 자금으로 활용하는 것이나, 가입자들의 수요에 따라 공제 사업을 다양화하여 모두 대응하기 보다는 예산 규모에 따라 제공 가능한 서비스를 사전에 확정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일 것임
 - 예를 들어, 공제사업초기에는 「기본보장+노후보장」을 최소 제공 서비스로 하고 적립금 및 정부지원예산이 증가함에 따라 취업 및 재교육지원, 생활자금 대여, 여가문화서비스, 예술인복지카드 등의 다양한 서비스도 추가 제공 가능할 것임
 - 정리하면, 문화예술인의 특성상 광범위하게 퍼진 복지수요에 모두 대응하기 보다는 조사된 복지수요를 기반으로 기본적인 복지모델을 설정하고, 각 항목별 혜택의 확대에 따라 소요되는 예산을 추정한 후, 초기사업에서 실행 가능한 수준부터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으로 판단됨

제3장 예술인 복지모델 (복지)공제상품 설계

나. 공제료 산출의 기초가 되는 예정기초율(예정위험률, 예정이율, 예정탈퇴율, 예정사업 비율) 산출

□ 예정위험률의 산출

- 예정위험률은 보장 담보의 위험 정도에 따라 사고가 발생할 경우 지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통계적으로 산출된 율을 말함
- 보험료산출에 적용되는 예정위험률은 회사(공제회)의 보험금 지급실적 등의 합리적인 통계자료, 통계의 신뢰도를 바탕으로 산출한 경험위험률을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 과거의 경험통계가 없거나 충분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객관성 있는 국내외 통계자료나 위험률 관련자료를 참고하여 보험료율을 산출할 수 있으며, 참조순보험료율을 사용하거나 이를 수정 또는 조정하여 사용할 수 있음(보험업법 제129조 및 보험업감독규정)
- 위험률의 산출 대상에 따라 참조순보험료율 또는 회사(공제회)별 순보험료율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임
 - 참조순보험료율이라 함은 보험개발원에서 보험업권 경험통계에 의해 산출 또는 조정하여 금융감독위원회에 신고한 순보험료율을 말함
 - 회사(공제회)별 순보험료율은 회사(공제회)별로 일정기간 이상의 경험통계를 기초로 산출한 율로 보험료산출에 사용한 보험료율에 대하여 향후 적정성 검증이 이루어짐
- 위의 위험률 구분에 따라 위험률의 적용은 1안) 참조순보험료율 적용, 2안) 회사(공제회)별 순보험료율 적용, 3안) 참조순보험료율을 적용 후 일정기간 후 회사(공제회)별 순보험료율 적용을 고려할 수 있음
 - 1안) 참조순보험료율 적용의 경우 기존 생명보험가입자를 대상으로 산출된 율을 활용하여 예술인을 대상으로 하는 상품개발에 적용하는 것임
 - 이 경우 예술인에 맞는 위험률과의 차이 때문에 사전에 정한 급부 중 특정급부에서 불필요한 위험률차익 및 위험률차손 발생이 가능함
 - 예술인의 경우 소득범위 및 위험에 노출된 활동이 빈번하여 위험률차손이 예상 되며, 따라서 1안을 민간상품 혹은 독립공제모델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제3장 예술인 복지모델 (복지)공제상품 설계

해당 급부에 대한 위험률차손에 대해 정부지원이 선행 보장되어야 함

- 2안) 회사(공제회)별 순보험료율 적용의 경우 현재로서는 사전의 충분한 경험 데이터가 확보되어 있지 않음
- 특히 문화예술인의 경우 각 영역의 직업특성상 동일한 위험률을 산출하기에는 직무영역이 매우 광범위하기 때문에 기술적인 한계가 있음
- 따라서, 상품개발 전 단독의 경험률을 개발하는 것은 불필요할 뿐만 아니라 과도한 비용이 추가될 것임
- 3안) 참조순보험료율을 적용한 후 일정기간 후 회사(공제회)별 순보험료율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초기 상품 혹은 회사(공제회)별 순보험료율 적용 전까지 위험률차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이후 상품의 사용기간이 축적됨에 따라 적절한 요율 변경이 가능할 것이나, 이 경우 요율 변경에 따른 보장급부 축소 등으로, 민원 혹은 계약 해지 등의 문제가 예상됨
- 상품가입기간을 1년 단위로 하고, 매년 보장금액 및 보험료에 대한 투명한 설명이 필요할 것임

- 결론적으로, 정부의 지원 방안에 따라 1안과 3안의 선택이 가능하며 3안 선택 시에는 공제회원을 대상으로 요율 변경에 대한 사전 안내가 충분히 진행되어야 할 것임
- 추천 예정 위험률은 <표3-1>과 같음

<표 3-1> 참조순보험료율

① 생존사망률

연령	남자			여자		
	생존률	사망률	평균여명	생존률	사망률	평균여명
0	0.99667	0.00333	76.40	0.99824	0.00176	84.38
5	0.99969	0.00031	71.78	0.00081	0.00019	84.38
10	0.99981	0.00019	66.87	0.99985	0.00015	74.73
15	0.99964	0.00036	61.94	0.99974	0.00026	69.79
20	0.99938	0.00062	57.08	0.99968	0.00032	64.89
25	0.99921	0.00079	52.27	0.99966	0.00034	60.00
30	0.99927	0.00073	47.46	0.99963	0.00037	55.10
35	0.99907	0.00093	42.64	0.99951	0.00049	50.21

제3장 예술인 복지모델 (복지)공제상품 설계

연령	남자			여자		
	생존률	사망률	평균여명	생존률	사망률	평균여명
40	0.99845	0.00155	37.87	0.99931	0.00069	45.34
45	0.99730	0.00270	33.21	0.99895	0.00105	40.52
50	0.99569	0.00431	28.72	0.99842	0.00158	35.75
55	0.99356	0.00644	24.39	0.99778	0.00222	31.06
60	0.98952	0.01048	20.28	0.99661	0.00339	26.44
65	0.98408	0.01592	16.43	0.99454	0.00546	21.93
70	0.97739	0.2261	12.75	0.98987	0.01013	17.61
75	0.95774	0.04226	9.36	0.98071	0.01929	13.65
80	0.92216	0.07784	6.56	0.96393	0.03607	10.14
85	0.85891	0.14109	4.36	0.93307	0.06693	7.18
90	0.75167	0.24833	2.76	0.87752	0.12248	4.82
95	0.58523	0.41477	1.68	0.78160	0.21840	3.08
100	0.36586	0.63414	1.02	0.62830	0.37170	1.88

② 개인연금 생존·사망률(배당기준)

연령	남자			여자		
	생존률	사망률	평균여명	생존률	사망률	평균여명
45	0.99852	0.00148	39.91	0.99955	0.00045	44.06
50	0.99762	0.00238	35.25	0.99929	0.00071	39.17
55	0.99642	0.00358	30.71	0.99894	0.00106	34.32
60	0.99500	0.00500	26.30	0.99860	0.00140	29.51
65	0.99354	0.00646	21.98	0.99804	0.00196	24.73
70	0.99049	0.00951	17.68	0.99609	0.00391	20.00
75	0.98345	0.01655	13.61	0.98864	0.01136	15.57
80	0.96787	0.03213	9.88	0.97520	0.02480	11.65
85	0.93382	0.06618	6.67	0.95013	0.04987	8.32
90	0.86181	0.13819	4.15	0.90419	0.09581	5.64
95	0.71993	0.28007	2.38	0.82281	0.17719	3.63
100	0.48107	0.51893	1.29	0.68763	0.31237	2.23

제3장 예술인 복지모델 (복지)공제상품 설계

③ 재해(교통재해, 일반재해)사망률

군단연령	재해사망률		교통재해사망률		일반재해사망률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0	0.000198	0.000172	0.000059	0.000079	0.000139	0.000093
5~9	0.000150	0.000085	0.000094	0.000057	0.000056	0.000028
15~19	0.000298	0.000113	0.000214	0.000090	0.000084	0.000023
25~29	0.000392	0.000084	0.000241	0.000046	0.000151	0.000038
35~39	0.000388	0.000111	0.000214	0.000066	0.000174	0.000045
45~49	0.000553	0.000167	0.000291	0.000092	0.000262	0.000075
55~59	0.000889	0.000237	0.000461	0.000155	0.000428	0.000082

④ 재해의 입원률 및 평균입원일수

대표연령	4일 이상 입원율		평균입원일수(4~120일한도)	
	남자	여자	남자	여자
0	0.005610	0.006251	13	14
5~9	0.015382	0.009689	19	18
15~19	0.027899	0.011582	23	22
25~29	0.040689	0.017935	24	20
35~39	0.035167	0.023282	27	24
45~49	0.037360	0.029471	31	30
55~59	0.037181	0.029756	34	35
65~69	0.031895	0.031167	35	36
75~79	0.032616	0.039462	39	39

⑤ 일반재해장해률

* 남자

군단연령	장해률	3~79%일반재해장해률	일반재해장해 50%이상발생률	일반재해장해 80%이상발생률	일반재해장해 100%발생률
0~14	0.000021	0.000016	0.000008	0.000005	0.000003
20~29	0.000149	0.000117	0.000059	0.000032	0.000020
40~49	0.000271	0.000213	0.000107	0.000058	0.000035
60~69	0.000454	0.000358	0.000179	0.000097	0.000059
70~79	0.000472	0.000372	0.000186	0.000101	0.000061

제3장 예술인 복지모델 (복지)공제상품 설계

* 여자

군단연령	장해률	3~79%일반 재해장해률	일반재해장해 50%이상발생률	일반재해장해 80%이상발생률	일반재해장해 100%발생률
0~14	0.000007	0.000005	0.000003	0.000002	0.000001
20~29	0.000023	0.000018	0.000009	0.000005	0.000003
40~49	0.000059	0.000046	0.000023	0.000013	0.000008
60~69	0.000162	0.000127	0.000064	0.000034	0.000021
70~79	0.000247	0.000194	0.000097	0.000053	0.000032

⑥ 보험료납입면제율

구분	보험료납입면제율
납입면제율	보험료 납입방법(m)에 따라- $m \leq 5년 \Rightarrow \pi : P'의 0.05\%$ - $6년 \leq m \leq 10년 \Rightarrow \pi : P'의 0.1\%$ - $m \geq 11년 \Rightarrow \pi : P'의 0.2\%$
장해50~79%발생률	장해50%이상 발생률- 장해 80%이상 발생률

자료: 보험개발원 홈페이지

□ 예정이율의 산출

- 예정이율이란 (보험)공제료를 납입하는 시점과 공제급여 지급 사이에 시차가 발생함에 따라 이 기간 동안 기대되는 수익을 미리 예상하여 일정한 비율로 공제료를 할인해 주는 할인율을 말함
 - 일반적으로 예정이율이 높으면 (보험)공제료가 낮아지고, 예정이율이 낮아지면 (보험)공제료가 높아짐
- 예정이율은 1안) 확정금리 적용, 2안) 변동금리 적용, 3안) 실적배당 적용을 고려할 수 있음
- 1안) 확정금리 적용의 경우 회원이 이율과 급부에 대하여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확정된 이율의 변경에 대한 사전 정보공유가 이루어져야 하고 시장상황의 급격한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기가 쉽지 않음
 - 뿐만 아니라 적정한 이율 확정에 대한 분석이 선행 되지 못할 경우 장기적으로 이차손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 2안) 변동금리 적용의 경우 금리를 통상의 시중 실세금리인 국고채, 회사채,

제3장 예술인 복지모델 (복지)공제상품 설계

정기예금 등의 이율에 따라 연동하여 이차손을 방지하고 시장상황에 적합한 수익률을 제시할 수 있음

- 이 경우 시중의 실세금리에 연동할 수 있는 기준이율을 정하여 공시하여야 함
- 3안)의 경우 투자실적에 따라 투자이익을 나눠주는 형태로 고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 만큼 위험 또한 큰 구조를 가지고 있음
 - 참고로 현재 ‘과학기술인공제회’의 적립형공제급여사업의 경우 연복리 6%로 운영하고 있으며 시중금리 및 공제회의 수익률이 큰 변동이 있을 시에 회원지급률을 변경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음
 - ‘노란우산공제’의 적립형 공제사업의 경우 분기별 공시제도를 활용하고 있으며 2009년 2분기 현재 기준이율은 연 4.2%로 정하고 적용 예정이율은 급부 별로 기준이율 + α 로 차등하여 적용함
- 3안)의 경우 원금이 보장되는 1안), 2안)과 달리 최악의 경우 투자원금이 보장 되지 않아 공제 설립 취지와 맞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 일반적으로 공제기금은 안정성, 적정성, 항상성 등이 담보된 형태의 자산운용을 실행하고, 자산과 부채의 연동을 면밀히 분석하는 ALM 기법¹²⁾이 적용되므로 예정이율을 실적형태로 하기보다는 연동형 금리제도를 채택하여 가입자의 복지를 보장하고, 공제자체의 자산운용에서 유연한 운용을 통해 추가적인 이차이익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임
- 요약하면, 문화예술인을 위한 장기적 자산운영이 이루어져야 하는 측면에서 볼 때 2안)의 선택이 바람직하며 확정금리 적용에 따른 이차손에 대한 재원 마련 대책이 있을 경우 1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음.
- 2안)의 선택을 고려할 경우 추천되는 예정이율 부리식은 <표3-2>를 예술인공제회에 맞게 수정하여(+ α) 적용함.

12) Asset Liability Management의 약자. 은행의 자산(asset)과 부채(liability) 구조를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특히 탄력적 이자율 변동에 대응하여 적당한 수준의 이익목표하에 자산과 부채 비율에 관한 정책을 도모하기위한 경영기법

제3장 예술인 복지모델 (복지)공제상품 설계

〈표 3-2〉 기준이율 산출식 및 적용이율 체계

〈공시이율 적용에 관한 세부기준〉	
□ 정의:	공시기준이율은 산출시점기준으로 「회사채수익률」, 「국고채수익률」 및 「정기예금이율」을 각각 직전 3개월로 가중이동평균하고, 이를 산술평균하여 매월 보험개발원에서 산출, 공시하는 이율
□ 산출식	$\text{공시기준이율} = \frac{A1 + A2 + A3}{3}$ <p>A1 = 회사채수익률의 직전 3개월 가중이동평균이율 A2 = 국고채수익률의 직전 3개월 가중이동평균이율 A3 = 정기예금이율의 직전 3개월 가중이동평균이율</p> $\ast \text{가중이동평균이율}(Ai) = \frac{Mi(-3) \times 1 + Mi(-2) \times 2 + Mi(-1) \times 3}{6}$ <p>Mi(-3): 산출시점 전전월의 15일자 정기예금이율, 직전 3월의 16일부터 직전 2월의 15일까지의 회사채평균수익률 및 국고채평균수익률 Mi(-2): 산출시점 전월의 15일자 정기예금이율, 직전 2월의 16일부터 직전 1월의 15일까지의 회사채평균수익률 및 국고채평균수익률 Mi(-1): 산출시점 당월의 15일자 정기예금이율, 직전 1월의 16일부터 당월의 15일까지의 회사채평균수익률 및 국고채평균수익률(2009년 6월 기준 연금저축 공시기준이율은 4.1%임)</p>

자료: 보험개발원 연금저축보험 공시이율 적용에 관한 세부기준

□ 예정탈퇴율, 예정사업비율의 산출

- 예정탈퇴율은 공제료를 계산할 때 회원이 매년 어떤 비율로 탈퇴할 것인가를 예측하는 기초율을 의미함
- 예정사업비율은 장기적으로 기금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예측하여 공제료에 포함시키는 비율을 말함
- 일반적으로 민간 보험회사에서 유니버설 보험상품을 설계할 경우 보통 5~15%의 탈퇴율을 설정함
- 적용되는 문화예술공제모델(상품)의 경우 경험데이터가 쌓일 때까지 민간 유니버설 탈퇴율의 중간값인 8%를 가정하고 향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제3장 예술인 복지모델 (복지)공제상품 설계

- 참고로 ‘과학기술인공제회’의 경우 중도 탈퇴 시 원금에 이자를 차등지급을 가능하게 하는 방식을 사용함
- 보험업에서 사업비는 크게 예정신계약비, 예정유지비, 예정수급비로 구성됨
 - 보험업에서의 사업비 중 예정신계약비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이는 보험설계사(모집인)의 계약을 유도하기 위한 수단으로 회사별 정책과 상품에 따라 다르게 책정됨
 - 공제사업의 경우 사업비에 신계약비를 책정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일반보험에 비해 적은 사업비가 지출됨
 - 사업비는 보장공제료, 적립금액의 크기에 따라 발생하는 변동비, 공제회 운영을 위한 고정비로 구성할 수 있음
 - 일반적으로 민간보험회사의 경우 보험료 관리를 위한 비용으로 보험료의 20~25%를 상정하고 있으며, 우정사업본부에서 운영중인 보험상품은 이보다 낮은 14%를 관리비로 산정하고 있음
 - 위에 언급된 사항을 고려해 볼 때 추천하는 탈퇴율 및 사업비율은 공제사업의 성격 및 정비지원과 맞추어 고려할 수 있음

다. 예술인의 연령별 상해 및 사망 확률, 예술인들의 보장형 공제 복지수요에 대한 기초분석

- 예술인의 연령별 상해 및 사망 확률은 아직 충분한 기초 데이터를 축적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공제사업이 시작되어 경험 통계를 통해 산출할 수 있음
 - 예술인만을 모집단으로 할 경우 보다 높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일반적인 참조순보험료율보다 높은 위험률을 가지게 됨
 - 무용에 종사하는 예술인의 경우 상해 사고에 관한 위험률이 다른 예술인에 비해 크게 나타나는 등 모집단 안에서도 종사하는 장르에 따라 적용되는 위험률의 차이가 있음
- 예술인의 복지수요 조사 결과 ‘노후연금상품운영’에 대한 욕구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음
 - 그 밖에 일시적 활동 중단 시 생활비 지원, 주거안정 지원, 자녀교육 지원, 사회보험료 보조, 업무상 상해지원, 재취업훈련 지원, 여가서비스 지원 순의

제3장 예술인 복지모델 (복지)공제상품 설계

욕구가 있음

- 초기 재원의 확보와 예술인의 욕구를 고려하여 노후 생활자금 마련에 초점을 두어 개발하고 향후 다양한 보장, 생활보조 및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

□ 납입공제부금, 공제상품, 공제금 급여수준, 급여기준 및 조건 설계

- 노후 생활자금 활용을 위한 자금마련을 적립부분 공제사업으로 분류할 경우 보장부분 공제사업 종류는 예술인의 욕구에 따라 일시적 활동 중단 시 생활비 지원, 주거안정 지원, 자녀교육 지원, 사회보험료 보조, 업무상 상해지원, 재취업훈련 지원, 여가서비스 지원 순으로 분류할 수 있음
- 예술인 공제사업의 취지는 예술인의 노후생활 안정과 관련된 연금상품을 핵심으로 하고, 거기에 다양한 생활보조 상품 및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임
- 공제상품의 개발 시 1안) 적립과 보장을 주계약으로 하는 형태, 2안) 적립과 보장의 일부를 주계약으로 하고 주계약에서 보장하지 못하는 부분을 특약으로 하는 형태, 3안) 적립을 주계약으로 하고 보장부분을 모두 특약으로 하는 형태로 나누어 볼 수 있음
- 2안), 3안)의 경우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여 수지상등을 원칙으로 상품을 개발하는 방식이지만 보통의 공제가 정해진 가입조건을 이미 가지고 있고 단순한 구조를 가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공제는 1안)의 방식으로 공제상품을 개발함
- 1안)으로 공제상품을 개발할 경우 회원을 다시 특성 별로 나누어 상품을 개발하여 제공하는 방법과 모든 회원에게 동일한 상품을 제공하는 방법이 있으며 이는 보장의 범위와 회원의 성격을 고려하여 선택할 수 있음
- 예술인은 소득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적립은 유니버설의 형태로 이루어져야 하며 공제상품의 적립부분을 설계할 경우 가입연령, 납입기간, 보험기간, 공제료의 구조와 급여수준, 기준 등이 고려되어야 함
- 문화예술인의 특성상 공제가입자격이 충족되는 경우 가입연령에 제한을 두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연령이 높을 경우 일반사망, 재해사망 등 보장부분의 역선택의 위험과 최소 납입 기간에 따른 세제효과 등이 고려되어야 함

제3장 예술인 복지모델 (복지)공제상품 설계

- 유니버설 납입방식을 택할 경우 자유로운 납입이 가능하지만 현금흐름이 필요한 제 비용을 충당하기 충분해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 탈퇴되는 회원에 따라 손실이 발생하게 됨
- 사업비와 보장부분 급부 등 필요한 제비용이 별도의 정부지원금으로 운영될 경우 납입지연에 따른 탈퇴를 방지할 수 있으나 장기간 납입하지 않아도 보장이 이루어진다는 점을 악용하는 가입자의 역선택의 위험 역시 고려해야 함

3. 다른 공제회 주요 운영상품

가.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사업

- 소기업·소상공인공제회에서 운영중인 공제상품은 노령·퇴직을 위한 노령·퇴임공제와 사망·상해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돕기 위한 폐업·상해공제임
 - 이외에 중앙회에서는 공제사업 가입자를 위해 상해사망·휴유장해 발생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단체보험에 가입하고 있으며, 보험료는 중앙회가 부담하고 있음
- 구체적으로 공제사업 운영상품 공제금 지급기준을 살펴보면,

폐업·사망	퇴임·노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사업자의 폐업 • 법인사업자의 폐업 또는 해산 • 가입자의 사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인대표의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퇴임 • 만 60세 이상으로 10년이상 부금 납부한 가입자의 공제금 지급 청구

- 공제금 수준은 기본공제금 + 부가공제금(운용실적에 따른 지급)을 지급하며, 2009년도 연간 기준이율은 4.2%(최저기준이율 2% 보장)
 - ※ 2009년도 분기별 기준이율 : 1분기 4.4%, 2분기 3.9%
- 소기업·소상공인공제회의 경우 다른 공제회와 달리 가입자들에 대한 인센티브로써 중앙회에서 보험료를 납부해 주는 상해보험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즉, 가입자가 상해로 인한 사망 및 휴유장해 발생(3%~100%)시 월부금액의 150배(750만원~10,500만원)까지 보장하고 있음

제3장 예술인 복지모델 (복지)공제상품 설계

나. 건설근로자 공제회

- 건설근로자 공제회는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건설일용근로자들의 사업장 변경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한 제도임
 - 주요 공제사업으로는 공제회 설립목적에 맞추어 퇴직공제상품이 중심을 이루고 있으며, 이외에 공제가입자를 위한 복지시설의 설치, 복지증진 사업들을 운영하고 있음
- 퇴직공제금의 청구는 공제부금의 납부월수가 12개월(252일)이상이고, 건설업에서 퇴직하거나 사망 또는 60세에 달한 때(고용보험법 제14조제1항)로
 - 피공제자 자신이 독립하여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 경우
 - 건설업 이외의 사업에 고용된 경우
 - 기간의 정함이 없는 상용근로자로 고용된 경우
 - 부상 또는 질병으로 건설업에 종사하지 못하게 된 경우
 - 피공제자가 사망한 경우
 - 피공제자의 연령이 60세에 이른 경우
 - 기타 건설업에 종사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종사할 의사가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임
- 퇴직공제금의 지급은 납부한 공제부금(고용보험법에 의하여 지원된 공제부금 포함)에 그 이자를 합산한 금액(시행령 제13조제1항)을 지급함
 - 퇴직공제금 = 납부한 공제부금 + 이자 (월복리)와 같이 지급됨
 - 이자는 매년도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고시된 기준이자율을 의미함

다. 과학기술인공제회

- 과학기술인공제회는 산업발전에 주요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과학기술인들의 복지증진과 생활안정을 돕기 위해 2002년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공제회임
 - 주요공제사업으로는 과학기술인연금, 적립형공제급여 및 생활안정대여사업을 주로 하고 있음

제3장 예술인 복지모델 (복지)공제상품 설계

- 과학기술인공제회 상품은 과학기술인연금, 적립형 공제급여사업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외에 생활안정자금대여 사업과 목돈급여 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 과학기술인연금(2009년부터 본격운영)은 과학기술인의 노후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해 도입된 것으로 급여는 부담금적립액 + 운용수익 + 과학기술발전장려금으로 구성됨
 - 부담금은 법정부담금 8.3%와 개인부담금 2.5%이며, 과학기술발전장려금은 정부의 출연금을 통해 충당할 예정(장기적으로 2,000억원)
 - 적립형 공제급여사업은 노후생활안정을 위해 재직기간동안 납부한 부담금에 대해 복리이자율을 적용하여 퇴직후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상품임
 - 본인이 납부하는 부담금은 5~100구좌 한도 내에서 5구좌 단위로 가입(1구좌당 1만원)이 가능하며, 매월 급여에서 일괄 공제하고 있으며, 회원에게 지급되는 이율은 6%(연복리)임
 - 부담금은 자금사정에 따라 증좌 혹은 감좌가 가능(가입 또는 증감좌 후 3개월 이후부터)하도록 하고 있음

제3장 예술인 복지모델 (복지)공제상품 설계

제2절 보장성 상품(안)

1. 보장성 상품 제안의 배경

- 공제사업에 대한 예술인들의 욕구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노후보장에 대한 욕구가 가장 큰 것으로 확인되었고(51.2%), 그 밖에 일시적 활동 중단시 생활비 지원(실업급여), 주거안정 지원, 자녀교육 지원, 사회보험료 보조, 업무상 재해지원, 재취업훈련 지원 등의 순으로 욕구를 보이고 있음(박영정·공혜영, 2008)
 - 이 중 가장 큰 욕구인 노후보장은 적립성 상품으로 반영이 될 예정이지만 주거안정 지원, 자녀교육 지원 등은 기존의 공공부조 제도로 충족이 될 수 있으므로 본 공제사업의 고려대상은 아님
 - 실업급여와 재취업훈련은 그 수요가 크기는 하지만 중장기 복지모델 로드맵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하고, 본 사업에는 포함시키지 않음¹³⁾
 - 공공부조제도로 보장이 가능한 영역과 고용안정과 관련한 영역을 제외하고 가장 수요가 큰 업무상 상해보장 지원을 본 사업에 포함하고자 함
- 위와 같은 예술인들의 욕구를 반영하여 공제상품은 크게 보장성 상품(상해보장측면)과 적립성 상품(노후연금측면)으로 구성됨
 - 보장성 상품은 통해 사망, 상해사망, 후유장애 및 의료실비 등을 지원하는 상품으로 공제사업 가입과 동시에 제공되는 공제사업의 보편적 공제상품임
 - 적립성 상품은 노후 소득보장의 개념으로 본인이 납입한 공제부금과 이를 운용하여 발생한 수익을 더하여 향후 60세 이후에 일시금 또는 연금의 형태로 급여를 수령하는 상품임

2. 보장성 상품 설계(안)

- 보장성 상품은 기초연구(조성한 외, 2008)에서 제안한 것과 같이 사망 및 상해보장을 지원하는 공제상품임

13) 본 장의 제4절에 중장기 복지모델 로드맵이 제시되어 있음.

제3장 예술인 복지모델 (복지)공제상품 설계

- 보장성 상품은 2012년까지 공제사업 가입자가 2만명을 유지한다는 가정 하에 상품을 구성함
 - 분석의 단순화를 위해 여기서는 공제사업 가입자들의 해약률은 없다고 가정하고 분석
- 보장성 상품의 구성
 - 기초연구(조성한 외, 2008)에서는 질병사망과 상해사망에 대한 보장만을 제안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상해사망은 유지하되 질병사망 대신, 예술인들의 활동과 관련된 위험종류를 확대하여 상해로 인한 후유장애와 상해의료비를 추가하였음
 - 보장수준은 상해사망은 2천만원, 상해후유장애는 1천만원, 상해의료비는 50만원, 100만원과 150만원 세 종류로 구성
 - 상해의료비의 경우 예술활동을 하다 상해시 그 상해정도에 따라 최대 지급되는 금액으로 일시불로 지급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술인들의 생활을 일부 보조한다는 측면에서 2~3개월에 걸쳐 지급받는 것으로 가정
 - 보장수준은 다른 보험상품의 수준과 예술인공제사업 가입자 확대에 따른 예산 부담을 고려하여 결정함
 - 전문건설인공제조합의 경우 가입대상자들을 대상으로 상해공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보장수준은 본인희망에 따라 상해사망·후유장애는 1천만원, 5천만원, 1억원, 상해의료비는 50만원, 1백만원, 2백만원을 기준으로 운영중
 - 경찰공제회의 경우 공상으로 인해 상해를 입었을 경우 진료기간에 따라 최소 7주 미만 2십만원, 12주 이상은 5십만원, 퇴직의 경우 1백만원을 별도로 지급하고 있음
 - 소기업소상공인공제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단체상해보험 가입시 월부금액의 150%까지 보장해 최소 750만원에서 1,055만원까지 보장해주고 있음
 - 교원공제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재해사망보험금은 구좌당 1,000만원(최대 5구좌)을 기준으로 하고 있음
 - 위와 같이 여러 공제회 등에서 운영하고 있는 상해에 대한 보장수준을 고려하여 상해사망·후유장애는 전문건설공제조합의 중간정도, 상해의료비는 5

제3장 예술인 복지모델 (복지)공제상품 설계

0~150만원 사이를 고려함

- 보장성 상품 시뮬레이션을 위한 각 상품별 가정은 다음과 같음.
 - 질병사망은 40세 남성 기준 위험률(0.00068)을 기준으로 함
 - 상해사망의 경우 연령, 직업 혹은 직종에 따라 4가지 등급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사망률이 가장 낮은 것은 1급(예술가기준: 미술가, 사진작가, 작곡가, 지휘자, 성악가, 무용가 등)¹⁴⁾, 가장 높은 것은 4급(곡예사, 스티트맨 등)이며, 본 연구에서는 중립적으로 1급과 2급의 중간인 1.5급을 기준으로 함
 - 이 경우 적용 위험률은 1급(0.0004)과 2급(0.00073)의 산술평균을 적용
 - 상해 후유장해의 경우 상해사망과 같이 1~3급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여기서는 1급과 2급의 산술평균을 적용(0.00019)
 - 상해등급에 따라 보장금액의 3%에서 100%까지 지급하며, 사고발생 건별로 산정됨
 - 상해활동 지원비 역시 1.5등급에 해당되는 위험률을 적용하여 분석을 시도
 - 의료비 중 본인부담분에 대해 보장금액 한도 내에서 지급하며, 상해후유장해와 마찬가지로 건별로 산정됨
 - 각 보장성 상품에 대한 기준등급은 중립적 가정이라 할 수 있는 1.5등급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예술인들의 종사 분야에 따라 등급은 변동될 수 있으며, 등급상향조정시 위험률도 역시 높아져 가정된 보험료 수준을 초과할 수 있음
 - 보장성 상품을 운영하기 위한 별도의 관리비는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앞에서 설명한 예정사업비율을 고려시 민간보험회사는 보험료의 약 20%를, 우정사업본부에서 운영중인 보험상품은 약 14%를 관리운영비로 지출하고 있음
 - 따라서 실제 상품운영시 관리비를 고려하게 되면 고려수준에 따라 보장수준과 보험료의 변동을 예상할 수 있음
- 플랜 1: 상해사망금(2,000만원), 상해후유장해(1,000만원), 상해활동 지원비(25만원×2개월분=50만원)를 보장시
 - 보장성 공제상품의 첫 번째 플랜은 상해사망금 2,000만원과 상해후유장애

14) 2급의 경우 1급에 비해 위험률이 다소 낮은 조각가, 연기자, 대중가수 등이 대상이 됨. 구체적인문화예술 장르별 상해위험등급(안)은 부록을 참조

제3장 예술인 복지모델 (복지)공제상품 설계

1,000만원, 상해활동지원비 50만원을 보장하는 것임

- 위험률을 기준으로 1인당 보험료는 약 33천원(연간) 수준이며, 이를 기준으로 초년도 총보험료는 약 6억 61백만원이 소요됨

〈표 3-3〉 보장성 상품 플랜 1

(단위: 명, 원, 십만원)

연도	인원수 가정	인당보험료 수준	총보험료
2010	20,000	33,091	6,618
2011	20,000	33,091	6,618
2012	20,000	33,091	6,618

- 여기서의 추계는 앞에서 전제한 것과 같이 해약률이 “0”이며, 40세 남자를 가정한 것으로 연령과 성별이 변경됨에 따라 전체 보험료와 수지는 변할 수 있음
- 보장성 보험상품을 공제사업본부가 아닌 외부 기관에 위탁시 운영비용이 추가 될 경우 적자시점은 앞당겨지거나 공제상품의 보장수준이 낮아질 수 있음
 - 공제상품 보장수준 변경에 따른 수지변화는 아래의 플랜 2와 플랜 3에서 살펴봄

□ 플랜 2: 상해사망금(2,000만원), 상해후유장해(1,000만원), 상해활동 지원비(50만원×2개월분=100만원)를 보장시

- 보장성 공제상품의 두 번째 플랜은 첫 번째 플랜과 동일하지만 상해활동 지원비를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조정한 것임
 - 상해 정도에 따라 상해활동 지원비 수령액은 변할 수 있지만, 최대 100만원 까지 보장시 상병수당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위험률을 기준으로 1인당 보험료는 약 43천원 수준이며, 이를 기준으로 초년도 총보험료는 약 8억 57백만원이 소요됨

제3장 예술인 복지모델 (복지)공제상품 설계

〈표 3-4〉 보장성 상품 플랜 2

(단위: 명, 원, 십만원)

연도	인원수 가정	인당보험료 수준	총보험료
2010	20,000	42,862	8,572
2011	20,000	42,862	8,572
2012	20,000	42,862	8,572

- 플랜 3: 상해사망금(2,000만원), 상해후유장해(1,000만원), 상해활동 지원비(50만원×3개월분= 150만원)를 보장시
- 보장성 공제상품의 세 번째 플랜은 첫 번째, 두 번째 플랜과 동일하지만 상해활동 지원비를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상향조정할 것임
 - 위험률을 기준으로 1인당 보험료는 약 45천원수준이며, 이를 기준으로 초년도 총보험료는 약 9억 11백만원이 소요됨

〈표 3-5〉 보장성 상품 플랜 3

(단위: 명, 원, 십만원)

연도	인원수 가정	인당보험료 수준	총보험료
2010	20,000	45,554	9,111
2011	20,000	45,554	9,111
2012	20,000	45,554	9,111

- 예술인들의 경우 본인들이 활동하고 있는 영역에 따라 보장성 상품에 대한 욕구가 달리 나타날 수 있음
- 예를 들어 연극, 무용수 등 활동이 많은 예술인들의 경우 상해사망금에 비해 상해활동지원비에 대한 욕구가 높을 수 있는 반면에 미술가, 작곡가, 시인 등은 상해활동지원비보다는 상해사망에 대한 욕구가 높을 수 있음
 - 앞의 분석이 상해활동지원비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면 여기서는 위험률이 낮은 대상군을 중심으로 상해사망보험금을 상향조정할 경우의 보험료 수준을

제3장 예술인 복지모델 (복지)공제상품 설계

살펴보았음

- 이 경우 위험률은 낮아지게 되며, 상해후유장에 1,000만원, 상해활동지원비는 50만원을 기준으로 하여 분석함
- 분석결과 상해사망금을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조정시 보장성상품 플랜1의 보험료에 비해서는 다소 증가하지만 상해활동지원비를 100만원, 150만원으로 상향조정한 것에 비해서는 낮은 33,791원 수준임
 - 연간소요예산도 6억 75백만원으로 상해활동지원비 상향시의 약 8억 6천만원, 8억 7천만원에 비해서는 낮다는 것을 볼 수 있음
 - 상해사망금을 4천만원으로 좀 더 높일 경우 1인당 보험료는 37,791원이며, 연간 총보험료는 약 7억 56백만원 수준으로 분석됨
- 이를 통해 살펴볼 때, 공제사업의 예산효율성을 높인다는 측면에서 문화예술분야의 장르별로 보장성 상품의 구성을 다르게 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음
 - 그러나 이는 단순히 장르만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보장성 상품의 구성을 다양하게 고려할 경우, 가입자들의 욕구도 함께 고려한 상품구성이 될 필요가 있음

〈표 3-6〉 보장성 상품에 대한 비교(저위험직군: 작가, 미술가 등)

(단위: 명, 원, 십만원)

연도		인원수 가정	인당보험료 수준	총보험료
상해 사망금	3천만원	20,000	33,791	6,758
	4천만원	20,000	37,791	7,558

- 보장성 상품의 경우 상품의 성격상 전문성(손해사정인 등)과 많은 인력이 소요되므로 공제사업의 안정적·효율적 운영을 위해 보장성 상품은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이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운영중인 소상공인 공제사업의 경우 공제사업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보장성 상품을 지원하고 있으며 자체 운영보다는 외부 보험회사에 위탁하여 이를 관리하고 있음

제3장 예술인 복지모델 (복지)공제상품 설계

- 보장성 상품을 공제사업본부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할 경우 예술인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상품개발과 운영이 가능 할 수 있음
 - 그러나 사업운영을 위한 제반 조직, 특히 상해발생시 이를 판정할 수 있는 손해사정업무를 위한 전문가 영입 등이 필요하며, 지방예술인들의 상해사고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데도 많이 시간이 소요될 것임
- 예술인 공제사업의 경우 소기업·소상공인공제사업과 같이 보장성 상품을 운영하기 위해 추가적인 인력을 확보하기보다는 외부의 위탁을 통해 경영 및 조직관리의 효율화를 기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표 3-7〉 보장성 상품을 자체운영 및 외부위탁시 장단점

구분	자체 운영	외부위탁
장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품개발에서 손해사정에 이르는 운영전반에 걸쳐 공제기관의 주도적인 사업운영이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개시까지 준비기간 단축 - 판매관련 소수인력으로 사업시행 - 보험사의 전문인력 및 노하우 활용
단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직 및 시스템 구축유지를 위한 사업비 소요 및 사업준비를 위한 기간 필요 - 준비금적립, 회계 등 보험사에 준하는 공제관리 시스템 필요 - 일정규모 공제료 규모가 안되는 사업초기 손해를 변동에 따라 손익 변동 - 전문성 및 경험축적기간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험사의 인프라를 활용함에 따라 공제기관 역할이 판매기능으로 제한

제3장 예술인 복지모델 (복지)공제상품 설계

제3절 적립성 상품(안)

1. 적립성 상품 제안의 배경

- 예술인들의 복지욕구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노후보장임(박영정·공혜영, 2008)
 - 이것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공적 노후소득보장제도인 국민연금에서 예술인들의 다수가 안정적으로 포괄되고 있지 못하는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보임
 - 동 연구에서 예술인들의 국민연금 가입률을 52.0%로 파악하고 있으며, 예술인들의 노후대비책으로 국민연금을 꼽은 예술인들도 51.3%에 불과한 것으로 밝히고 있음
-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중 실직휴직, 사업중단, 3개월 이상 입원 등에 따른 납부예외자의 비율은 2009년 4월 현재 57.8%에 달하고 있으며, 국민연금보험료 미납률도 지역가입자의 경우 전체의 22.1%를 차지하고 있어 국민연금의 사각지대에 처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음¹⁵⁾
 - 예술인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예술인들은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의 비중이 사업장가입자의 비중보다 높은 특성을 가지고 있음
 - 2006년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예술인의 노동시장 종사상 지위(자영업자와 임금근로자)는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로 분류될 수 있는 전업작가자유전문직이 33.8%, 자영업·고용주가 13.4%로 총 47.2%를 차지하는 반면,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로 분류될 수 있는 정규고용직이 30.1%, 임시고용직이 8.8%로 총 38.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문화관광부·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2006)
 - 한편, 국민연금 가입자 자료를 통해서 보더라도 지역가입자로 분류되는 자영 예술인의 비중이 높음
 - 국민연금에 가입중인 예술인의 69.5%가 자영자로 분류되고 있어 전체 가입자 중 자영자 비중인 47.6%를 크게 상회하고 있음(이용하, 2009)

15) 국민연금공단 내부자료

제3장 예술인 복지모델 (복지)공제상품 설계

- 이 같은 실태자료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공적 노후소득보장제도인 국민연금에 대한 예술인들의 적용실태는 상당히 취약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 따라서 공적제도인 국민연금제도에 제대로 포괄되지 못하는 예술인들에게 노후소득상실의 위험을 커버해줄 수 있는 제도가 절실한 것으로 판단 됨
 - 예술인 공제사업은 국민연금 가입기회를 갖지 못한 예술인(무연금), 국민연금 가입자라 하더라도 납부예외 기간이 길어 수급권 확보가 쉽지 않은 예술인(무연금),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채워 수급권 확보가 가능하더라도 낮은 신고소득으로 인해 적정한 연금액을 확보하기 어려운 예술인(저연금)을 대상으로 노후소득보장 지원
 - 지원방식은 예술인 스스로가 자신의 노후를 대비할 수 있도록 개인연금형 상품을 운영하고 정부가 개인이 납부하는 공제부금에 일정정도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함
 - 가입자 본인이 납부하는 공제부금에 정부에서 일정비율을 지원하여 시장(민간 금융사)에서 개인적으로 조달할 수 있는 금융상품보다 높은 수익비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함(즉, 공제부금 지원방식을 채택함)
 - 정부의 공제부금 지원은 예술인들의 가입유인을 제고하는 좋은 수단이 될 뿐만 아니라 예술인의 사회적 가치를 정부가 인정하고 이에 대해 정부가 지원을 한다는 상징적인 의미도 얻을 수 있음

2. 적립성 상품 설계(안)

가. 설계상 고려사항

- 수급자격 획득을 위한 최소납입기간, 수급개시종료 연령
 - 수급권 확보를 위한 최소 납입기간 설정: 10년
 - 수급개시연령은 60세를 기본으로 하되, 희망에 따라 개시연령 연장 가능하도록 하고 수급기간은 20년으로 함
 - 최소 납입기간을 충족시킬 수 없어 수급권 확보가 어려운 50세 이상의 예술인

제3장 예술인 복지모델 (복지)공제상품 설계

에게 가입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도록 제도도입시 특례제도 고려

□ 공제부금 보조금 지원대상

- 저소득자에게는 보조율을 높이고, 고소득자에게는 보조율을 낮추는 하후상박식의 보조방식 채택으로 세대내 소득재분배 기제 첨가
- 보조금 지원대상을 전체가입자로 할 것인지, 공제사업을 통해서도 적정한 급여 수준을 보장받기 어려운 저소득 예술인으로 한정할 것인지 판단의 문제가 남아 있음
 - 즉, 전체가입자에게 소득수준별로 지원율을 달리할 것인지, 일정 소득수준 이하의 가입자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설계할 것인지 결정할 필요가 있음
- 본 연구에서는 지원대상 선정을 위해 설정된 소득기준선 이하의 회원에 대하여 하후상박의 지원율을 적용하되 소득이 낮을수록 지원율이 점증하는 방식(1안), 1안과 동일하지만 지원율을 균등하게 배분하는 방식(2안), 그리고 전체 회원에 대해 지원하되 지원율을 균등하게 배분하는 방식(3안)을 각각 검토하고자 함

나. 정부보조금 지원대상 선정기준 검토

□ 정부보조금 지원대상자는 예술인 공제사업 가입자 전부가 아니라 예술인 공제사업 가입자중 소득이 낮아 노후소득보장의 사각지대에 처할 가능성이 큰 국민연금 납부 예외자 및 체납자로 한정함

- 따라서 정부보조금 지원대상자는 1)전문예술인, 2)저소득자, 3)국민연금의 사각지대라는 3가지 요건을 충족한 자여야 할 것임
- 여기서 첫 번째 요건인 전문예술인은 회원가입 단계에서 확인이 될 것이므로 문제가 되지 않지만, 두 번째와 세 번째 요건은 일정한 기준이 필요할 것임

□ 저소득자를 분류하는 기준으로는 국민연금 소득등급¹⁶⁾, 빈곤선, 차상위 등을 들 수 있으며, 각각의 내용은 아래 표와 같이 정리할 수 있음

16) 국민연금소득등급은 현재는 사용하지 않는 개념이지만 설명의 편의상 본 연구에서 임의로 사용하고 있음

제3장 예술인 복지모델 (복지)공제상품 설계

〈표 3-8〉 소득분류 기준(2009년 기준)

구분	기준선 (1인·1인가구 기준)	근거(활용 예)
국민연금 소득등급(18등급)	월 730천원	농어민 연금 보험료지원 대상 기준
국민연금 소득등급(22등급)	월 990천원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중위소득
국민연금 소득등급(25등급)	월 1,210천원	국민연금 전체가입자 중위소득
국민연금 소득등급(31등급)	월 1,751천원	연금수급전 3년간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A값) ¹
국민연금 소득등급(35등급)	월 2,190천원	전가구 월평균 근로소득(2,207천원) ²
빈곤선(최저생계비 100%)	월 491천원	-
차상위계층(최저생계비 120%)	월 589천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차상위계층(최저생계비 150%)	월 737천원	-
차상위계층(최저생계비 180%)	월 884천원	-
차상위계층(최저생계비 200%)	월 982천원	-

주: 1) 국민연금 기본연금액 산정 기준이 되는 금액으로 전체 가입자의 연금수급전 3년간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
2) 명목기준임

자료: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통계연보 2008』;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2008

□ 각 기준별 비교

① 국민연금 소득 18등급

- 농어민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대상기준선임

- 월 소득 73만원 미만인 농어민에게는 보험료의 50%를 지원하고, 그 이상인 경우는 32,580원을 정액으로 지원하고 있음¹⁷⁾

② 국민연금 소득 22등급

17) 구체적인 지원수준은 아래 표와 같음.

기준소득월액	지원액	지원율	기준소득월액	지원액	지원율	
22만원	9,900	50%	34만원	15,300	50%	
23만원	10,350		37만원	16,650		
24만원	10,800		40만원	18,000		
25만원	11,250		44만원	19,800		
26만원	11,700		48만원	21,600		
27만원	12,150		52만원	23,400		
29만원	13,050		73만원 이상	32,850		정액
31만원	13,950		-	-		-

제3장 예술인 복지모델 (복지)공제상품 설계

-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의 중위소득으로서 월 소득 990천원 수준임
- 정부보조금 지급대상을 납부예외로 인해 사각지대로 분류되는 예술인으로 한정하고 있는데, 납부예외자는 지역가입자로 분류되고 있기 때문에 지원대상 회원의 소득분류기준으로 강점을 가질 수 있음

③ 국민연금 소득 25등급

- 국민연금 전체가입자의 중위소득으로서 월 소득 1,210천원 수준임
- 납부예외자가 없고 징수율이 지역가입자보다 높은 사업장가입자가 포함되어 있어¹⁸⁾ 본 연구에서 고려하기에는 다소 높은 기준이라 할 수 있음

④ 국민연금 소득 31등급

- 연금수급전 3년간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A값)으로 월 소득 1,751천원 수준임
-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중위소득보다 높아 본 연구에서 소득기준으로 삼기에는 높은 수준이라 할 수 있음

⑤ 국민연금 소득 35등급

- 월 219만원 선으로 전가구 월평균 근로소득 2,207천원에 가까운 수준임

⑥ 빈곤선

- 최저생계비로서 2009년 1인 가구 기준으로 월 491천원 수준임
 - 빈곤선을 기준으로 삼을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기준에 해당되는데, 실제 동 제도의 수급자는 국민연금에 적용제외 되어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 제도의 사각지대로 분류하기에 어려운 측면이 있고,
 - 또한 부양의무자 기준, 현금급여 기준 등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자라 하더라도 그 수가 매우 적을 것으로 판단되어 본 연구에서의 기준으로 삼기에는 무리가 있음

⑦ 차상위 계층 I(최저생계비의 120%)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정하는 기준으로 2009년 1인 가구 기준으로 월 589천원

18) 2008년 말 금액 기준 사업장가입자의 징수율은 99.2%인 반면, 지역가입자의 징수율은 82.6%임(국민연금공단, 2009)

제3장 예술인 복지모델 (복지)공제상품 설계

수준임

- 국민연금 소득등급 기준으로 15등급에 해당되어, 농어민 연금보험료 지원기준보다 낮은 수준임

⑧ 차상위 계층 II(최저생계비의 150%)

- 최저생계비의 150%로써 2009년 1인 가구 기준으로 월 737천원 수준임
- 국민연금 소득등급 기준으로 18등급에 해당되어, 농어민 연금보험료 지원기준과 동일한 수준임

⑨ 차상위 계층 III(빈곤선의 180%)

- 최저생계비의 180%로써 2009년 1인 가구 기준으로 월 884천원 수준임
- 국민연금 소득등급 기준으로 20등급에 해당되어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의 중위소득보다 낮은 수준임

⑩ 차상위 계층 IV(빈곤선의 200%)

- 최저생계비의 200%로써 2009년 1인 가구 기준으로 월 982천원 수준임
- 국민연금 소득등급 기준으로 22등급에 해당되어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의 중위소득과 거의 비슷한 수준임

□ 정부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 기준소득으로 전가구 월평균 근로소득인 2,207천원에 가까운 국민연금 35등급을 제안

- 국민연금 전체가입자의 중위소득인 25등급을 선정기준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념에 부합한다고 하겠으나, 이 경우 지원대상 예술인이 지나치게 제한적일 수 있다는 측면을 고려하여 전가구 월평균 근로소득과 비슷한 수준을 기준으로 할 것을 제안

다. 적립성 상품에 대한 정부지원 구조

□ 공제부금에 대한 정부지원 방식은 세 가지로 고려할 수 있음

- (1안) 기준소득(35등급) 이하인 가입자에 대해서, 저소득일수록 보조율을 높게 하되 보조율의 증가율이 커지도록 하는 방식
- (2안) 기준소득(35등급) 이하인 가입자에 대해서, 저소득일수록 보조율을 높

제3장 예술인 복지모델 (복지)공제상품 설계

게 하되 보조율의 증가율을 일정하게 하는 방식

- (3안) 전체 소득등급자에 대해서 저소득일수록 보조율을 높게 하되 보조율의 증가율을 일정하게 하는 방식

□ 등급별 보조율을 아래 표와 같이 배분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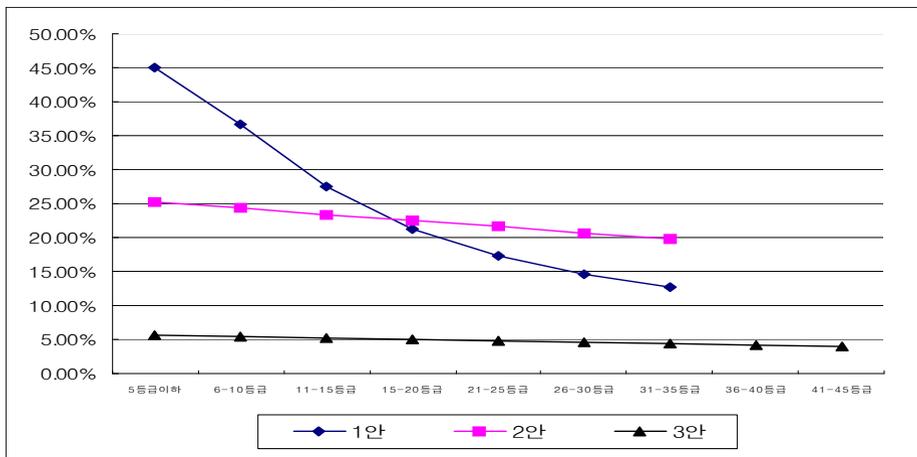
〈표 3-9〉 소득등급별 보조율 예시

구분	공제부금 보조율		
	1안	2안	3안
5등급 이하	45.0%	25.2%	5.6%
6-10등급	36.6%	24.3%	5.4%
11-15등급	27.5%	23.4%	5.2%
16-20등급	21.3%	22.5%	5.0%
21-25등급	17.3%	21.6%	4.8%
26-30등급	14.6%	20.7%	4.6%
31-35등급	12.8%	19.8%	4.4%
36-40등급	0.0%	0.0%	4.2%
41-45등급	0.0%	0.0%	4.0%

□ 위 3개 안은 아래 그림과 같이 도식화할 수 있음

- 그림에서 보듯이 1안은 가파른 기울기를 보이면서 아래로 불룩한 형태를 띄고 있고, 2안과 3안은 완만한 직선에 가까운 형태를 띄고 있음

[그림 3-1] 보조율 차등 방안별 예시의 도식화



제3장 예술인 복지모델 (복지)공제상품 설계

라. 소득수준별 개인별 연금수지 시뮬레이션

□ 정부보조금 지원대상자 규모

- 보조금 지원대상 회원수 추산에 사용된 변수는 예술인의 국민연금 가입률, 국민연금 사각지대 비율, 각 기준별 금액이 해당되는 국민연금 소득등급의 가입자 누적비율임
 - 여기서 예술인의 국민연금 가입률은 박영정·공혜영(2008)에 의거, 52.0%로 가정
 - 국민연금 사각지대 비율은 2008년 말 기준 국민연금의 지역가입자 중 납부예외자 비율(59.2%)과 지역가입자 중 보험료 4개월 이상 체납자 비율(22.1%)의 합인 79.3%를 가정
 - 국민연금 35등급 가입자 누적비율은 2008년 말 기준 72.2%임
- 상기 세 가지 변수를 종합한 지원대상자 비율은 29.8%임(= 52.0% × 79.3% × 72.2%)
 - 전체 가입대상자 2만명을 대상으로 상기 비율을 적용하면 5,960명이 됨

□ 그밖에 시뮬레이션을 위한 기본가정들은 다음과 같음

〈표 3-10〉 적립성 상품 시뮬레이션을 위한 제 가정

구분	내용	비고
수익률	연 4.0%	- 3년 만기 국고채금리(2009년 7월 말)
관리운영비	0%	- 별도의 수수료나 관리운영비는 없는 것으로 가정 - 따라서 실제로는 보유공제의 경우는 제반관리비용이, 판매공제의 경우는 수수료 등의 비용이 수반될 수 있어 아래에서 제시되는 수급월액과 수익비는 시뮬레이션 결과보다 낮아질 수 있음
수급기간	20년	- 2007년 현재 60세 인구 기대여명(남성 20.2년, 여성 25.0년)

자료: 한국은행 홈페이지(www.bok.or.kr); 통계청(2008), 『2007 생명표』

□ 시뮬레이션 결과: 1안

- 1안에 따른 개인별 연금수지의 시뮬레이션 결과는 아래의 표와 같음

제3장 예술인 복지모델 (복지)공제상품 설계

- 5등급 이하자의 경우 45.0%의 보조율을 적용함에 따라 20년 가입기간 동안 매년 140천원의 보조금을 받게 되며, 60세 이후부터 20년간 매월 84천원의 급여를 수급할 수 있게 됨
- 국민연금 전체가입자의 중위소득 등급인 25등급자의 경우는 17.3%의 보조율에 따라 20년간 매년 252천원의 보조금을 받게 되며, 60세 이후부터 20년간 매월 317천원의 급여를 수급할 수 있게 됨
- 보조금 지원 기준소득인 35등급자는 12.8%의 보조율에 따라 20년간 매년 337천원의 보조금을 받게 되며, 60세 이후부터 20년간 매월 551천원의 급여를 수급할 수 있게 됨
- 보조금 지원을 받지 않을 경우의 수익비는 1.55인데 비해 보조금을 지원받는 소득등급자의 경우 최저 1.75에서 최고 2.25의 수익비를 실현하게 됨

〈표 3-11〉 소득등급별 개인의 연금재정 수지(예) - 1안

구분	연금제부금(A) ¹	보조율	보조금(B)	연금제부금 소계(A+B)	연금재원총액	수급월액	수익비
5등급	312,000	45.0%	140,400	452,400	14,010,467	84,098	2.25
10등급	444,000	36.6%	162,443	606,443	18,781,056	112,734	2.11
15등급	684,000	27.5%	187,947	871,947	27,003,503	162,090	1.97
20등급	1,020,000	21.3%	217,455	1,237,455	38,322,994	230,035	1.88
25등급	1,452,000	17.3%	251,595	1,703,595	52,758,977	316,688	1.82
30등급	1,992,000	14.6%	291,095	2,283,095	70,705,630	424,413	1.77
35등급	2,628,000	12.8%	336,797	2,964,797	91,817,396	551,137	1.75
40등급	3,360,000	-	-	3,360,000	104,056,518	624,603	1.55
45등급	4,320,000	-	-	4,320,000	133,786,951	803,061	1.55

주: 1) 연공제부금(A)은 등급별 소득월액의 10%를 가정하여 산출

2) 수익비는 연금재원 총액을 정정보조금을 제외한 본인의 납부 공제부금 총액(A×20년)으로 나눈 값

□ 시뮬레이션 결과: 2안

- 2안에 따른 개인별 연금수지의 시뮬레이션 결과는 아래의 표와 같음

- 5등급 이하자의 경우 25.2%의 보조율을 적용함에 따라 20년 가입기간 동안 매년 79천원의 보조금을 받게 되며, 60세 이후부터 20년간 매월 73천원의 급여를 수급할 수 있게 됨

제3장 예술인 복지모델 (복지)공제상품 설계

- 국민연금 전체가입자의 중위소득 등급인 25등급자의 경우는 21.6%의 보조율에 따라 20년간 매년 314천원의 보조금을 받게 되며, 60세 이후부터 20년간 매월 328천원의 급여를 수급할 수 있게 됨
- 보조금 지원 기준소득인 35등급자는 19.8%의 보조율에 따라 20년간 매년 520천원의 보조금을 받게 되며, 60세 이후부터 20년간 매월 585천원의 급여를 수급할 수 있게 됨
- 보조금 지원을 받지 않을 경우의 수익비는 1.55인데 비해 보조금을 지원받는 소득등급자의 경우 최저 1.86에서 최고 1.94의 수익비를 실현하게 됨

〈표 3-12〉 소득등급별 개인의 연금재정 수지(예) - 2안

구분	연공제부금(A) ¹⁾	보조율	보조금(B)	연공제부금 소계(A+B)	연금재원총액	수급월액	수익비
5등급	312,000	25.2%	78,624	390,624	12,097,313	72,615	1.94
10등급	444,000	24.3%	107,892	551,892	17,091,655	102,593	1.92
15등급	684,000	23.4%	160,056	844,056	26,139,741	156,905	1.91
20등급	1,020,000	22.5%	229,500	1,249,500	38,696,018	232,274	1.90
25등급	1,452,000	21.6%	313,632	1,765,632	54,680,214	328,220	1.88
30등급	1,992,000	20.7%	412,344	2,404,344	74,460,614	446,953	1.87
35등급	2,628,000	19.8%	520,344	3,148,344	97,501,700	585,258	1.86
40등급	3,360,000	-	-	3,360,000	104,056,518	624,603	1.55
45등급	4,320,000	-	-	4,320,000	133,786,951	803,061	1.55

주: 1) 연공제부금(A)은 등급별 소득월액의 10%를 가정하여 산출

2) 수익비는 연금재원 총액을 정정보조금을 제외한 본인의 납부 공제부금 총액(A×20년)으로 나눈 값

□ 시뮬레이션 결과: 3안

- 3안에 따른 개인별 연금수지의 시뮬레이션 결과는 아래의 표와 같음

- 5등급 이하자의 경우 5.6%의 보조율을 적용함에 따라 20년 가입기간 동안 매년 17천원의 보조금을 받게 되며, 60세 이후부터 20년간 매월 61천원의 급여를 수급할 수 있게 됨
- 국민연금 전체가입자의 중위소득 등급인 25등급자의 경우는 4.8%의 보조율에 따라 20년간 매년 70천원의 보조금을 받게 되며, 60세 이후부터 20년간 매월 283천원의 급여를 수급할 수 있게 됨

제3장 예술인 복지모델 (복지)공제상품 설계

- 보조금 지원 기준소득인 35등급자는 4.4%의 보조율에 따라 20년간 매년 116천원의 보조금을 받게 되며, 60세 이후부터 20년간 매월 510천원의 급여를 지급할 수 있게 됨

〈표 3-13〉 소득등급별 개인의 연금재정 수지(예) - 3안

구분	연금제부금(A) ¹⁾	보조율	보조금(B)	연금제부금 소계(A+B)	연금재원총액	수급월액	수익비
5등급	312,000	5.6%	17,472	329,472	10,203,485	61,247	1.64
10등급	444,000	5.4%	23,976	467,976	14,492,843	86,994	1.63
15등급	684,000	5.2%	35,568	719,568	22,284,447	133,763	1.63
20등급	1,020,000	5.0%	51,000	1,071,000	33,168,015	199,092	1.63
25등급	1,452,000	4.8%	69,696	1,521,696	47,125,710	282,874	1.62
30등급	1,992,000	4.6%	91,632	2,083,632	64,528,420	387,334	1.62
35등급	2,628,000	4.4%	115,632	2,743,632	84,968,093	510,024	1.62
40등급	3,360,000	4.2%	141,120	3,501,120	108,426,892	650,836	1.61
45등급	4,320,000	4.0%	172,800	4,492,800	139,138,429	835,184	1.61

주: 1) 연공제부금(A)은 등급별 소득월액의 10%를 가정하여 산출

2) 수익비는 연금재원 총액을 정정보조금을 제외한 본인의 납부 공제부금 총액(A×20년)으로 나눈 값

- 최고소득등급인 45등급자는 4.0%의 보조율에 따라 20년간 매년 173천원의 보조금을 받게 되며, 60세 이후부터 20년간 매월 835천원의 급여를 지급할 수 있게 됨
- 수익비는 최저 1.61에서 최고 1.64로 소득등급간 실현되는 수익비의 차이는 그리 크지 않음

□ 상기 3가지 안 중 어떤 방식을 선택할 것인지는 가치판단의 문제임

- 먼저, 1안과 2안은 한정된 예산을 고려하여 지원범위를 축소하고 이들에 대한 보장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될 것이며, 이 중에서도 1안은 정부보조금의 소득 재분배 기제가 2안보다 강하게 적용되는 방안이라 할 수 있음
- 그러나 1안과 2안은 지원대상을 구분하는 기준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필요함. 즉 기준선을 조금이라도 초과하는 회원에게는 아무런 지원이 없게 되어 회원간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될 소지가 있음

제3장 예술인 복지모델 (복지)공제상품 설계

- 3안은 앞서 언급된 형평성 문제를 피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기는 하지만 전체 회원에게 한정된 재원을 고르게 배분한 결과 개개인에게 돌아가는 정부지원의 몫이 상당히 미미하게 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움
- 따라서 형평성의 문제, 정부지원 효과의 적절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택할 필요가 있음

3. 독립성 상품 운영에 있어서 고려할 사항

- 이상과 같이 설계된 독립성 상품을 실제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최소가입계좌, 해약 환급금 지급 등에 관한 내용을 약관으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독립성 공제상품에 대한 최소가입계좌
 - 독립성 공제상품에 대한 최소가입 계좌 설정은 보장성 공제상품의 보장수준, 예술인들의 소득실태, 해약으로 인한 개인 및 공제사업에의 영향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 즉 최소가입 계좌 수를 낮게 설정하고, 해약에 대한 요건을 관대하게 할 경우, 가입 예술인들의 도덕적 해이를 초래해 실제적인 공제사업의 주요목적인 노후 소득보장을 확보할 수 없다는 점임
 - 예를 들어 최소가입계좌를 10,000원으로 하고 연간 2만원을 납부하면 공제 사업에 계속 가입으로 인정할 경우, 최소가입계좌만 신청하고 보장성 공제 상품으로부터 보장만을 받고자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따라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최소가입계좌와 해약에 대한 기준을 연동하여 일정수준에서 결정할 필요가 있음
 - 소기업소상인공제의 경우 최소 가입계좌는 5만원으로 하되 만원단위로 증액하고 있으며, 12개월 이상 연체시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보고 있음
 - 과학기술인공제회의 경우 6개월 이상 사유없이 연체시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일본 예술인연금의 경우에도 월 1,220엔(2009년기준)을 최소로 하며, 6개월 이상 연체시 탈퇴하는 것으로 보고 있음
 - 국내 사례와 해외사례를 참조하고 예술인들의 노후를 보장한다는 점에서 최소 가입계좌는 2만원으로 하고 만원단위로 증액하는 것을 제시할 수 있음

제3장 예술인 복지모델 (복지)공제상품 설계

- 예술인 공제사업 해약의 경우 최소가입계좌 2만원을 기준으로 연간 24만원(최소계좌 12회 납부기준)을 12개월 이상 연체하는 경우 공제사업을 해약한 것으로 보도록 함¹⁹⁾
 - 2만원 및 24만원의 산출근거는 현행 국민연금 최저등급의 기준소득이 22만원으로 월 약 2만원의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음
 - 따라서 최저한 노후소득보장이라는 점에서 이를 기준으로 할 필요가 있음

□ 기준이율

- 매년도 말 공시되는 이율이 다음 연도의 기준이율이 됨. 즉 변동이율을 채택함

□ 해약환급금의 지급

- 해약환급금은 공제사업에 가입한 예술인이 여러 사정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공제부금을 납부할 수 없어 공제회를 탈퇴할 경우 지급되는 금액임
- 해약환급금의 지급은 본인이 납부한 적립성 상품에 대한 공제부금과 각종 기금을 통해 보조받은 금액을 합한 것에 공제사업에서 정한 이자율을 합산하여 지급
 - 해약환급금 = 본인 납부 공제부금+각종 기금을 통한 보조액+기준이자율
 - 각종 기금을 통한 보조액의 경우 공제사업이 실시되지 않았으면 가입자 본인이 수령할 수 있었던 금액이므로 이를 가입자 본인에게 되돌려 준다는 의미임

□ 적립성 상품의 운영주체

- 적립성 상품을 공제본부에서 직접 운영하는 방법과 외부 보험사에 위탁 운영하는 방법이 있음
- 직접 운영하는 방법, 즉 보유공제 방법을 택할 경우에는 시중 보험사에서 부가하는 수수료가 부가되지 않아 회원의 수익률을 제고할 수 있는 반면, 적립성 상품을 운영할 인력의 인건비와 제반 관리운영비가 부가될 수 있음
- 한편, 외부에 위탁 운영하는 방법, 즉 판매공제 방법을 택할 경우는 인건비와 관리 운영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반면, 일정 수수료를 부담하게 되어 있어 위에서 제시하는 수준보다 다소 낮은 수익률을 실현하게 될 것임

19) 연간 24만원의 경우 보건복지가족부 발표 1인 최저생계비(49만원)의 약 50%수준으로 연간 24만원을 납부하지 못할 정도의 소득을 가진 경우 우선적으로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을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이를 기준으로 삼음

제3장 예술인 복지모델 (복지)공제상품 설계

제4절 중장기 예술인 복지모델 추진전략 및 로드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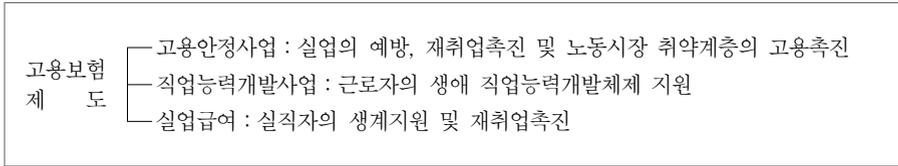
- 중장기적인 예술인 공제사업의 복지모델 개발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공적 사회보험 체계내에 예술인들의 가입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임
 - 즉 노후생활보장수단인 국민연금과 저소득 예술인들이 확대를 요구하고 있는 고용보험중 실업급여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임

1. 실업공제부금 개발

- 예술인들이 현실적으로 지원을 원하는 분야는 연금과 실업급여의 지원이라 할 수 있음
 - 연금의 경우 공제사업 초기부터 가장 기본적인 상품으로 개발이 되지만 실업공제의 경우에는 추가적인 검토와 재원마련이 필요함
 - 여기서는 실업공제 도입을 위한 기초적인 내용을 살펴보고 장단기 방안으로 실업공제 도입에 대해 논의하고자 함
- 고용보험제도 개요
 - 고용보험제도는 근로자들이 실업을 당했을 경우 실업보험을 통해 일정기간 생활유지가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제도임
 - 고용보험제도는 1995년 처음 도입되었으며, 이후 1998년 경제위기를 맞아 가입범위가 1인 사업장으로 확대되었으며, 2002년부터는 일용직 근로자에 게까지 확대됨
 - 고용보험의 기본구조는 고용안정사업, 직업능력개발사업과 실업급여로 구성 되어 있으며, 이중 실업급여가 가장 근간이 되는 사업이라 할 수 있음

제3장 예술인 복지모델 (복지)공제상품 설계

[그림 3-2] 고용보험제도의 기본구조



-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실직한 근로자로서 이직일 이전 18개월(기준기간)중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함
- 이를 기준으로 할 경우 예술인들은 지속적으로 6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어 실업급여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실업급여중 중요한 것이 구직급여로 구직급여는 수급자격자의 피보험기간과 이직 당시 연령에 따라 최소 90일에서 최대 240일까지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음

〈표 3-14〉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

연령	피보험기간	1년미만	1년이상 3년미만	3년이상 5년미만	5년이상 10년미만	10년이상
	30세미만		90일	90일	120일	150일
30세이상~50세미만		90일	120일	150일	180일	210일
50세이상 및 장애인		9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주: 1) 장애인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을 말함.

- 구직급여의 급여수준은 퇴직전 평균임금의 50% × 소정급여일 수로 1일 최고금액은 4만원이며, 최저액은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금액의 90% × 1일 근로시간(8시간)임
- 공제사업을 통해 실업급여를 지급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고려되어야 함
- 첫 번째, 가입자간의 형평성문제로 예술인 공제사업 가입자중 저소득, 불안정 취업자들의 경우 실업공제의 혜택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는 반면에 안정적 예술가들은 실업공제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됨에 따라 재원에 있어 가입자간 형평성 문제 유발
 - 두 번째, 예술가들의 특성상 일반근로자들에 비해 빈번하게 실업과 취업을 반복

제3장 예술인 복지모델 (복지)공제상품 설계

함에 따라 일반 공제사업에 비해 많은 재원이 소요됨

- 세 번째, 예술이라는 직업적 특성으로 프리랜서로 예술활동을 하고 있는 가입자들의 실업에 대한 근거마련이 필요함
- 따라서 여기서는 실업공제 도입시 필요한 재원과 장단기 도입가능한 방안이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함

□ 단기적 지원방안

- 첫 번째로 예술인 공제사업 가입자들이 납부한 공제부금을 기준으로 실업이 발생시 납부 부금의 50%내에서 실업대부사업을 수행하는 방안임
 - 이 경우 본인이 납부한 부금을 통해 지원받게 됨으로써 추가적인 재원소요가 발생하지 않지만 장기적으로 노후 소득을 보장해주는 연금이 지급받지 못할 수 있다는 단점을 지니고 있음
- 두 번째로 최소한의 가입기간 요건을 충족하여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본인의 공제부금을 활용해서 고용보험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임
 - 동 방안 역시 본인의 부담금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공제사업에 문제를 유발하지는 않지만 역시 공제부금을 사용함에 따라 향후 노후소득보장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으며,
 - 고용보험의 경우 고용주와 피고용주간의 관계에서 보험료를 지원 받게 되는 데 이번 방안의 경우 공제사업 본부가 고용주가 되는 것인지에 대한 법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노동부의 업무협조가 필요함

□ 장기적 지원방안

- 장기적으로는 공제사업 주요 상품에 실업급여 상품을 추가하여 예술인들의 지속적인 욕구에 부응하는 방안임
 - 여기서는 실업급여 상품을 운영할 경우 소요재원을 살펴보고 장기적으로 동 상품을 예술인 공제사업에 도입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 살펴봄
- 기본가정
 - 실업공제부금에 가입하는 자는 예술인 공제사업 가입자의 50%(약 1만명)으로 함(제조업 종사자가 전체 경제활동인구의 절반 정도이므로 이를 원용하고자 함)

제3장 예술인 복지모델 (복지)공제상품 설계

- 실업공제부금의 지급기간과 급여수준은 실업급여와 같이 약 4개월(120일)과 2개월을 지급, 급여 수준은 ①실업급여와 동일하게, ②50%만을 지급한다고 가정
- 실업률은 전체 실업률에 비해 예술인들의 비정기적인 근로형태를 감안하여 두배, 세배가 더 높은 것으로 가정하고 분석

□ 기초분석결과

- 가정1: 2007년 기준 구직급여액 28,913원(하루 평균)을 120일 지급시 가입자 개인당 3,470천원이 소요됨
- 정부가 보험료의 20%를 지원한다고 가정시 개인이 구직급여액을 수급하기 위해 납부해야할 보험료는 1년 기준으로 231천원(월), 2년 기준으로 116천원

〈표 3-15〉 실업공제부금 도입에 따른 소요재원(가정 1)

(단위: 명, 천원, 백만원)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공제사업 가입자	20,000	30,000	30,000	40,000	40,000	50,000	50,000	60,000	60,000	70,000
개인 구직급여액	3,470	3,470	3,470	3,470	3,470	3,470	3,470	3,470	3,470	3,470
개인 월보험료(1년)	231	231	231	231	231	231	231	231	231	231
개인 월보험료(2년)	116	116	116	116	116	116	116	116	116	116
정부지원 예산	6,939	10,409	10,409	13,878	13,878	17,348	17,348	20,817	20,817	24,287

- 실업공제부금을 위한 정부지원금은 예술인공제사업 가입자의 50%가 실업공제부금에 가입하고 공제부금의 50%를 지원시 2009년 약 69억원이 소요되며, 장기적으로 2018년에 약 243억원이 필요함
- 가정2(급여일 축소): 2007년 기준 구직급여액 28,913원(하루 평균) 지급하되, 급여기한을 120일에서 60일로 축소시 가입자 개인당 1,735천원이 소요됨
- 정부가 보험료의 20%를 지원한다고 가정시 개인이 구직급여액을 수급하기 위해 납부해야할 보험료는 1년 기준 116천원(월), 2년기준으로 58천원임

제3장 예술인 복지모델 (복지)공제상품 설계

〈표 3-16〉 실업공제부금 도입에 따른 소요재원(가정 2)

(단위: 명, 천원, 백만원)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공제사업 가입자	20,000	30,000	30,000	40,000	40,000	50,000	50,000	60,000	60,000	70,000
개인 구직급여액	1,735	1,735	1,735	1,735	1,735	1,735	1,735	1,735	1,735	1,735
개인 월보험료(1년)	116	116	116	116	116	116	116	116	116	116
개인 월보험료(2년)	58	58	58	58	58	58	58	58	58	58
정부지원 예산	3,470	5,204	5,204	6,939	6,939	8,674	8,674	10,409	10,409	12,143

- 실업공제부금을 위한 정부지원금은 예술인공제사업 가입자의 50%가 실업공제부금에 가입하고 공제부금의 50%를 지원시 2009년 약 34.7억원이 소요되며, 장기적으로 2018년에 약 121억원이 소요
 - 비슷한 방법으로 하루 평균 구직급여액을 50% 삭감(14,457원)하여 지급할 경우에도 동일한 보험료와 정부지원금이 필요
- 가정3(급여수준 및 기간 동시 축소): 2007년 기준 구직급여액의 50%(14,457원, 하루 평균)를 지급하고, 급여기한을 60일로 축소시 가입자 개인당 876천원이 소요됨
- 정부가 보험료의 20%를 지원한다고 가정시 개인이 구직급여액을 수급하기 위해 납부해야할 보험료는 1년 기준 58천원(월), 2년 기준으로 29천원임
 - 실업공제부금을 위한 정부지원금은 예술인공제사업 가입자의 50%가 실업공제부금에 가입하고 공제부금의 50%를 지원시 2009년 약 17.3억원이 소요되며, 장기적으로 2018년에 약 60억원이 소요

〈표 3-17〉 실업공제부금 도입에 따른 소요재원(가정 3)

(단위: 명, 천원, 백만원)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공제사업 가입자	20,000	30,000	30,000	40,000	40,000	50,000	50,000	60,000	60,000	70,000
개인 구직급여액	867	867	867	867	867	867	867	867	867	867
개인 월보험료(1년)	58	58	58	58	58	58	58	58	58	58
개인 월보험료(2년)	29	29	29	29	29	29	29	29	29	29
정부지원 예산	1,735	2,602	2,602	3,470	3,470	4,337	4,337	5,205	5,205	6,072

제3장 예술인 복지모델 (복지)공제상품 설계

2. 기타 공제사업 개발

□ 고용보험 보험료 지원방안

- 고용보험제도는 근로자들이 실업을 당했을 경우 실업급여를 통해 일정기간 생활유지가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제도임
 - 고용보험제도는 1995년 처음 도입되었으며, 이후 1998년 경제위기를 맞아 가입범위가 1인 사업장으로 확대되었으며, 2002년부터는 일용직 근로자에게까지 확대됨
- 고용보험의 기본구조는 고용안정사업, 직업능력개발사업과 실업급여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중 실업급여가 가장 근간이 되는 사업이라 할 수 있음
 -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실직한 근로자로서 이직일 이전 18개월(기준기간)중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함
 - 이를 기준으로 할 경우 예술인들은 지속적으로 6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어 실업급여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예를 들어 영화, 연극 및 무용 등의 종사자들의 경우 영화촬영, 공연 등의 행사특성상 6개월 이상의 근로활동이 불가능한 경우가 매우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최진욱, 2007)
 - 위와 같은 장르에 속한 예술인들의 경우 지금까지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질 수밖에 없었으며, 이는 장기적으로도 지속될 예정
- 예술인 공제사업 가입자중 실업급여의 기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예술인을 대상으로 노동부와 협의를 통해 최소가입기간까지 보험료를 대납해주는 제도를 도입
 - 납입보험료 수준은 기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퇴직전 보험료를 지원하며, 고용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고용보험가입자의 평균보험료 수준으로 보험료 납입
 - 고용보험 지원대상은 기존에 근로활동을 하고 있던 예술인들을 대상으로 하며, 프리랜서 예술인, 자영업주로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예술인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제3장 예술인 복지모델 (복지)공제상품 설계

□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방안

- 국민연금은 1988년 처음으로 도입되었으며, 이후 1995년 농어민 확대, 1999년 전국민으로 확대되었으며, 이제는 모든 사람이 국민연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음
- 국민연금은 청장년기에 노후생활을 위해 정부에서 관리하는 공단에 보험료를 납부하고 60세 이후 납부한 보험료에 더해서 연금을 지급받게 되는 제도임
 - 즉 최소 가입기간인 10년간 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 60세 이후에 노령연금을 지급받게 되며, 본인의 상해, 사망여부에 따라 장애 및 유족연금을 동시에 수령할 수 있음
 - 그러나 현 국민연금은 사업장 가입자 즉 근로자의 경우 보험료의 50%를 사업주가 함께 납부해주는 반면에 지역가입자들은 본인이 모든 보험료를 납부하게 됨에 따라 저소득층에게는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경우가 발생함
 - 예술인들의 경우에도 지속적 소득활동이 어렵고, 일반 근로자와 같은 사업장가입보다는 지역가입자가 많게 됨에 따라 보험료 납부에 대한 부담이 높을 수 있음
- 장기적으로 예술인 공제사업 가입자들이 최소한의 국민연금 가입기준(10년)을 가질 수 있도록 본인들이 납부한 보험료에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
 - 지원방안은 두 가지로 본인의 국민연금 보험료 전액을 대출의 형태로 인출하여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과 본인부담금의 50%만을 지원하는 방안임
 - 이를 통해 우선적으로 정부가 운영하는 사회보험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유도 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 예술인들의 노후생활 안정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임
- 국민연금 보험료를 공제사업의 공제부금을 통해 납부할 경우 연간 소요재원을 추계하여 보았음
 - 추계를 위한 가정은 공제사업 가입자중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속해 있는 예술인의 등급별 분포를 기준으로 분석(표 5-4참조)

제3장 예술인 복지모델 (복지)공제상품 설계

- 분석결과 연금사각지대에 놓여져 있는 약 6천여명을 대상으로 국민연금 보험료(월소득의 9%)를 전액지원하는 경우 연간 약 88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됨²⁰⁾
- 국민연금 보험료의 50%를 지원할 경우에는 연간 약 44억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됨
- 추정결과를 통해 살펴볼 때, 사각지대에 놓여져 있는 예술인 전부를 대상으로 보험료를 지원하는 것은 재원운용에 있어 한계를 지닐 수 있으므로 장기적인 재원 규모를 고려하고, 가입자 본인의 희망을 고려하여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

〈표 3-18〉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에 따른 소요재원

(단위: 명, 백만원)

구분		연간
공제사업 가입자		20,000
연금 사각지대 규모		5,954
연금보험료(9%)	전체 지원	8,750
	50% 지원	4,375

□ 예술인 공제사업 가입자중 저소득 예술인 배우자 및 자녀들을 위한 보장성보험 (micro insurance) 가입유도

- 현재 소액금융지원재단과 보건복지가족부 드림스타트사업에서 차상위계층 및 빈곤층 자녀와 부양자를 위해 소액의 보장성보험을 가입시키고 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음
- 장기적으로 주소득자 이외에 가구원의 질병으로 인한 의료비 증가로 인해 가구의 생계유지가 어려울 것을 대비하여 예술인 공제사업 가입 예술인 이외에 저소득 예술인 가족에 한해 공제사업중 하나인 보장성 보험 가입을 지원
- 지원대상과 금액은 초기 재원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익과 공제사업의 수익사업 (예술작품, 공연 시 발생할 수 있는 수익 등) 일부를 활용하여 지원하도록 함

20) 단, 이 경우 본인이 납부한 공제부금 적립금에서 일종의 무이자 약관대출을 받는 형태가 되므로 실제 재원이 소요되지는 않음

제3장 예술인 복지모델 (복지)공제상품 설계

- 긴급 생활안정자금, 의료비 및 학자금 등을 지원하기 위한 대출상품 개발
 - 저소득 예술인들의 경우 낮은 소득으로 인해 긴급하게 발생하는 의료비, 생활비 및 학자금 등에 대비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지 못할 수 있음
 - 우선적으로 공제사업본부에 납부한 공제부금을 기초로 대출상품을 제공할 수 있지만, 연대성 강화라는 측면에서 일정수준의 담보제공(주택 혹은 전월세 보증금 등)이 가능한 경우 긴급자금을 대출할 수 있는 상품을 개발하도록 함

3. 공제사업 서비스 확대

- 기존 공제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공제회들과의 MOU 체결을 통해 예술인공제사업 가입자들이 다른 공제복지프로그램의 참여가 가능하도록 지원
 - 이미 오랜기간 공제회를 운영하고 있는 공제회들의 경우 공제회원을 위한 공제상품은 물론 기타 부가적인 서비스 제도(휴양소 운영, 복지상품 판매 등)를 운영하고 있음
 - 공제사업을 공유한다는 점에서 예술인공제사업본부에서 기존 공제회와의 MOU체결과 최소한의 비용지원을 통해 예술인 공제사업 가입자들이 다양한 복지사업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 모색
- 예술인공제사업 가입 예술인들의 장기적 재무관리(Financial Management)를 위한 재무관리사 제도 운영
 - 일반 민간보험의 경우 가입자들의 현재 및 장기적인 재무상태에 대한 평가상담을 통해 가입자들의 재무포트폴리오를 새롭게 구성해 줌으로써 노후소득보장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있음
 - 예술인들의 경우 직업적 특성으로 본인 혹은 가족들에 대한 재산관리재무관리에 대해 매우 미흡하다 할 수 있음
 - 따라서 정기적으로 공제사업 가입자에 대한 재무상태를 평가관리해 주는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예술인들의 현재는 물론 노후소득보장이 스스로 가능할 수 있도록 지원
 - 가입자의 재무관리는 가입초기에 가입자가 희망할 경우 주기적(3년 혹은

제3장 예술인 복지모델 (복지)공제상품 설계

5년단위)으로 하는 세 가지 방안을 통해 예술인들의 재무상태를 평가해 주도록 함

- 예술인 공제사업 가입자 관리를 위한 콜센터 및 가입유도를 위한 상담사 운영
 - 예술인 공제사업의 경우 단기적으로는 1만~2만명, 장기적으로는 7~8만명의 예술인으로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음
 - 현재 제안되는 예술인 공제사업본부내의 인력으로는 이를 관리하고, 가입자 확대를 위해 노력하는 것은 한계를 지닐 수 있음
 - 따라서 장기적으로 가입자들의 불편을 상담하고 이를 지원하며, 예술인들의 공제사업 가입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하는 콜센터 및 상담사 제도를 운영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콜센터 및 상담사 등을 활용하여 정부 및 민간단체에서 운영되고 있는 각종 복지제도(복지부, 노동부 등의 복지사업, 신용불량자 지원을 위한 사업 등) 등을 홍보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예술인들의 복지사각지대 축소에 기여할 수 있음

제4장

예술인 복지모델 관리운영체계

제1절 : 공제상품 공제금 납부 및 지원방안

제2절 : 기존 공제회 조직

1. 중소기업중앙회(노란우산공제회)
2. 건설근로자 공제회
3. 과학기술인 공제회
4. 시사점

제3절 : 예술인 복지모델 관리운영체계 제시

1. 개요
2. 예술인 공제운영위원회
3. 예술인 공제사업본부
4. 예술인 공제사업 전달체계

제4장 예술인 복지모델 관리운영체계

제1절 공제상품 공제금 납부 및 지원방안

□ 여기서는 예술인공제사업 가입자들의 공제부금 납부방법 및 지원방안들에 대해 살펴보고자 함

- 여기서 고려되는 공제부금 납부는 적립성 공제상품에 대한 납부방안이며, 보장성 공제상품의 경우 공제사업 가입과 동시에 공제사업본부에서 자동적으로 처리함

- 즉, 보장성 상품은 외부위탁시 공제회에 가입하는 예술인의 정보를 외부위탁 기관에 통보함으로써 자동적으로 가입과 보험료가 징수되도록 처리

- 적립식 예술인 공제사업의 가입자는 크게 사업장(예술기관단체) 소속 예술인과 프리랜서 예술인으로 구분되어 살펴볼 수 있음

- 공제부금 납부방법도 크게 가입자와 같이 두가지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음

□ 사업장(예술기관단체) 소속 예술인은 공제사업본부와 예술인 단체와의 협약을 통해 급여에서 자동적으로 공제사업본부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안을 고려²¹⁾

- 예술인 공제사업은 임의가입이므로 사업장에서 자동적인 이체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금융결제원과 일반 시중은행에서 사용하고 있는 자금관리서비스(Cash Management Service, 이하 CMS)²²⁾를 통해 자동적으로 공제부금이 이체될 수 있도록 함

- CMS를 이용한 방식은 소득이 일정하게 발생하고 있는 사업장(예술기관단체) 소속 예술인과 프리랜서 예술인들의 경우 사용할 수 있을 것임

- CMS의 장점은 공제사업에 가입한 가입자가 통장을 통해 자동이체를 원할 경우, 통상적으로 가입자 본인이 은행에 가서 공제사업 운영 통장으로 계좌이체를 신청해야 함

21) 은행의 자동이체를 통한 공제부금의 납부는 다른 공제회는 물론 일반 기업들에서도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방안으로 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며, 공제사업에 가입하고자 하는 예술인들에게도 동 방법을 통해 공제부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홍보 및 유도

22) CMS는 은행 등 금융 기관과 금융결제원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로 컴퓨터와 통신을 이용하여 공동으로 제공하는 기업의 금융 자산 관리·결제 서비스를 의미함. 기업이 은행의 주 컴퓨터와 온라인으로 접속하여 잔액 조회, 입출금 조회, 계좌 이체 등 은행 업무와 주·식·외환 정보 등의 서비스를 받게 됨. 금융 자산 관리 서비스(CMS)의 특징은 기업과 은행의 컴퓨터가 공동 CMS 컴퓨터센터의 컴퓨터를 공유하여 접속할 수 있어서 복수 은행이 가지고 있는 기업의 계좌를 일괄 관리할 수 있으므로, 복수 은행과의 예금이나 용자금의 거래 명세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고, 급여 이체(수납 및 출납업무 등) 등 데이터 전송을 일괄 전송할 수 있다는 점임

제4장 예술인 복지모델 관리운영체계

- 그러나 공제사업본부가 CMS에 가입시 가입자가 이체희망 계좌를 알려줄 경우 가입자 신청이 아니라 공제사업본부에서 자체적으로 이체(금융결제원과 CMS계약을 체결한 모든 은행)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또한 장기적으로 공제부금 이체 현황 및 관리, 공제부금의 출납에 따른 관리 기능을 함께 수행할 수 있어 가입자의 공제부금 납부 및 출납에 있어 편리하고 공제사업본부의 업무효율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임
- 자영업프리랜서 예술인들의 경우 두 가지 방법을 통해 공제부금을 징수할 수 있을 것임
- 우선적으로 자동이체가 가능한 예술인들(소득이 일정하게 발생하는 예술인들)은 공제사업본부와 시중은행과 체결한 CMS를 통해 공제부금이 자동적으로 납부되도록 함
 - 다음으로 소득이 일정하게 발생하지 않아 자동이체가 어려운 가입자들의 경우 공제사업본부와 금융결제원과의 업무협조를 통해 (인터넷)지로 혹은 공제사업본부에서 발송한 지로용지를 가지고 은행자동화 창구를 통해 납부하도록 유도
 - 지로를 통해 공제부금을 납부하는 경우 공제사업본부에 가입자가 지로납부에 대한 의사를 통보하고 공제사업본부에서 지로납부서를 자택이나 주소지로 보내어 가입자가 납부하도록 함
- 예술인 공제사업에서 운영하고 있는 적립성 공제상품은 유니버설상품의 특징을 살린다는 의미에서 자유롭게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그러나 공제사업내 공제부금의 관리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공제사업 가입자와의 협의를 통해 일시납, 매월납, 분기납, 반기납 및 자유납의 형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함
 - 사업장(예술기관단체)소속 예술인들의 경우 가능한 매월, 분기납이 가능하도록 유도하며, 자영업프리랜서 예술인의 경우도 매월, 분기납을 할 수 있도록 홍보함
 - 반면에 소득이 낮고 지속적인 소득활동이 어려운 예술인들에 대해서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유납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함
- 추가적으로 예술인 공제사업 가입자들의 편의를 위해 가입자들이 예술작품을 전

제4장 예술인 복지모델 관리운영체계

시, 공연하는 경우 참여자들이 단체로 원할 경우 찾아가는 공제부금 납부방법을 강구함

- 즉, 가입자들이 작품을 전시, 공연하는 현장으로 공제사업 직원들이 직접 찾아가 공제부금을 수납함으로써 공제사업과 예술인들의 접촉을 높이고 공제사업의 주요 사업에 대한 홍보가 가능하도록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
- 수도권외의 경우 공제사업 본부 근무자가 직접 방문하여 공제부금을 수납할 수 있으나, 지방의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공제사업본부와 지원협약을 체결한 지방위원회 및 문화재단 등의 인력을 활용하여 공제부금을 수납하고 이를 공제사업 본부로 이체하는 방안 검토

제4장 예술인 복지모델 관리운영체계

제2절 기존 공제회 조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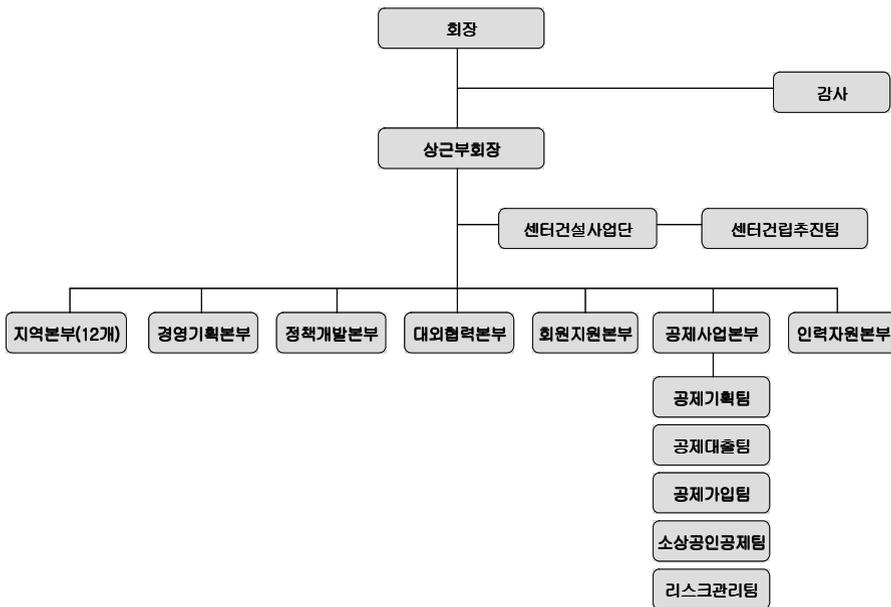
1. 중소기업중앙회(노란우산공제)

-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소기업·소상공인들이 폐업·갑작스러운 사망, 질병사고 등으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움을 겪을 것을 대비하기 위해 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퇴직금마련 공제사업(노란우산공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115조)을 운영중임
 - 노란우산공제에서 운영중인 공제상품으로는 노령·퇴직을 위한 노령·퇴임공제와 사망상해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돕기 위한 폐업상해공제를 운영중에 있음
 - 이외에 중앙회에서는 공제사업 가입자를 위해 상해사망·휴유장해 발생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단체보험에 가입하고 있으며, 보험료는 중앙회가 부담하고 있음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조직은 다른 공제회와 달리 별도의 공제조직을 두고 운영하기 보다는 기본 중소기업중앙회의 산하조직으로 공제사업본부를 두고 공제사업을 운영중에 있음
 - 구체적으로 중소기업중앙회 산하에 공제사업본부를 두고 있으며, 본부내에 공제사업을 담당하기 위해 5개 팀(공제기획팀, 공제대출팀, 공제가입팀, 소상공인공제팀, 리스크관리팀)을 두고 있음
- 공제사업본부내 각 팀의 주요 역할을 살펴보고, 예술인공제사업을 위한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함
 - 공제기획팀은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사업으로 들어오는 공제부금의 운용과 관리를 전담하고 있음
 - 즉 공제기금의 중장기 계획수립과 변경, 기금운영위원회 운영, 위탁관리, 체도에 대한 홍보, 대출에 대한 심사 및 신용평가를 담당함
 - 공제대출팀은 공제사업을 통한 대출 및 대출금의 회수 업무를 맡고 있음
 - 공제가입팀은 공제사업 가입자에 대한 관리, 가입촉진을 위한 홍보 계획 등을 수립함
 - 구체적으로 공제사업 가입홍보, 촉진 계획 수립 및 추진, 공제사업 가입자 관리(가입과 해지), 공제부금관리와 원금에 대한 원장관리를 담당

제4장 예술인 복지모델 관리운영체계

- 소상공인공제팀은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사업의 증장기 계획수립과 제도개선, 공제회 및 자산운용에 대한 계획 및 준비금 적립과 공제금 등 지급과 대출을 맡고 있음
- 리스크관리팀은 채권회수를 위한 종합대책수립과, 가압류 집행과 소송 등을 담당하고 있음

[그림 4-1]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조직



자료: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www.kbiz.or.kr)

제4장 예술인 복지모델 관리운영체계

〈표 4-1〉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사업본부 조직

본부	팀	업무	인력
공제사업 본부 (본부장 1명)	공제기획팀	○기금의 증장기 계획수립과 제도개선 ○기금운용관리계획(사업계획) 수립과 변경 ○기금운영위원회 운영 ○회계장부 및 전표관리와 정산, 결산 ○기금 예금관리 및 견질어음 추심 ○기금의 위탁관리 ○기금 제도홍보 ○제 대출에 대한 대출심사 및 신용평가	6명
	공제대출팀	○공제대출 및 회수 ○공제금대출 원장관리	7명
	공제가입팀	○공제기금(소기업소상공인공제 포함. “이하 같음”) 가입홍보와 가입촉진 계획 수립·추진 ○가입촉진요원(경영상담사) 관리 ○공제기금 가입과 해지(해약) ○공제계약자의 제 변경과 공제계약의 승계 ○공제부금관리와 원금납부 원장관리	6명
	소상공인 공제팀	○소기업소상공인공제사업 증장기 계획 수립과 제도개선 ○공제 운용관리계획·자산운용과 준비금 적립 ○공제운영위원회 운영 ○공제금 등 지급과 대출 ○회계장부 및 전표관리와 정산, 결산	6명
	리스크 관리팀	○채권회수관리 종합대책 수립 ○공제기금대출, 협동조합기능활성화자금대출 등 제반 불건전채권에 대한 회수, 결손처리와 특수채권 사후관리 ○가압류 집행과 소송	6명

자료: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www.kbiz.or.kr)

2. 건설근로자 공제회

□ 건설근로자 공제회는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건설일용근로자들의 사업장 변경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한 제도임

- 다른 근로자들과 달리 건설근로자들의 경우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근로활동을

제4장 예술인 복지모델 관리운영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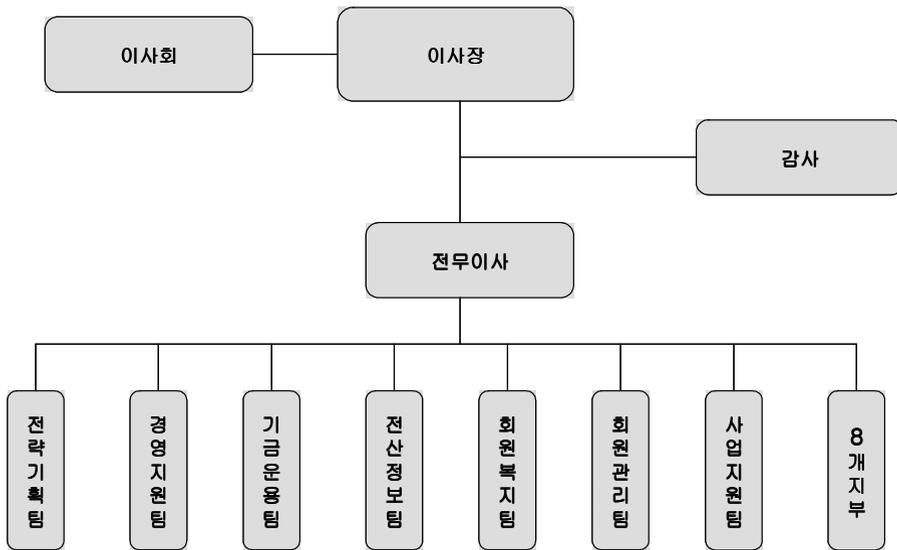
할 수 없기 때문에 따라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음

- 이에 1998년 1월부터 건설사업주가 건설일용근로자를 대상으로 공제사업에 가입한 후 공제부금을 납부하면, 근로자가 건설업을 떠날 때 납부한 공제부금에 이자를 산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는 복지제도라 할 수 있음
- 주요 공제사업으로는 공제회 설립목적에 맞추어 운영중인 퇴직공제상품과, 공제가입자를 위한 복지시설의 설치, 복지증진 사업 등이 있음

□ 건설근로자공제회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이사회가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운영위원회에서 주요 사항을 결정

- 운영위원회는 건설사업주 단체들로 구성되어, 공제회의 기본방향, 공제회 임원 인준 등 심의기구이지만 실질적 의사결정기구 역할

[그림 4-2] 건설근로자 공제회



자료: 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www.kcwmf.or.kr)

제4장 예술인 복지모델 관리운영체계

- 건설근로자공제회는 다른 공제회와 같이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대한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되었으며, 산하에 7개 팀과 8개 지부를 두고 있음
 - 7개 팀은 전략기획팀, 경영지원팀, 기금운용팀, 전산정보팀, 회원복지팀, 회원관리팀, 사업지원팀으로 구성되어 있음
 - 공제회 운영과 관련된 주요팀의 업무를 살펴보면,
 - 회원복지팀: 공제금(퇴직금) 지급
 - 회원관리팀: 공제부금 수납, 회원 인적정보 관리
 - 사업지원팀: 공제사업 사업주의 제도이행 총괄관리, 지부관리
 - 공제회 초기 준비단으로 10여명으로 시작, 2008년 4월 40명, 2008년 말 63명으로 증원했으며, 2009년 현재 88명으로 정원을 증원
 - 실제 인원은 63명으로 본회에 31명, 8개지부에 32명으로 운영중
- 건설근로자공제회 총가입자는 2009년 7월 기준 약 290만명이며, 이중 수급자는 94천명, 대상사업장은 18,940개소 임
 - 현재 가입자중 가입자격을 가진 사람은 약 30만명 수준임

3. 과학기술인공제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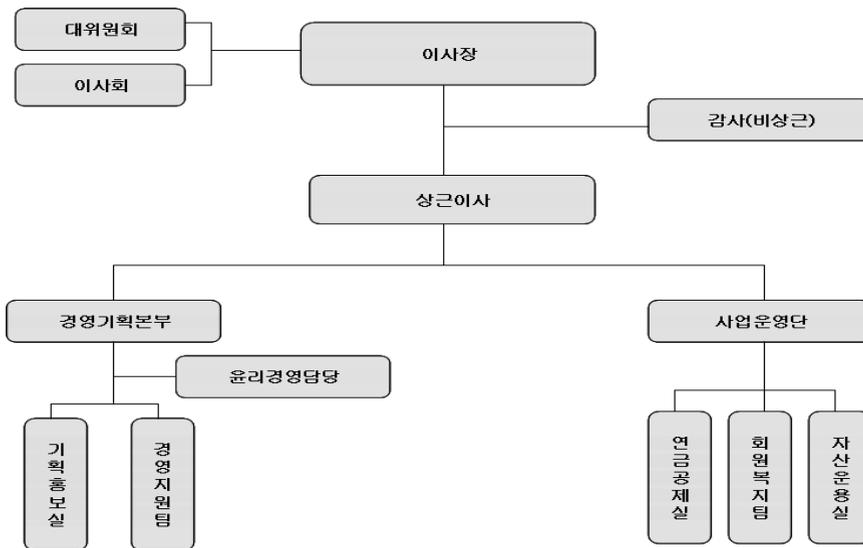
- 과학기술인공제회는 산업발전에 주요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과학기술인들의 복지증진과 생활안정을 돕기 위해 2002년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공제회임
 - 주요공제사업으로는 과학기술인연금, 적립형공제급여 및 생활안정대여사업을 주로 하고 있음
 - 기타 공제회가입자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기타 복지서비스로 휴양시설운영, 복지카드서비스, 의료기관 지정할인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음
- 과학기술인공제회는 대위원회와 이사회를 두고 있으며, 운영조직으로는 경영기획본부와 사업운영단을 두고 산하에 공제회 운영을 위한 조직을 두고 있음
 - 경영기획본부에는 윤리경영담당, 기획홍보실, 경영지원팀을 두고 있으며 과학

제4장 예술인 복지모델 관리운영체계

기술인공제회 운영을 위한 관리와 지원을 담당하고 있음

- 사업운영단에는 연금공제실, 회원복지팀, 자산운용실을 두고 연금공제사업, 회원관리, 공제기금의 관리 및 운용을 맡고 있음

[그림 4-3] 과학기술인공제회



자료: 과학기술인공제회, 홈페이지(www.sema.or.kr)

□ 경영기획본부

- 윤리경영담당은 과학기술인공제회의 조직과 직원들에 대한 공직기강과 일상 및 지도감사를 담당함
- 기획홍보실은 대외협력, 공제회 사업계획 및 예산, 대국회 및 정부 관련업무, 이사회 및 대의원회를 지원하고 있음
- 경영지원팀은 과학기술인공제회의 경영관련 사항을 총괄하는 조직으로 인사, 노무, 회계, 급여, 구매 및 계약 등을 담당하고 있음

제4장 예술인 복지모델 관리운영체계

〈표 4-2〉 과학기술인공제회 조직

본부	사업단	팀	업무	인력
과학기술인 공제회 (이사장 1명 상근이사 1명) / 대위원회 이사회 감사(비상근)	경영기획 본부 (총괄1명))	윤리경영담당 (별도팀)	일상 및 지도 감사, 공식기강	1명
		기획홍보실	기획홍보 총괄, 전략기획 대외협력, 사업계획, 예산 국회 및 대정부, 이사회, 대의원회 규정, 홍보	3명
		경영지원팀	경영지원총괄, 인사, 노무, 회계, 급여, 출납, 교육, 구매, 계약, 기관장 수행, 차량관리	5명
	사업운영단 (총괄 1명)	연금공제실	연금공제 총괄, 사업운영계획 수립, 회원확충, 신규공제사업 개발, 적립형공제마케팅 계획 수립 퇴직연금마케팅 계획 수립 사업홍보	3명
		회원복지실	회원복지 총괄, 복지후생사업 발굴기획 회원 및 회원사 관리, 대외사업 정보시스템 복지서비스 운영(겸직 : 기관장 비서)	3명 (1명은 경영 지원팀 과겸직)
		자산운용실	자산운용 총괄 운용전략 기획, 신규투자처 발굴 주식운용, 투자기획, 위원회 운영 대체투자, 자금 및 실적 관리	3명

□ 사업운영단

- 연금공제실에서는 과학기술인 공제사업을 총괄하고 사업운영계획 수립, 회원 확충, 신규공제사업 개발, 적립형 공제사업과 퇴직연금 사업의 마케팅과 과학 기술인 공제사업의 홍보를 맡고 있음
- 회원복지팀은 공제사업에 가입한 회원들을 위한 복지사업을 총괄하고 있으며, 이외에 신규 복지후생사업의 발굴, 회원관리, 기타 복지서비스 업무들을 운영

제4장 예술인 복지모델 관리운영체계

하고 있음

- 자산운용실에서는 공제기금의 자산운용 기획, 주식운용 등 신규투자처 발굴, 대체투자, 자금 및 실적관리와 위원회를 지원하고 있음

4. 시사점

- 세 개의 공제회의 조직을 통해 살펴볼 수 있는 사항은 우선 별도의 공제회를 운영하고 있는 건설근로자 및 과학기술인 공제회의 경우에는 크게 세 개의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할 수 있음
 - 우선 공제회 운영과 관련된 제반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이사회, 대의원회의가 있으며, 공제회 조직과 이사회 등을 지원하기 위한 경영기획 혹은 경영지원조직, 세부 공제사업을 관리하기 위한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음
 - 반면에 소기업·소상공인공제회와 같이 기존 조직을 활용하여 운영되는 경우에는 경영기획 혹은 경영지원조직은 이미 있는 조직을 이용함에 따라 이사회 성격의 운영위원회와 공제사업 관리운영조직의 이원화된 형태로 운영됨
- 예술인 공제사업의 경우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공제사업본부를 두고 공제사업이 운영됨에 따라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사업과 같이 경영지원 기능은 기존 조직을 활용하고, 순수하게 공제사업 운영에 대한 조직만으로 구성될 수 있을 것임
 - 여기에는 공제사업의 이사회 역할을 담당할 공제사업운영위원회와 공제사업관리를 담당할 공제사업본부의 이원화된 조직형태를 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제4장 예술인 복지모델 관리운영체계

제3절 예술인 복지모델 관리운영체계 제시

1. 개요

- 예술인 공제사업의 경우 예산 및 관리효율성을 높이고 공제사업에 가입한 예술인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는 목적 하에 기존의 다른 공제회들과 달리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산하에 별도의 조직을 신설
 - 비슷한 예로는 소기업·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조직된 노란우산공제사업이 중소기업중앙회의 세부 조직으로 운영되고 있음
 - 기존 공제회(예, 교원공제회, 군인공제회, 과학기술인공제회 등)와 같이 공제회를 운영할 경우 조직관리, 공제사업 인력 구성과 지원을 위해 많은 관리운영비가 별도로 추가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추가적인 관리운영비를 절감하고 이를 공제사업 가입자들에게 환원한다는 의미에서 문예진흥기금을 관리하고 있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공제조직을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보임
- 예술인 공제사업을 별도로 설립했을 경우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산하에 두었을 때의 비용을 간단한 추정을 통해 살펴보면 별도의 조직을 설립하기 보다는 기존 조직의 산하에 두는 것이 좋은 방향임을 살펴볼 수 있음
 - 먼저 인력측면에서 최근에 설립된 공제조직의 인력을 살펴보면 20~30여명의 조직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소상공인공제회, 과학기술인 공제회 등)
 - 인력과 관련하여 별도 조직과 자체조직의 차이점은 임원에서도 나타날 수 있음
 - 즉 별도 조직의 경우 공제회장을 비롯한 이사회, 감사 등의 관리조직의 구성이 필요한 반면에 기존 조직을 활용시 이에 대한 추가인력과 관리비용이 감소하게 됨
 - 조직운영비용에 있어 별도의 공제회를 설립하는 경우 조직이 들어설 건물을 새로이 건설 혹은 구입하거나 임대해서 사용하는 고정비용이 들어가는 반면에 기존 조직 활용시 기존 건물에서 공간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채원의 부담

제4장 예술인 복지모델 관리운영체계

을 경감할 수 있을 것임

- 지방조직에 있어서도 기존 조직의 본부로 공제사업을 운영시 현존하는 지방 조직과 지역 연고기관과의 업무연계가 쉽게 이루어질 수 있지만, 새롭게 조직 구성시 지방조직을 함께 만들어야 하는 부대비용이 증가할 수 있음

□ 위와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기존 조직에 공제사업본부를 둘 경우와 외부조직으로 별도로 산정할 경우의 비용을 간단히 추정해보고자 함

- 아래 표를 통해 활용가능한 자료를 이용하여 신규로 조직을 설립하는 것과 기존조직을 활용한 결과를 살펴보면 약 2배 이상의 차이를 보이고 있음
- 즉 신규조직의 경우 인력, 조직관리에서 약 40억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되는 반면에 기존 조직을 활용할 경우 새로운 전산비용을 제외하고는 기존 조직을 그대로 활용함에 따라 약 17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됨(최소한의 인력만 신규채용)
- 현재 여기서 고려되지 않은 부문은 지방조직에 대한 부문이 제외되어 있어 만약 지방조직을 별도로 신설하고자 할 경우 역시 많은 비용이 들어 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임

□ 위와 같은 비용을 고려할 경우 신규조직을 신설하기 보다는 기존 조직을 최대한 활용하여 추가적인 비용이 모두 문화예술인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옳바를 것으로 보임

제4장 예술인 복지모델 관리운영체계

〈표 4-3〉 예술인 공제사업 설립비용 추정

구분 인력	별도조직 설립		기존 조직활용	
	- 임원	이사장(1인), 이사(약간명) 및 감사(1인) (595만원(월, 노동부 임원 50대))	5억원	없음
- 조직원	신규 25명 ² (226만원(월, 노동부 전체층))	6.8억원	신규 13명 기존 12명	3.3억원
조직관리				
전산비용	회원관리, 회계, 조직 관리 프로그램 등	약 13.1억원 ³	회원관리 프로그램	약 10.1억원 ³
건물임대	544m ² =17m ² ×32명(이사포함) ⁴	약 9억원 ⁵	기존 건물활용 (신규직원 13명)	약 3.6억원 (221m ² =17m ² ×13명)
차량	9대×2천만원(구입비) ⁶ 9대×2천만원×10%×12개월(운영비)	2.2억원	기존 차량활용	-
기타관리	전체 금액의 10% (퇴직금, 사회보험료, 기타 관리비용)	3.6억원	없음	-
전체소요예산		39억 7천만원		17억원

- 주: 1) 위에서의 추정은 단순한 가정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실제 비용과 차이를 보일 수 있음
 2) 기존 조직(소상공인 및 과학기술인 공제회)의 인력을 참조하여 약 25명으로 가정
 3) 회원관리는 소상공인 공제(약 10억원) 전산비용을 고려, 기타 프로그램은 건설근로자 공제회 전산비용(약 3억원)을 고려(전산관리비용 10% 포함)
 4) 면적: 코아웬스 가구연구소 조사결과 준용. 최근 국내의 10인 이상 기업 130여 곳에 대한 조사 결과 공용면적 제한한 면적은 평균 6.9m²(출처: 한국일보 2009년 6월 9일자), 정부청사관리규정 시행규칙 상 장관:50평(165m²), 차관:30평(99m²), 국장:10평(33m²), 과장:5평(16.5m²), 직원:2.1평(6.9m²), 두 기준을 종합, 공용면적 포함 약 17m²
 5) 서울시내 대형빌딩(연면적 6,000m² 이상 또는 10층 이상) 532곳 평균임대료 조사결과 2009년 1분기 전셋값이 3.3m²당 543만원으로 조사(저스트알), 이를 1m²로 환산하면 1,640천원
 6) 중소형차 세전 가격 기준(현대자동차 활용)

□ 예술인 공제사업 관리운영은 문화예술위원회 산하에 크게 예술인공제운영위원회와 공제사업본부의 두 조직을 신설하게 됨

- 예술인공제운영위원회는 예술인 공제사업에 대한 주요사안들에 대해 심의의 결하는 기구로 기존 문화예술위원회와는 별도로 구성되며, 공제사업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성격을 지니게 됨
- 공제사업본부는 예술인 공제사업을 실제적으로 관리운영하는 조직으로 공제사업의 핵심적인 부서라 할 수 있음

제4장 예술인 복지모델 관리운영체계

2. 예술인 공제운영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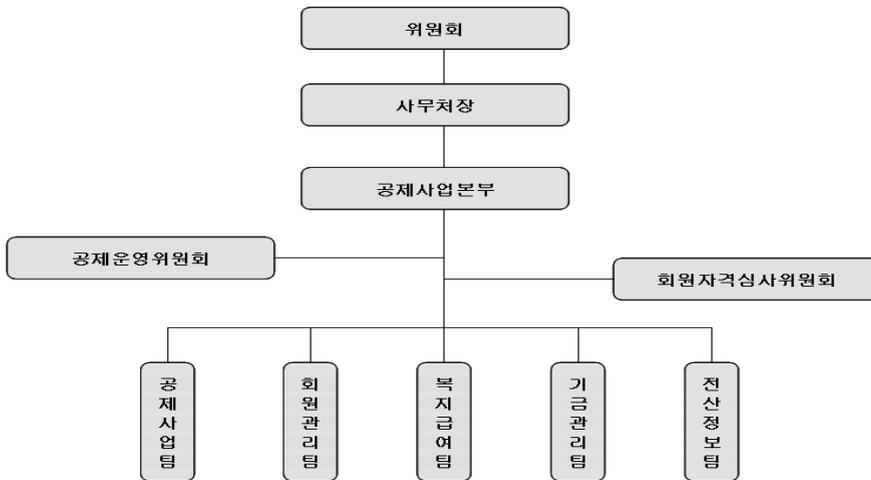
- 공제운영위원회는 예술인공제사업에 대한 이사회의 성격으로 공제사업 기획, 관리 및 기금관리 등에 대해 심의의결하는 기구이며, 그 주요업무는 아래와 같음
 - ① 예술인공제사업의 사업과 업무를 위한 기본 및 세부계획 수립과 변경 등에 관한 사항, ② 공제사업약관의 수립, 개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③ 예술인공제사업 공제부금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④ 예술인공제사업 사업 및 결산보고서에 관한 사항, ⑤ 가입자들의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의결, ⑥ 기타 공제사업 운영·집행을 위한 중요한 사항
- 공제운영위원회의 구성은 가입자를 대표할 수 있는 위원들과 정부 및 관련 전문가 들로 구성할 예정
 - 공제운영위원회 구성은 개정 문예진흥법 43조(안)에 의해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1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함
 - 예술인공제사업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 중 1인을 선정하며, 구성은 정부대표 2명(문화체육관광부 등), 공제사업 가입자 대표 5인, 공제사업 관련 전문가 혹은 관련 기관 대표 3명으로 함
 - 공제사업 가입자대표는 10개 장르를 기준으로 5개 장르가 돌아가며 가입자 대표를 선발
 - 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번에 한해 연임할 수 있음
 - 공제운영위원회 산하에 별도의 예술인공제기금운용 소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 예술인 공제부금, 정부출연금, 책임준비금 운용상황을 평가할 수 있는 3인 이내의 소위원회를 구성
 - 소위원회에서는 매년 공제기금과 책임준비금의 운용상황에 대해 평가하고 이를 공제운영위원회에 서면으로 보고
 - 매 5년에 한번씩 공제기금의 적립, 투자방법, 기금활용 등에 대해 성과평가를 실시

제4장 예술인 복지모델 관리운영체계

3. 예술인 공제사업본부

- 공제사업본부는 예술인 공제운영위원회를 지원하고, 공제사업에 가입할 문화예술인과 가입자, 공제상품을 관리하게 되며, 이외에도 공제부금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조직을 두게 됨
 - 가입자와 관련해서는 문화예술인이라는 증거가 모호하여 전문가적인 판단이 필요할 것에 대비하여 공제사업본부 내에 자격심사위원회를 설치하여 가입자에 대한 판단이 모호하거나 전문적인 견해가 요구되는 경우 이를 심사할 수 있도록 함.
- 공제사업본부는 예술인공제사업을 직접 관리·운영하는 조직으로 크게 회원자격심사위원회 및 산하에 5개 팀을 두도록 함
 - 회원자격심사위원회는 예술인 공제사업에 대한 가입자를 관장하는 역할을 수행함
 - 하위 5개 팀은 공제사업팀, 회원관리팀, 복지급여팀, 기금관리팀, 전산정보팀으로 구성되며, 장기적으로 공제사업 및 상담사를 관리할 콜센터를 두도록 함

[그림 4-4] 예술인 공제사업본부 조직(안)



제4장 예술인 복지모델 관리운영체계

□ 회원자격심사위원회

- 회원자격심사위원회는 예술인 공제사업 가입자중 기존 예술단체, 예술작품 및 예술소득과 같이 명확히 예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를 제외한 가입희망자를 대상으로 자격심사위원회를 두도록 함
- 자격심사위원회는 본위원회와 산하위원회로 구성되며, 각 위원회의 역할은 다음과 같음
- 본 위원회는 산하위원회에서 공제사업 가입희망자에 대한 산하위원회 결과를 토대로 가입 여부를 결정하며, 산하위원회 결정에 불복한 가입희망자에 대해 추가심사를 하도록 함
 - 본 위원회는 공제사업운영위원회 위원 중 1인이 위원장을 맡고, 공제사업본부장과 예술관련 전문가를 포함하여 4인으로 구성함
 - 의안에 대한 의결은 위원 과반수 참석에 과반 이상이 찬성한 경우 예술인 공제사업의 가입자로 인정
- 산하위원회는 공제사업의 가입 장르가 10개 분야로 구성됨에 따라 10개 소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각 소위원회는 장르별 전문가 3인으로 구성함
 - 소위원회에서는 예술인 공제사업 가입신청자가 작성한 신청서와 지난 3년간의 예술활동 실적, 작품, 추천서 등을 기준으로 예술성에 대한 인정과 이를 통해 공제사업가입 여부를 판정
- 예술인 공제사업 가입 신청자는 가입판정을 위한 소위원회의 논의 결과 가입이 보류된 경우 이에 대해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는 본위원회에서 판정하도록 함
 - 판정결과 불복에 따라 재심사를 요청한 자는 본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함

□ 공제사업팀

- 공제사업본부내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예술인 공제사업에서 운영중인 공제상품 총괄, 장단기적 공제사업운영계획 수립
- 공제사업 약관 설계, 변경 및 개정에 관한 공제운영위원회 지원

제4장 예술인 복지모델 관리운영체계

- 공제사업에 대한 기획홍보, 사업계획 및 예산, 공제운영위원회 지원
- 공제사업관련 국회 및 정부부처에 대한 대외협력지원, 장기적인 재정확보 방안 모색
 - 예술인공제사업 가입자들의 가입 및 급여 관련 편의증진을 위한 콜센터 운영 방안 마련 및 운영, 지역 문화위원회, 문화재단 등과의 대외협력 강화
- 추가적인 예술인 복지후생관련 상품개발, 공제상품 사업홍보 방안 마련
 - 단기적으로는 금융기관, 카드사 등과의 연계를 통한 복지사업 확대 방안의 모색
 - 장기적으로 예술인들의 욕구가 높은 실업공제상품 개발에 대한 고려

□ 회원관리팀

- 회원자격심사위원회를 지원하며, 예술인 공제사업의 회원 가입, 탈퇴 및 가입자 관리, 회원확충 방안 등을 수립
- 공제상품에 대한 공제금 납부연체 등 관리
 - 유니버설공제상품의 특성과 예술인의 직업적 특성을 고려한 공제금 납부 및 회원관리 필요
 - 예를 들어 우선적으로 본인이 희망하지 않은 경우 강제적으로 회원탈퇴를 하지 않도록 함. 또한 일정기간 예술분야에 종사하지 않더라도 본인이 희망하면 지속적으로 회원자격 유지
 - 그러나 장기간 공제부금을 납부하지 않고 공제사업본부와의 연계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일정기간 기회를 부여한 이후 자동탈퇴 유도
- 회원자격심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접수 및 판정 등 공제사업 관련 주요 가입자들의 이의 신청 및 문제제안들에 대해 접수하고 이를 관련 공제사업팀에 연계 및 결과통보 기능 수행
- 재무관리를 두고 예술인 가입자들에 대한 재무관리(Financial Management) 및 상담

□ 복지급여팀

- 예술인 공제사업 가입 회원들을 위한 복지사업 및 급여지급업무 총괄

제4장 예술인 복지모델 관리운영체계

- 회원관리팀으로부터 매년 변동되는 회원명부를 기준으로 보장성 보험에 대한 가입을 지원
- 연금상품에 대한 관리 및 급여지급을 담당
- 공제사업 기금에 대한 준비금 적립, 회원에 대한 적립 및 보장성 상품 공제금 등 지급과 대출, 회계장부 및 전표관리와 정산, 결산을 맡도록 함
- 복지급여 대출, 다른 공제회와의 연계에 따른 회원복지 및 추가 회원복지사업 시행시 관련 사업 담당

□ 기금관리팀

- 공제사업본부 기금관리운영지침에 따라 공제부금 및 정부출연금을 관리·운영함
 - 기금관리를 위해서는 금융 및 재무전문가를 특채로 선발하여 공제사업의 재원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
- 자산운용 총괄, 자산운용전략 기획 및 신규투자처 발굴, 주식운용, 투자기획, 대체투자, 자금 및 실적 관리
- 공제부금 자산운용 평가결과에 대한 공제사업운영위원회 보고

□ 전산정보팀

- 예술인 공제사업관련 전산 및 정보관리체계 운영
 - 공제 가입-징수-급여를 담당할 수 있는 전체적인 전산시스템 확충과 정보관리망 확충
 - 유기적인 공제부금 납부로 인해 장기적인 연금급여 지급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전산시스템 확충이 필요
- 예술인 공제급여 지급시스템 확충 및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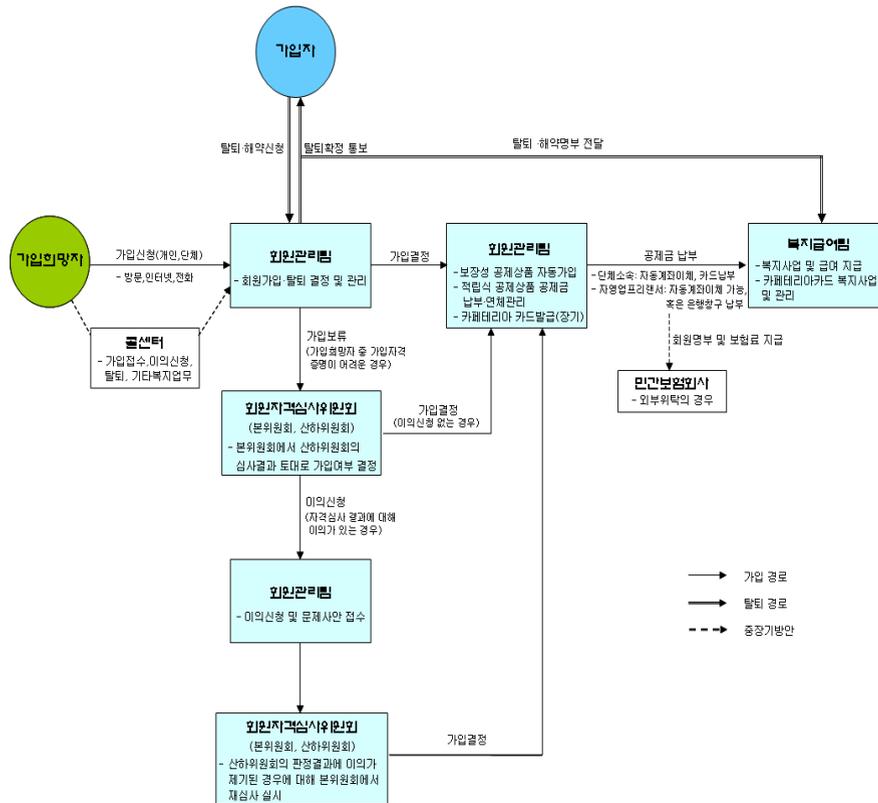
□ 공제사업본부 조직간 연계

- 공제사업본부 조직 중 기금관리팀과 전산정보팀의 경우 기존 문화예술위원회 조직내에 있는 기금관리 및 전산정보와의 업무 연계 혹은 관련 조직의 통합적 운영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임

제4장 예술인 복지모델 관리운영체계

□ 이상의 공제사업 조직들의 기능에 따른 업무흐름도는 아래의 그림과 같이 그려질 수 있음

[그림 4-5] 예술인 공제사업 업무흐름도



4. 예술인 공제사업 전달체계

□ 예술인 공제사업이 문화예술위원회에서 시행되면, 서울 및 수도권 지역의 문화예술인들은 서울의 문화예술위원회를 활용할 수가 있음

- 그러나 지방에서 거주하고 있는 예술인들이 서울에 소재한 공제사업본부까지 와서 가입신청, 공제부금 납부 및 급여 수령을 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임

제4장 예술인 복지모델 관리운영체계

- 공제사업 수행에 있어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서울뿐 아니라 각 지역별로 공제사업 수행을 위한 지부를 설치하여 사업의 효율과 가입자 편의를 높이는 방안임²³⁾
 - 16개 시도를 중심으로 혹은 일부 시도를 묶는 방법으로 지역사무소를 설치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그러나 지역사무소의 설치에 임대료, 인건비, 관리운영비 등의 막대한 비용이 소요될 수 있어 단기적으로 고려하기는 어려움
- 지역문화예술위원회와 지역 문화재단과의 업무 협조를 통한 지역사무소의 역할을 수행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음
 - 즉, 지역 문화예술위원회와 지역 문화재단과의 공제사업 업무협조를 위한 협약 체결을 통해 지역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것임. 이는 문화예술위원회가 지역사무소를 설치하는 효과와 비슷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 그러나 지역재단 활용시 공제사업 업무를 담당할 직원에 대한 선발, 관리 및 인건비 지급 등의 문제를 상호간에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합의가 필요함
- 따라서 공제사업 초기에는 전산, 홈페이지 및 콜센터 등을 활용하여 공제사업의 전달체계를 구성하고, 장기적으로 가입자가 확대되고 공제사업 업무가 복잡다기해질 경우 지역사무소 설치를 검토할 필요 있음
 - 다시 말해, 우선적으로 예술인 공제사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전달체계는 자동화된 전산망과 콜센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이라 할 수 있음
 - 그리고 장기적으로 지역사무소를 설치할 경우에는 단순히 공제사업 업무만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예술위원회의 지역에 대한 주요 업무도 함께 담당할 수 있도록 조직을 구성할 필요가 있음
- 예술인 공제사업 수행시 무엇보다 초기에 중요하게 갖추어야 할 분야는 전산시스템임
 - 회원의 가입, 관리, 공제상품 관리 및 급여로 연결되는 복잡하고 많은 업무는

23) 건설근로자공제회의 경우 공제회 초기 건설공제조합의 지방조직에 업무를 위탁하여 지방업무를 보다가, 2006년 전산화(ED)가 되면서 별도로 지부를 설치함.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의 경우 기존 중소기업중앙회의 지방조직을 활용하여 지방 조합원들의 욕구를 반영하고 있음

제4장 예술인 복지모델 관리운영체계

공제사업의 직원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음

- 또한 지역에서 발생하는 민원업무를 지역사무소가 없는 상태에서 처리하려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전산시스템의 완비라 할 수 있음
 - 지역의 문화예술인들이 편안하게 공제사업에 가입-공제부금 납부-급여 수령을 위해서는 전산화된 인터넷을 우선적으로 활용하고, 부족한 부분은 직접(가칭)콜센터를 활용할 필요가 있음
 - 장기적으로 가입자가 증가하고, 초기 공제상품에 대한 안정적 지원과 향후 다양한 상품 개발을 위해서는 전산시스템의 안정적 지원은 매우 필수적임
 - 일본 예술인연금의 경우 상품 및 가입자 관리운영을 위해 2000년 초반에 약 2억엔(약 20억원)을 들여 전산시스템을 구축
 - 소기업·소상공인공제의 경우 공제사업 초기에 전산시스템 개발을 위해 약 10억원의 재원이 소요되었음
 - 건설근로자공제회는 공제회 초반 전산시스템 없이 운영하다가 2006년에 전산시스템을 구축함
 - ※ 개발비용은 약 3억원으로 여타 공제회에 비해 상당히 적은 비용이 쓰여졌음. 이는 정부나 협회 등으로부터의 지원이 없어 전산실 내부직원이 직접 전산시스템을 개발하였기 때문임
 - 위와 같은 사례를 살펴본 결과 공제사업 초기 전산시스템 개발을 위한 최소한의 자금지원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도출될 수 있음
- 또한 지방에 거주하는 예술인들의 공제사업에 대한 접근성 제고 및 현재 실현가능성 등을 감안할 때 콜센터를 활용하는 것이 적절함
- 예술인 공제사업의 경우 단기적으로는 1~2만명 장기적으로 5~8만명의 회원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음
 - 장기적으로 회원관리팀을 통해 많은 수의 회원을 관리하고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은 한계를 지닐 수 있음
 - 공제사업에의 가입, 공제부금 납부, 공제급여 수령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회원들의 문제들을 접수하고 이를 관련 팀에 연결시킬 수 있도록 콜센터가 필요함

제4장 예술인 복지모델 관리운영체계

- 공제사업이 전국성을 지닌다는 점에서 지방에서 가입을 희망하거나 가입 후 공제급여 사유가 발생한 예술인들을 지원하기 위해서도 콜센터의 운영을 중요하다 할 수 있음
 - 만약 콜센터가 지원되지 않을 경우 현재 문화예술위원회의 본부가 서울에 있기 때문에 지방예술인들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지부를 설치하거나 지역 문화예술진흥위원회 및 지역문화(예술)재단을 활용할 필요가 있음²⁴⁾
 - 이 경우 별도의 지부를 두거나 지방위원회를 활용하더라도 추가적인 인력채용이 필요하며 따라서 많은 재원이 추가적으로 지원되어야 함
- 따라서 자체적으로 혹은 외부위탁의 콜센터를 운영함으로써 수도권 및 지방의 공제사업회원들의 욕구에 대비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콜센터내에 예술인들의 공제사업 가입을 유도할 수 있는 상담사를 두도록 함
 - 공제사업의 보험상품을 통해 위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사람들의 가입을 유도할 필요가 있음
- 공제상품 중 보장성 상품에 대한 급여제공은 문제가 발생할 경우 보장성 상품의 위탁업체에 직접 연락해 공제사업본부가 아닌 위탁업체에서 모든 업무를 처리하도록 유도
- 카페테리아 카드제도를 통한 예술인공제사업 전달체계 성립에 대한 고려
- 본 연구의 선행연구(조성한 외, 2008)에서는 전달체계 구성시 카페테리아 카드제도(=카페테리아 플랜)를 활용하여 공제사업 가입자의 공제부금의 징수와 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을 제안함
 - 카드제도의 활용은 카드사가 제공하는 추가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으며, 관리행정상 발생하는 업무 대부분은 카드사와의 협조를 통하여 거의 추가적인 비용지급 없이 시행가능하다는 점, 또한 카드사의 가맹점을 모두 사용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장점으로 들 수 있음

24) 지역에 따라 문예진흥기금을 시도에서 관리하는 경우, 이들 시도 조직을 예술인공제사업의 지역본부로 활용하는 것은 어려울 것임. 따라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지역위원회 및 지역재단간의 업무연계를 통해 지역적 업무를 수행할 필요가 있음

제4장 예술인 복지모델 관리운영체계

- 카페테리아 플랜이란 기업복지의 일환인 선택적 복지제도로써 근로자들이 기존에 받던 급여와는 달리 각자에게 주어진 금액의 한도내에서 학자금·채력단련비·의료비·자녀교육비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새로운 근로자복지형태라 할 수 있음
 - 포스코의 경우 직원복지후생을 위해 2003년부터 선택형 복지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포스코 복지카드’를 이용한 포인트 적립을 통해 직원복지를 지원하고 있음²⁵⁾
 - LG유통은 일률적 복지지원에서 벗어나 직원들이 자율적으로 복지항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카페테리아 복지제도를 1999년 도입하였으며, 건강증진, 학자금, 자기개발 등의 항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오리온은 2000년부터 기존의 일률적 복지지원에서 벗어나 구성원들의 자율성과 관리효율화를 위해 근속연수, 가족구성 및 성과에 따라 포인트를 주는 카페테리아 복지제도를 이용한 복지지원 사업을 시행함
- 선행연구에서 제안한 것과 같이 동 제도의 장점은 여러 은행과 공제사업본부가 협약을 체결할 경우 은행조직을 통해 카페테리아 카드의 형태로 공제부금과 급여를 받거나 제공이 가능하다는 것임
 - 그러나 동 제도의 단점은 유니버설 공제상품의 특성을 충분히 활용할 수 없다는 점임
 - 은행에서 운영중인 카드 제도를 활용시 공제부금의 납부는 자동이체를 활용하는 것과 같이 소득이 일정하고 지속적으로 보험료 납부가 가능한 가입자들만이 가능함
 - 급여제공에 있어서는 현금지급과 달리 카드사에서 제공하는 포인트를 통해 급여를 받고 사용함에 따라 포인트 사용과 인터넷에 익숙하지 않은 노령세대의 경우 급여를 목적에 맞게 충분히 활용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음
- 장기적으로 카페테리아 플랜 혹은 카드를 공제사업의 전달체계의 한 축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공제사업 가입자들의 정확한 숙지와 공제사업본부의 충분한 안내가 필요할 것임

25) 포스코의 경우 복지카드를 통해 이용할 수 있는 분야는 네 가지로 자기개발(학원수강(본인 및 자녀등), 도서구입 등), 건강관리(건강검진, 의료비, 개인보험 등), 문화레저(휴양시설, 여행 등), 생활보조(기념품 구입, 자동차 유지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은행과의 연계를 통해 직원들이 쉽게 사용내역과 복지지원금을 확인할 수 있도록 연계지원

제4장 예술인 복지모델 관리운영체계

- 이를 위해 공제사업 초기에 가입자들의 의견수렴과 관련 업체들에 대한 정보 및 업무협조를 통해 별도의 예술인 공제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 회원들이 각종 카드를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 과학기술인공제회의 경우 시중 카드사와 연계된 과학기술인복지카드를 회원들에게 발급하여 가입회원들이 다양한 복지혜택(주유할인, 2~3개월 무이자할부, 영화, 놀이동산 할인서비스 등)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
- 예술인복지카드는 회원들에 대한 복지서비스의 일환으로 공제부금의 납부 및 급여지출에 대한 서비스는 추가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제5장

예술인 복지모델 재정운용 방안

제1절 : 예술인복지모델 정착을 위한 정부 역할과 지원방안

1. 다른 공제회 출자금 및 부담금현황
2. 재정보호 방안

제2절 : 예술인 복지모델 중장기 현금흐름 및 자산 운용방안

1. 예술인 복지모델 중장기 현금흐름분석
2. 예술인 복지모델 자산운용의 원칙과 성과평가 방안

제5장 예술인 복지모델 재정운용 방안

제1절 예술인 복지모델 정착을 위한 정부 역할과 지원방안

1. 다른 공제회 출자금 및 부담금 현황

- 과학기술인공제회는 산업발전에 주요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과학기술인들의 복지 증진과 생활안정을 돕기 위해 2002년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공제회임
- 주요공제사업으로는 과학기술인연금, 적립형공제급여 및 생활안정대여사업을 주로 하고 있음
 - 과학기술인공제회의 경우 공제회 운영의 안정성을 위해 2004년과 2005년에 각각 200억(출연금), 총 400억을 자본금으로 공제사업 시작
 - 또한 장기적으로 과학기술 인력관리 특별지원사업을 위해 정부에서 총 2,000억원 규모의 자금을 조성할 계획으로, 2008년 정부예산에 600억원을 반영하여 총 1,000억원(공제회 기 지원 400억원 포함)의 자금을 지원
 - 과학기술인공제회의 경우 공제회 초기인 2005년 참여기관은 42개, 회원은 3,475명, 부담금은 91억원에 불과하였지만 지속적으로 회원 및 부담금이 증가하여,
 - 2008년에는 117개 기관에 회원은 10,563명, 부담금은 905억원에 이를 정도로 성장하였음
 - 2009년에는 정부 지원금을 포함하여 회원들에 대한 지원수준이 확대됨에 따라 공제회 가입회원과 부담금 수준을 크게 상향조정된 상태임

〈표 5-1〉 과학기술인공제회 회원 및 부담금 추이

(단위: 명, 백만원)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목표)
기관현황(개)		42	64	95	117	164
회원 현황	과학기술인연금	113	5	6	742	9,000
	적립형 공제	3,362	6,312	8,129	9,821	13,000
	합 계	3,475	6,317	8,134	10,563	22,000
부담금 현황	과학기술인연금	870	33	49	19,106	208,000
	적립형 공제	8,237	22,355	44,044	71,474	103,230
	합 계	9,107	22,388	44,093	90,580	311,2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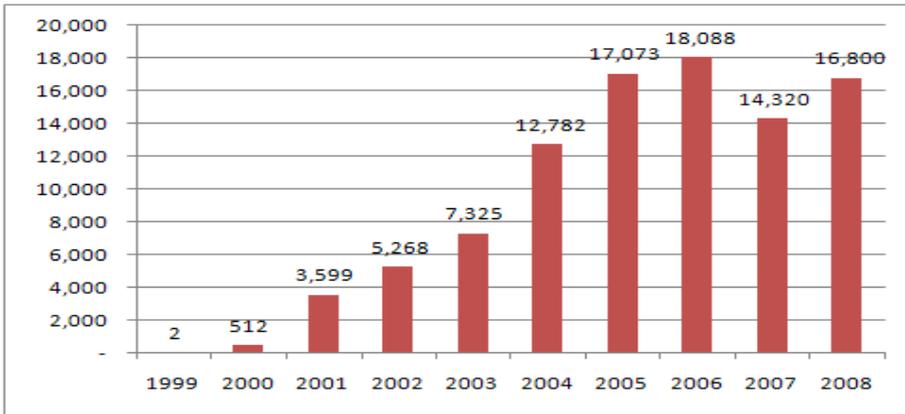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인공제회, 홈페이지(www.sema.or.kr)

제5장 예술인 복지모델 재정운용 방안

- 건설근로자공제회는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건설일용근로자들의 사업장 변경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한 제도로 초기 대한전문건설협회 등 건설관련 단체에서 초기 출자액으로 50억원을 출연

[그림 5-1] 건설근로자공제회 퇴직공제금 현황추이

(단위: 백만원)

자료: 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www.kcwmf.or.kr)

- 현재는 개인이 납부하는 공제부금 4,100원 중 4,000원이 적립되어, 적립된 기금과 이자로 퇴직금을 조달하고, 100원은 별도로 운영비에 사용
- 2008년말 기준 퇴직공제금으로 약 958억원이 적립되어 있음
- 소기업소상공인공제사업의 경우 초기 사업시작시 정부지원 없이 중소기업중앙회로부터의 지원금을 통해 공제사업을 시작
 - 사업초기 전산시스템 개발과 출연금 성격으로 각각 10억과 20억원을 출연받음
 - 이후 매년 공제사업 관리운영을 위해 56억원을 정부로부터 지원받고 있음
 - 소기업소상공인공제의 경우 2007년 사업초기 약 4,000여명이 가입하고 공제부금은 약 30억원에 불과하였지만,
 -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9년 6월말기준으로 회원은 23천명(사업초반 대비 4.8배), 부금액은 약 690억원(사업초반대비 약 22.2배)까지 증가하였음

제5장 예술인 복지모델 재정운용 방안

〈표 5-2〉 소기업·소상공인공제 회원 및 부담금 추이

(단위: 명, 백만원)

구분		회원	부금액
2007년		4,014	2,994
2008년	1분기	2,107	4,354
	2분기	2,774	6,518
	3분기	3,331	10,696
	4분기	2,197	14,280
	소 계	10,409	35,848
2009년	1분기	2,793	12,927
	4월	1,255	4,956
	5월	2,154	5,053
	6월	2,573	7,604
합 계		23,198	69,381

자료: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http://www.8899.or.kr/servlets/index>)

- 위의 사례들을 통해 살펴볼 경우 예술인 공제사업 역시 초반에는 가입자 규모를 약 2만명 수준으로 설정하고 있지만,
 - 장기적으로 공제사업이 예술인들 사이에 널리 알려지고, 민간 보험상품에 비해 유리하다는 점이 홍보된다면 회원수가 점진적으로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2. 재정확보 방안

- 예술인 공제사업의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사업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원의 확보가 매우 중요함
 - 공제사업 자금의 조성은 네 가지 방법에 의해 이루어지게 되는데, ①가입자가 납부하는 공제부금, ②정부 또는 지자체의 지원금, ③기타 민간에서의 지원금, ④공제기금의 운용수익으로 구성됨
- 공제사업 운영을 위한 첫 번째 주요 재원은 회원들이 납부하는 공제부금이라 할 수 있음

제5장 예술인 복지모델 재정운용 방안

- 예술인 공제사업에 가입하게 되는 공제회원들은 적립성 상품에 가입하게 되며, 본인의 희망에 따라 가입계좌 수를 결정하고 이에 공제부금을 납부하게 됨
 - 적립성 공제상품은 공제회원이 장기적으로 납부한 공제부금에 대해 연금과 같이 특정연령에 도달시 공제급여를 받게 되는 상품임
 - 따라서 공제급여는 가입자가 납부한 공제부금을 기초로 하여 연금이 지급되게 됨
 - 공제사업은 장단기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해 다수가 함께 대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많은 사람이 가입하고 공제부금을 납부할수록 공제부금의 규모가 증가하고 이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이자수익도 커지게 됨
 - 공제부금을 통해 발생하게 되는 이자수익은 다시 공제사업 가입자들에게 환원된다는 점에서 공제부금의 규모가 클수록 유리하다 할 수 있음
- 공제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는 사업초기의 정부 지원이 매우 중요하며, 충분한 재원이 없을 경우 가입자들의 신뢰를 확보할 수 없고, 공제사업의 안정적 운영이 어렵다는 점에서 정부 지원은 중요한 사항이라 할 수 있음
- 우선적으로 현재 정부에서는 예술인 공제사업이 현 정부의 대선공약사항이며, 장기적으로 예술인들의 숙원사업임을 인식하여 공제사업에 정부예산(출연금)이 지원될 필요가 있음
 - 정부의 출연금 규모는 보장성 상품의 보장수준과 가입자 규모를 고려시 앞에서 추계한 것을 기초로 할 경우 약 3백억에서 4백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보장성 공제상품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가입자가 증가(장기적으로 8만명)하거나 공제상품의 보장수준을 확장할 경우 추가적인 재원의 확보가 필요함
 - 현재의 보장성 보험은 공제회원 약 2만명이 약 300~400억원의 운용수익금을 활용할 경우 가능한 상품임
 - 공제사업 가입자가 증가하거나 해마다의 물가상승률을 고려시 장기적으로 정부에서 지원할 예정인 400억원은 매우 부족할 것으로 보임
 - 추정결과(5장 2절)를 기초로 할 경우 상해활동지원비를 50만원으로 하고 약 6만명이 가입시 연간보험료가 약 20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제5장 예술인 복지모델 재정운용 방안

보장수준과 가입자가 증가함에 따라 소요재원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

- 따라서 사업 초반 가입자 규모가 많지 않을 때 소요재원을 미리 축적함으로써 장기적으로 가입자가 늘어날 수 있는 것에 대비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고려시 연구진이 제안한 3~4백억원 수준은 높은 수준이 아니라고 할 수 있음
- 두 번째 주요재원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및 각 지역별 문화예술진흥기금(지역 문화예술위원회와 지역재단)에 의한 사업의 사업비에서 각출하여 조달되는 재원임
 -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는 문예진흥기금을 통해 정기공모사업을 지원하고 있음
 - 매년 지원되는 사업비의 일부(4.5%)²⁶⁾를 각출하여 예술인 공제사업 가입자들의 공제부금 지원금으로 환원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는데, 이는 정부 혹은 공모사업의 책임자가 사용자의 자격으로 예술인들의 공제부금 일부를 지원하는 형태라 할 수 있음
 - 각출된 재원을 다시 공제사업 가입자들에게 환원하는 방법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임
 - 첫 번째 방법은 재원을 각출한 공모사업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예술인들로부터 각출된 재원을 공제부금 지원금으로 배분하는 방법이고, 두 번째 방법은 각출된 재원을 전체 공제사업 가입자들에게 배분하는 방법임
 - 첫 번째 방법은 우선적으로 문예진흥기금의 지원을 받는 예술인과 받지 못하는 예술인들간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고, 저소득예술인을 지원하기 위한 공제사업 본연의 취지를 살리기 어렵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음
 - 두 번째 방법도 공모에 참여하는 예술인과 참여하지 않는 예술인에게 지원금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에 따라 양자간 형평성 문제나 저소득 예술인 지원이라는 취지에의 부합성 문제가 여전히 존재할 수 있음
 - 따라서 전체적으로 각출된 재원에 대한 배분문제는 예술인 공제사업에 가입하게 될 예술인들간의 합의에 의해 풀어야 할 것임

26)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의 보험료율 9% 중 사용자가 그 절반인 4.5%를 부담하고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설정된 비율임

제5장 예술인 복지모델 재정운용 방안

- 공제사업의 세 번째 주요재원으로 민간예술단체 혹은 민간 기업들로부터의 후원금을 들 수 있음
 - 민간기업들의 경우 예술인 공제사업 가입자들의 예술작품 등을 기업이미지, 광고 등에 활용함에 따라 발생한 수익의 일부를 공제사업에 기부할 수 있도록 하는 유인방안이 제시될 필요가 있음
 - 즉 민간기업들이 주최하는 각종 문화예술사업에 예술인 공제사업에 가입한 예술인들이 함께 참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익과 부담금의 일부를 예술인 공제사업에 기부할 수 있을 것임
 - 단체로부터 발생하는 수익 외에도 공제사업에 가입한 예술인들의 예술활동 및 작품들을 활용하여 발생하는 무형의 이득을 기부함으로써 재원이 마련될 수 있음
- 공제사업의 마지막 주요재원은 정부출연금과 공제부금을 통해 발생하게 되는 이자수익임
 - 이자수익은 이미 지적한 것과 같이 보장성 상품에 대한 예술인 공제사업가입자들의 지원과 적립성 상품에 대한 추가적인 인센티브와 향후 개발될 공제상품을 지원하기 위한 주요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음

제5장 예술인 복지모델 재정운용 방안

제2절 예술인 복지모델 중장기 현금흐름 및 자산운용방안

1. 예술인 복지모델 중장기 현금흐름분석

가. 보장성 상품 중장기 현금흐름

□ 보장성 상품의 중장기 현금흐름은 보장성 상품의 보장수준과 가입자 규모에 따라 상이하게 변동될 수 있음

- 지금까지의 분석이 단기적으로 2만명이 공제사업에 가입하였을 경우를 상정하였다면, 장기적으로 가입자 변화에 따른 지출변화를 파악할 필요가 있음

□ 보장성 상품의 보장수준 및 가입자규모 변화에 따른 추가소요 재원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음

- 상해사망 2천만원, 후유장애 1천만원, 활동지원비 50만원을 가정시,
 - 가입자가 2만명인 경우 소요재원은 6억 62백만원이며 가입자가 증가하여 6만명이면 19억 85백만원, 8만명이면 26억 47백만원까지 증가함
- 활동지원비만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시,
 - 가입자가 2만명인 경우 소요재원은 8억 57백만원이며 가입자가 증가하여 6만명이면 25억 72백만원, 8만명이면 34억 29백만원까지 증가함

〈표 5-3〉 보장성 상품 운영에 따른 추가소요 재원

보장성 상품	인당보험료	가입자 규모	소요재원 (단위: 백만원)
상해사망 2천만원 상해후유장애 1천만원 상해활동지원비 50만원	33,091원	2만명	662
		4만명	1,324
		6만명	1,985
		8만명	2,647
상해사망 2천만원 상해후유장애 1천만원 상해활동지원비 100만원	42,862원	2만명	857
		4만명	1,714
		6만명	2,572
		8만명	3,429
상해사망 2천만원 상해후유장애 1천만원 상해활동지원비 150만원	43,704원	2만명	874
		4만명	1,748
		6만명	2,622
		8만명	3,496

제5장 예술인 복지모델 재정운용 방안

나. 적립성 상품 중장기 현금흐름

□ 가입자 및 정부지원 대상자 수 가정

- 가입자는 첫 해 가입자인 2만명이 계속 유지되는 경우와 해마다 가입자 수가 증가하여 공제사업의 규모를 늘리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음
 - 2만명이 계속 유지된다는 시나리오는 예술인 공제사업의 타겟이 되는 예술인들을 잘 선별하여 이들에 대한 지원을 집중할 수 있다는 점에서 목표효율성(target efficiency)을 기할 수 있다는 장점과 중장기적 예산을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짧은 시기 동안 적정 대상자를 모두 선별해야 한다는 어려움을 수반하고 향후 제도 가입이 절실한 예술인들의 참여를 제한한다는 점에서 비판에 직면할 소지도 있음
 - 반면, 매년 가입자가 증가한다는 것은 본 보고서 제2장의 전망²⁷⁾에 부합하는 시나리오라 할 수 있으며, 보다 폭넓은 층의 예술인을 포괄함으로써 제도의 포괄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측면과 공제부금 수입의 확대로 자금운용에 있어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다는 측면 등의 장점이 있는 반면, 중장기적으로 필요한 정부지원 규모를 추정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그 지원규모 또한 상당히 커져야 하는 부담을 갖게 된다는 단점이 있음
- 가입자 수가 2만명일 경우 소득등급별 전체가입자 수와 35등급 이하의 공제부금 지원대상자 수는 다음의 표와 같이 정리될 수 있음

27) 단기적으로는 2만명, 장기적으로는 작게는 6만명, 많게는 8만명선까지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본 보고서 제2장 제1절 참조)

제5장 예술인 복지모델 재정운용 방안

〈표 5-4〉 가입자 및 공제부금 지원대상자 수

(단위: 명)

구분	구간별 누적비율	전체 가입자	국민연금가입률× 사각지대율 ¹⁾	35등급 이하 가입자
1~5등급	0.20%	40	41.24%	16
6~10등급	0.32%	64		26
11~15등급	2.23%	446		184
16~20등급	16.73%	3,346		1,380
21~25등급	25.41%	5,082		2,096
26~30등급	16.36%	3,272		1,349
31~35등급	10.95%	2,190		903
36~40등급	8.43%	1,686		-
41~45등급	19.35%	3,870		-
합계	100.00%	20,000		5,954 ²⁾

주: 1) 국민연금 사각지대 비율은 지역가입자 대비 납부예외자 비율과 4개월 이상 보험료 체납자비율의 곱으로 계산. 사각지대 비율은 모든 소득등급에서 동일한 것으로 가정하였음

2) 본문에서 산출한 5,960명과 차이가 나는 것은 각 비율을 소수점 2자리로 반올림한 값을 적용한데 따른 것임

- 가입자 수가 초기 2만명에서 10년동안 최대 8만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가정하면 아래 표와 같이 제시할 수 있음
 - 첫 해 2만명에서 10년동안 매년 동일한 규모의 신규가입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여기에 퇴직연금 사망률을 적용하여 연도별 가입자 수를 추정하였음
 - 초기 10년간 해약률은 없는 것으로 가정하였음

〈표 5-5〉 가입자 수 전망

(단위: 명)

연도	인원증감	사망자	조정인원(연중)	35등급 이하가입자
2010년	20,000	-	20,000	5,960
2011년	6,754	43	26,711	7,960
2012년	6,754	54	33,411	9,956
2013년	6,754	65	40,100	11,950
2014년	6,754	76	46,778	13,940
2015년	6,754	87	53,445	15,927
2016년	6,754	98	60,101	17,910
2017년	6,754	108	66,747	19,891
2018년	6,754	119	73,382	21,868
2019년	6,750	130	80,000	23,840

제5장 예술인 복지모델 재정운용 방안

□ 수입부분

- 적립성 상품의 수입은 가입자가 납입하는 공제부금과 문예진흥기금 지원사업비의 각출금 등으로 구성됨
- 먼저 공제부금 수입은 제3장 제3절에서 제시한 소득등급별 공제부금의 합으로 계산되어야 할 것이나 계산의 편의를 위하여 기초연구와 같이 1인당 연간 60만원으로 가정함
- 문예진흥기금 관련 수입구조
 - 문예진흥기금 지원사업으로 집행된 기금은 2007년 총 923억원, 2008년 총 697억원 정도로 이 중 시설운영이나 관객할인(사랑티켓, 문화나눔 등) 등 예술인 참여인력을 명확하게 규정하기 어려운 지원사업(2007년 634억원, 2008년 404억원)을 제외하고 공모와 같이 예술인 참여인력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가능한 지원사업으로 집행된 금액은 연간 300억원 정도²⁸⁾로 앞서 제시한 각출률 4.5%를 적용하면 13.5억원이 됨
 - 한편, 시도별 문화예술단체 지원금은 예산 기준으로 2009년 약 1,387억원²⁹⁾ 정도로 여기에 각출률 4.5%를 적용하면 62.4억원이 됨
 - 적립성 상품의 보조금으로 사용될 수 있는 재원은 위 두 금액의 합인 75.9억원이 되는데, 이 중 해당 사업에 참여하는 예술인에게 60%를 배분하고, 나머지 40%는 전체 회원의 공제부금 보조금으로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총 30억원 정도의 재원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³⁰⁾

□ 지출부분

- 소득등급별로 공제부금에 대한 상이한 지원율을 적용하여 집행된 금액
- 수급자격을 위한 최소납입기간을 10년으로 설정하였으므로 10년간 급여지급에 따른 지출은 없고 사망환급금도 분석의 편의를 위하여 없는 것으로 가정
- 해약률도 10년간 없는 것으로 가정하였으므로 해약환급금도 없음

28) 2007년은 1,730개 사업에 296억원, 2008년은 1,696개 사업에 293억원이 집행되었음(한국문화예술위원회 내부자료)

29) 국고, 지방비, 군특, 기금, 분권, 자체 등으로 구성됨. 2009년 본 예산을 기준으로 본 시도별 문화예술단체 지원금 현황자료를 참조하였음(한국문화관광연구원 내부자료)

30) 문예진흥기금 각출금을 지원사업 참여예술인과 전체 회원의 배분비율에 대해서는 참여예술인의 사업에 대한 기여분을 참작하여 참여예술인에게 돌아가는 몫이 조금 더 크도록 6:4로 설정함

제5장 예술인 복지모델 재정운용 방안

□ 적립성 상품 현금흐름 전망³¹⁾

- 회원수가 2만명으로 고정되고 1인에 따라 정부보조금을 집행할 경우의 현금흐름 전망은 아래 표와 같음
 - 회원수 변동이 없기 때문에 공제수입과 정부보조금 집행금액이 변동이 없으므로 정부보조금에서 집행금액을 제하고 연 4% 수익률을 적용하여 산출한 순적립금은 첫 해인 2010년 1,523백만원에서 2019년에는 16,123백만원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 한편, 정부보조금과 공제수입을 같이 고려하여 산출한 총적립금은 첫 해인 2010년 14,003백만원에서 2019년에는 168,127백만원으로 꾸준히 확대될 전망이다

〈표 5-6〉 적립성 상품 현금흐름 전망 - 1인, 2만명 고정

(단위: 명, 백만원)

연도	가입자	공제부금수입	정부보조금	집행금액	순적립금	총적립금
2010년	20,000	12,000	3,000	1,566	1,523	14,003
2011년	20,000	12,000	3,000	1,566	3,108	28,567
2012년	20,000	12,000	3,000	1,566	4,756	43,713
2013년	20,000	12,000	3,000	1,566	6,469	59,465
2014년	20,000	12,000	3,000	1,566	8,252	75,847
2015년	20,000	12,000	3,000	1,566	10,105	92,885
2016년	20,000	12,000	3,000	1,566	12,033	110,604
2017년	20,000	12,000	3,000	1,566	14,038	129,031
2018년	20,000	12,000	3,000	1,566	16,123	148,196
2019년	20,000	12,000	3,000	1,566	18,291	168,127

주 1: 순적립금은 정부보조금에서 집행금액을 제하고 연 4% 수익률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이고, 총적립금은 정부보조금과 공제수입을 합한 금액에서 집행금액을 제하고 연 4% 수익률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임

31) 본 추정에서 집행금액은 국민연금 소득등급별로 소득의 10%를 납부하는 것을 가정하고 이에 대한 보조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반면, 실제 공제부금수입은 1인당 연간 60만원으로 가정하였으므로 본 현금흐름 전망의 적자는 과대추정되었을 수 있다는 점을 밝혀둠

제5장 예술인 복지모델 재정운용 방안

- 회원수가 10년동안 8만명까지 확대되고 1인에 따라 정부보조금을 집행할 경우의 현금흐름 전망은 아래 표와 같음
 - 회원수가 10년 후 8만명으로 점차 확대된다고 가정할 경우 회원수 증가에 따라 공제수입이 확대되면서 적립 기금이 크게 확대될 것임
 - 그러나 정부보조금만을 고려한 순적립금은 8차년도인 2017년부터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어, 공제수입으로 정부보조금 부족분을 충당하게 될 것임
 - 따라서 회원수가 증가할 것으로 가정을 할 경우에는 적립기금이 보조금 집행으로 잠식되는 일이 없도록 적절한 규모로 증액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표 5-7〉 적립성 상품 현금흐름 전망 - 1인, 8만명까지 증가

(단위: 명, 백만원)

연도	가입자	공제부금수입	정부보조금	집행금액	순적립금	총적립금
2010년	20,000	12,000	3,000	1,566	1,523	14,003
2011년	26,711	16,027	3,000	2,091	2,572	32,218
2012년	33,411	20,047	3,000	2,616	3,127	54,808
2013년	40,100	24,060	3,000	3,139	3,171	81,941
2014년	46,778	28,067	3,000	3,662	2,683	113,794
2015년	53,445	32,067	3,000	4,184	1,643	150,548
2016년	60,101	36,061	3,000	4,705	30	192,395
2017년	66,747	40,048	3,000	5,225	-2,177	239,532
2018년	73,382	44,029	3,000	5,745	-5,003	292,165
2019년	80,000	48,000	3,000	6,263	-8,470	350,504

주 1: 순적립금은 정부보조금에서 집행금액을 제하고 연 4% 수익률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이고, 총적립금은 정부보조금과 공제수입을 합한 금액에서 집행금액을 제하고 연 4% 수익률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임

제5장 예술인 복지모델 재정운용 방안

- 회원수가 2만명으로 고정되고 2안에 따라 정부보조금을 집행할 경우의 현금흐름 전망은 아래 표와 같음
 - 회원수 변동이 없기 때문에 공제수입과 정부보조금 집행금액이 변동이 없으므로 정부보조금에서 집행금액을 제하고 연 4% 수익률을 적용하여 산출한 순적립금은 첫 해인 2010년 1,046백만원에서 2019년에는 12,556백만원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 한편, 정부보조금과 공제수입을 같이 고려하여 산출한 총적립금은 첫 해인 2010년 13,526백만원에서 2019년에는 162,392백만원으로 꾸준히 확대될 전망이다

〈표 5-8〉 적립성 상품 현금흐름 전망 - 2안, 2만명 고정

(단위: 명, 백만원)

연도	가입자	공제부금수입	정부보조금	집행금액	순적립금	총적립금
2010년	20,000	12,000	3,000	2,034	1,046	13,526
2011년	20,000	12,000	3,000	2,034	2,133	27,593
2012년	20,000	12,000	3,000	2,034	3,265	42,222
2013년	20,000	12,000	3,000	2,034	4,441	57,437
2014년	20,000	12,000	3,000	2,034	5,664	73,260
2015년	20,000	12,000	3,000	2,034	6,937	89,716
2016년	20,000	12,000	3,000	2,034	8,260	106,831
2017년	20,000	12,000	3,000	2,034	9,636	124,630
2018년	20,000	12,000	3,000	2,034	11,067	143,141
2019년	20,000	12,000	3,000	2,034	12,556	162,392

주 1: 순적립금은 정부보조금에서 집행금액을 제하고 연 4% 수익률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이고, 총적립금은 정부보조금과 공제수입을 합한 금액에서 집행금액을 제하고 연 4% 수익률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임

제5장 예술인 복지모델 재정운용 방안

- 회원수가 10년동안 8만명까지 확대되고 2안에 따라 정부보조금을 집행할 경우의 현금흐름 전망은 아래 표와 같음
 - 회원수가 10년 후 8만명으로 점차 확대된다고 가정할 경우 회원수 증가에 따라 공제수입이 확대되면서 적립 기금이 크게 확대될 것임
 - 그러나 정부보조금 집행금액 또한 증가하게 되어 5차년도인 2014년에는 이미 집행금액이 보조금을 상회하게 되어 6차년도부터는 공제수입에서 공제부금이 집행되는 현상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따라서 회원수가 증가할 것으로 가정을 할 경우에는 적립기금이 보조금 집행으로 잠식되는 일이 없도록 적절한 규모로 증액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표 5-9〉 적립성 상품 현금흐름 전망 - 2안, 8만명까지 증가

(단위: 명, 백만원)

연도	가입자	공제부금수입	정부보조금	집행금액	순적립금	총적립금
2010년	20,000	12,000	3,000	2,034	1,046	13,526
2011년	26,711	16,027	3,000	2,717	1,437	31,084
2012년	33,411	20,047	3,000	3,398	1,149	52,830
2013년	40,100	24,060	3,000	4,078	156	78,927
2014년	46,778	28,067	3,000	4,758	-1,570	109,542
2015년	53,445	32,067	3,000	5,436	-4,056	144,850
2016년	60,101	36,061	3,000	6,113	-7,331	185,033
2017년	66,747	40,048	3,000	6,788	-11,428	230,282
2018년	73,382	44,029	3,000	7,463	-16,376	280,792
2019년	80,000	48,000	3,000	8,136	-22,208	336,766

주 1: 순적립금은 정부보조금에서 집행금액을 제하고 연 4% 수익률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이고, 총적립금은 정부보조금과 공제수입을 합한 금액에서 집행금액을 제하고 연 4% 수익률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임

제5장 예술인 복지모델 재정운용 방안

- 회원수가 2만명으로 고정되고 3안에 따라 정부보조금을 집행할 경우의 현금흐름 전망은 아래 표와 같음
 - 회원수 변동이 없기 때문에 공제수입과 정부보조금 집행금액이 변동이 없으므로 정부보조금에서 집행금액을 제하고 연 4% 수익률을 적용하여 산출한 순적립금은 첫 해인 2010년 1,078백만원에서 2019년에는 12,939백만원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 한편, 정부보조금과 공제수입을 같이 고려하여 산출한 총적립금은 첫 해인 2010년 13,558백만원에서 2019년에는 162,775백만원으로 꾸준히 확대될 전망이다

〈표 5-10〉 적립성 상품 현금흐름 전망 - 3안, 2만명 고정

(단위: 명, 백만원)

연도	가입자	공제부금수입	정부보조금	집행금액	순적립금	총적립금
2010년	20,000	12,000	3,000	2,003	1,078	13,558
2011년	20,000	12,000	3,000	2,003	2,198	27,658
2012년	20,000	12,000	3,000	2,003	3,364	42,322
2013년	20,000	12,000	3,000	2,003	4,576	57,572
2014년	20,000	12,000	3,000	2,003	5,837	73,433
2015년	20,000	12,000	3,000	2,003	7,148	89,928
2016년	20,000	12,000	3,000	2,003	8,512	107,083
2017년	20,000	12,000	3,000	2,003	9,930	124,924
2018년	20,000	12,000	3,000	2,003	11,405	143,478
2019년	20,000	12,000	3,000	2,003	12,939	162,775

주 1: 순적립금은 정부보조금에서 집행금액을 제하고 연 4% 수익률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이고, 총적립금은 정부보조금과 공제수입을 합한 금액에서 집행금액을 제하고 연 4% 수익률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임

제5장 예술인 복지모델 재정운용 방안

- 회원수가 10년동안 8만명까지 확대되고 3안에 따라 정부보조금을 집행할 경우의 현금흐름 전망은 아래 표와 같음
 - 그러나 정부보조금 집행금액 또한 증가하게 되어 5차년도인 2014년에는 이미 집행금액이 보조금을 상회하면서 -1,285백만원의 수치적자가 발생하여 6차년도부터 공제수입에서 공제부금이 집행되는 현상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따라서 회원수가 증가할 것으로 가정을 할 경우에는 적립기금이 보조금 집행으로 잠식되는 일이 없도록 적절한 규모로 증액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표 5-11〉 적립성 상품 현금흐름 전망 - 3안, 8만명까지 증가

(단위: 명, 백만원)

연도	가입자	공제부금수입	정부보조금	집행금액	순적립금	총적립금
2010년	20,000	12,000	3,000	2,003	1,078	13,558
2011년	26,711	16,027	3,000	2,675	1,513	31,160
2012년	33,411	20,047	3,000	3,346	1,282	52,963
2013년	40,100	24,060	3,000	4,015	358	79,129
2014년	46,778	28,067	3,000	4,684	-1,285	109,826
2015년	53,445	32,067	3,000	5,352	-3,674	145,231
2016년	60,101	36,061	3,000	6,018	-6,839	185,526
2017년	66,747	40,048	3,000	6,684	-10,808	230,901
2018년	73,382	44,029	3,000	7,348	-15,614	281,554
2019년	80,000	48,000	3,000	8,011	-21,289	337,686

주 1: 순적립금은 정부보조금에서 집행금액을 제하고 연 4% 수익률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이고, 총적립금은 정부보조금과 공제수입을 합한 금액에서 집행금액을 제하고 연 4% 수익률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임

제5장 예술인 복지모델 재정운용 방안

2. 예술인 복지모델 자산운용의 원칙과 성과평가 방안

가. 예술인 복지모델 자산운용 원칙

- 국가재정법 63조에서는 기금관리에 대한 기본원칙을 정하고 있음
 - 즉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주체는 안정성·유동성·수익성 및 공공성을 고려하여 기금자산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도록 하고 있음
 - 또한 법 79조의 규정에 따라 자산운용지침을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자산을 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자산운용지침에서는 ①투자결정 및 위험관리 등에 관련된 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 ②투자자산별 배분에 관한 사항, ③ 자산운용 실적의 평가 및 공시에 관한 사항, ④보유주식의 의결권 행사에 대한 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 ⑤자산운용과 관련된 부정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산운용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지켜야 할 사항, ⑥그 밖에 자산운용과 관련하여 기금관리주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담도록 하고 있음
-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경우 문예진흥기금을 관리하고 있음에 따라 국가재정법에 의해 자산운용지침을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기금을 관리·운용하고 있음
- 문예진흥기금의 자산운용지침에 의할 경우 국가재정법 63조에 의해 안정성·유동성·수익성 및 공공성을 원칙으로 하여 자산을 운용하도록 하고 있음
- 예술인 공제사업에서 운용될 기금은 가입자들이 납부하는 공제부금과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및 보조금, 문예진흥기금 등의 보조금으로 구성되어 있음
 - 또한 공제사업에서 운용할 기금은 장기적으로 공제가입자들에게 돌려주어야 할 책임준비금의 성격도 함께 지니고 있어 기금의 관리·운용은 매우 중요함
 - 위와 같은 사항을 고려시 예술인공제사업에서 운용할 기금은 국가재정법에서 지정하고 있는 네 가지 원칙을 기준으로 하되 추가적으로 투명성이 고려될 필요가 있으며, 안정성과 수익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음
 - 이미 문화예술위원회에서 운용하고 있는 문예진흥기금의 경우에도 네 가지 기본원칙하에 안정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고려하고 있음

제5장 예술인 복지모델 재정운용 방안

- 안정성이란 공제사업의 기금이 가입자들에게 장기적으로 돌려주어야 할 채무이고 준비금이란 측면에서 기금에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정자산 등에 투자되어야 한다는 의미임
 - 공제사업이 장기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기금을 투자하거나 운용하고자 할 경우 명확한 자산운용지침과 법에 의한 규정, 관련 위원회 등에 의한 회의와 평가를 통해 자산이 안정적으로 운용될 필요가 있음
- 유동성이란 공제사업의 기금이 한 번 들어오면 지출되지 않는 것이 아닌 주기적 혹은 일시적으로 기금의 지출이 필요함에 따라 기금을 쉽게 인출할 수 있도록 기금이 운용될 필요가 있음
 - 수익성 제고를 위해 일정기간 인출이 어려운 주식의 펀드상품 혹은 유동성이 거의 없는 부동산 등에 투자하여 필요시 자금 인출이 어려워 질 수 있는 상황을 방지하고자 하는 원칙임
- 수익성이란 공제사업에서 운영하고 있는 적립성 상품이 단순히 가입자가 납부한 부금만을 제공하는 것이 아닌 일정수준의 이윤을 추가하여 제공하는 것임
 - 자산운용에 있어 수익성은 장래에 발생할 채무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부문임
 - 그러나 수익성은 안정성의 원칙과 상반되는 개념으로 과도한 수익의 추구는 안정성을 해칠 수 있으며, 안정성을 위주로 한 투자는 또한 수익성을 나쁘게 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조화가 필요함
 - 문화예술위원회 자산운용지침에 의한 경우 안정성을 위해서는 확정금리의 정기예금에 수익성을 위해서는 실적배당상품인 수익증권에 배분하여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2009년의 경우 안정성을 위해 채권에 85.27%, 수익성을 위해서는 증권 등에 7.21%를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수익성은 단순히 금융상품에 투자되었다고 발생하는 것이 아니며, 자산을 누가 전문적으로 운용하느냐, 관리운용비를 어떻게 운용하느냐, 기타 부대사업비용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차이를 발생할 수 있음
 - 공제사업 기금의 운용시 수익성 제고를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전문 자산관리

제5장 예술인 복지모델 재정운용 방안

인력을 통해 수익성을 높일 필요가 있으며, 기존 문예진흥기금과 함께 융합함으로써 추가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금융비용과 관리비용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공공성이란 공제사업의 기금을 투자시 투기자본을 중심으로 투자하기 보다는 사회 통합과 연대를 위해 사회간접자본시설, 사회복지시설 등에 투자하여 공공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미임
 - 공제사업의 주요재원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하는 세금을 통해 지원됨으로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임
- 투명성이란 공제사업의 주요재원이 가입자들의 공제부금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기금관리 및 운용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과 검증들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투명성은 안정성과 수익성의 원칙과 더불어 중요한 원칙중의 하나라 볼 수 있으며, 공제사업본부내에 기금관리 관련 소위원회 구성을 통해 이를 담보할 수 있도록 노력
 - 또한 주기적으로 기금운용에 대한 성과평가를 통해 기금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으며, 기금운용에 대한 주요 내용들은 공제사업 가입자들에게 즉각적으로 알려질 수 있도록 공개
 - 이미 문화예술위원회의 경우에도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자산운용위원회를 두고, 기금의 주요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음
 - 수익성제고란 의미에서 기존 문화예술위원회의 자산운용위원회와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임

나. 예술인 복지모델 자산운용 성과평가 방안

- 국가재정법에서는 자산운용을 위한 기본원칙과 더불어 기금에 있어 성과평가를 하도록 이를 규정하고 있음
 - 국가재정법 제8조(성과중심의 재정운영)에 의할 경우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지는 재정활동에 대한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며,
 - 이를 위해 성과보고서, 재정운용계획 등을 작성하며, 필요에 따라서는 전문 조사연구기관에 이에 대한 조사연구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제5장 예술인 복지모델 재정운용 방안

- 문화예술위원회의 경우에도 문예진흥기금에 대한 자산운용지침에 성과평가에 대한 규정을 두고 이를 통해 성과평가를 진행하고 있음
 - 이를 살펴보면, 성과평가지 자산배분 등을 포함한 투자의사결정 주체의 권한, 보유포트폴리오로 인한 요인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으며,
 - 성과평가를 단순히 기준수익률 대비 초과수익률로 측정하지 않고 위험을 고려한 평가를 실시하며, 평가는 외부평가를 원칙으로 하고 이를 자산운용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 단기적으로는 월별, 분기별, 반기별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매 3년마다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평가결과는 외부에 공개 원칙
- 성과에 대한 평가방법은 정량적 방법과 정성적 방법을 들 수 있으며, 정량적 평가로는 전략적 자산배분평가를 들 수 있으며, 정성적 방법으로는 기금투자의사결정주체, 인적자원, 행정관리 업무 등을 들 수 있음
 - 우리나라의 대표적 기금이라 할 수 있는 국민연금의 성과평가기준은 기금운용의 성과(수익률, 위험)의 요약, 전략적 자산배분, 리스크관리능력 및 정책제언으로 구성되어 있음(정문경, 2005)
 - 국민연금기금운용규정(71조)에 의해 평가원칙은 자산배분으로부터 개별 투자에 이르기까지 부여된 의사결정권한을 고려하여 평가하도록 하고 있음
 - 국민연금 기금의 수익률은 기금의 순자산가치가 반영되는 시가수익률의 적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모든 금융상품별 내역을 분석·공개하도록 하고 있음
 - 평가방법(규정 73조)은 전술적 자산배분과 기금운용계획에서 정한 자산군별 벤치마크지수와 대비하여 평가하도록 하되, 평가주기는 1년을 주기로 하고 3년 이상 장기평가 병행
 - 자산별 평가방법은 국내채권은 ①신용위험 정도, ②종목 선택의 성과, ③시장 수익률 변화에 대응한 투자전략 성과이며,
 - 국내 주식은 직접 및 위탁투자로 구분하여 평가하며, ①자산배분 효과, ②업종배분효과, ③종목선택의 성과, ④종목별 시장가치 비중 편중도, ⑤매매시점을 평가하도록 하고 있음

제5장 예술인 복지모델 재정운용 방안

- 문화예술위원회의 경우 정량적 평가를 기준으로 순자산가치에 반영되는 시가 수익률을 원칙으로 하고 상품별로 기준수익률을 설정하여 이를 통해 초과수익률 및 위험을 고려한 평가를 하고 있음
- 예술인 공제사업에서 관리운용하게 될 기금운용에 대한 성과평가는 기존 문화예술 위원회에서 활용하고 있는 방법을 기준으로 하되, 국민연금 기금운용시 적용되고 있는 평가방법을 함께 고려
 - 이를 통해 기존 문예진흥기금과 공제사업 기금이 합해져 기금이 늘어남에 따라 자산배분 및 운용에 있어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임

제6장 예술인복지모델 운영을 위한 규정 정비 방안

제6장

예술인 복지모델 운영을 위한 규정 정비 방안

제1절 : 배경

제2절 : 예술인공제사업법안

1. 개요
2. 법안 초안
3. 시행령 초안

제6장 예술인 복지모델 운영을 위한 규정 정비 방안

제1절 배경

- 예술인 공제사업을 새롭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관련법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예술인 공제사업 관련 법안의 성립은 두 가지 방안이 있음
 - 첫 번째는 특별법의 형태로 별도의 법안을 구성하는 방법이며, 두 번째는 현행 문화예술진흥법에 공제사업 관련 법률을 추가하는 방안임³²⁾
- 선행연구의 경우에도 조성한 외(2008)의 연구에서는 예술인 공제사업에 대해 기존 법에 조항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설명하고 있는 반면에 박영정 외(2008)의 연구에서는 별도의 법안으로 하여 예술인 공제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예술인 공제사업에 대한 법안구성시 기존 법안에 추가하는 방법과 별도의 법률을 구성하는 것을 장단점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음
- 첫 번째, 특별법의 형태로 법안을 구성하는 방안(예: 교원공제회, 군인공제회, 과학기술인 공제회)
 - 특별법의 장점은 ①별도의 공제기관을 설립함에 따라 제도 운영에 있어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②기금을 활용하여 공제가입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사업운영이 가능하다는 것임
 - 반면, 단점으로는 ①제정과 개정에 있어서 상당한 시간과 정치적 비용이 소요됨에 따라 다소 경직적일 수 있으며, ②관련 단체간의 로비 및 공제회 사업 주체 등에 대한 논쟁 발생 가능성이 높고, ③공제사업을 수행할 별도 기관을 설립하는데 있어 인력과 예산에 대한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음
- 두 번째, 기존 법률내에 공제사업을 추가하는 방안(예: 소상공인 공제회)
 - 장점으로 ①별도 조직을 제정하는 것보다 빠른 시간내 공제조합을 조직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술인을 위한 복지사업을 신속하게 착수할 수 있다는 점(유연성), ②기존 기관을 활용함에 따라 인력 및 예산상의 낭비를 해소할 수 있다는 효율성, ③기존 조직의 know-how를 활용 가능하다는 점 등이 있음

32) 현재 국내에서 운영중인 여타 공제회의 법적근거를 살펴보면 첫 번째와 같이 기존 법률에 추가하는 방식을 취한 공제회는 소상공인 공제조합(노란우산 공제)이 있으며, 두 번째 별도의 입법을 취한 형태는 군인공제회, 교원공제회, 과학기술인공제회 등이 있음

제6장 예술인복지모델 운영을 위한 규정 정비 방안

- 단점으로는 ①기존 조직과 신규 공제조직과의 융합에 시간소요, ②기존 법률/조직 내 공제사업이 추가됨에 따라 사업대상·내용·운영에 있어서 융통성 및 자율성 확보에 제한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이 있음.
- 현재 예술인 공제사업을 위한 법안의 경우 조직 효율성 및 문화예술인을 지원하고자 하는 시의성을 중심으로 살펴볼 경우 별도의 입법을 통해 새로운 공제회를 구성하기 보다는
 - 기존 문화예술위원회 산하에 공제사업본부를 두고 사업을 운영한다는 점에서 별도의 법안보다는 문예진흥법에 일부 조항을 추가하는 방식이 합리적이라 할 수 있음
- 즉 예술인 공제사업의 경우 기존 인력의 활용과 공제사업 운영시 과도한 관리운영 비용을 줄이고, 예산을 공제사업에 집중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공제사업을 운영하는 방안을 고려
 - 여기서는 문화예술위원회 산하에서 예술인공제사업 운영시 필요한 법 및 시행령에서 고려되어야 할 사항들을 살펴보고자 함

제6장 예술인 복지모델 운영을 위한 규정 정비 방안

제2절 예술인 공제사업 법안

1. 개요

□ 예술인 공제사업 관련 입법 취지

- 사회와 문화발전에 있어서 문화예술인들이 기여하는 바가 크지만, 현 사회보험 제도는 정규근로자를 중심으로 운영됨으로써 다수의 문화예술인이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져 있음
- 문화예술인들을 위한 예술인공제사업을 운영함으로써 예술인들 스스로 사회적 위험(노령, 상해, 사망 등)에 대비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음

□ 예술인 공제사업 운영을 위한 기본 법안의 체계는 문화예술진흥법에 공제사업 관련 조항을 추가 혹은 개정하는 방법을 활용함

- 문화예술진흥법에 “제6장 예술인복지”를 신설하고 39조에서 47조까지 예술인공제사업에 관한 법적 기반 확보
- 법안의 구성체계는 예술인 공제사업의 관리운영, 운영위원회, 예술인 공제사업에의 가입, 사업 및 자금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음

2. 법안 초안

□ 우선 예술인공제사업을 위한 재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술인들을 위한 복지 정책 시행,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복지사업에 대한 법적 정당성 확보를 위해 기존 문예진흥법의 일부를 개정

- 문예진흥법 3조 1항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문화예술인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을 포함
 - **제3조(시책과 권장)**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며, 국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보호·육성하며, 문화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 예술인 공제사업이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관리·운영되기 위한 정당성 확보

제6장 예술인복지모델 운영을 위한 규정 정비 방안

를 위해 문예진흥법 20조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관련 조항에 복지증진을 위한 내용을 추가

- **제20조(한국문화예술위원회)** ①문화예술 진흥과 문화예술인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위와 같이 3조와 20조에 문화예술인 복지를 위한 일부 내용을 포함함으로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노력과 문화예술위원회에서 공제사업본부 설치를 법적으로 정당화

□ 구체적으로 예술인공제사업에 대한 사항은 문예진흥법에 9개의 조항을 신설하여 사업에 대한 내용을 구성함

- 먼저 법 39조를 신설하여 예술인공제사업을 문화예술위원회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기타 주요 조항에 대한 조항으로 구성함, 즉 법 39조에 포함될 내용들은 예술인공제사업의 위원회 설치, 목적, 공제사업의 관리·운영(공제사업본부)을 담고 있음
- 예술인공제사업의 관리·운영방법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에서 별도로 정하게 되며, 구체적인 세부 사업내용은 시행령에서 문화예술위원회의 정관 및 공제사업 약관을 통해 규정하도록 함
- **제39조(예술인 공제사업의 관리·운영)** ①위원회는 문화예술인의 창작여건 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예술인공제사업을 관리·운영한다. ②위원회는 예술인공제사업의 효과적 수행을 위하여 공제사업본부를 둔다. ③예술인공제사업의 운영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 40조에서는 예술인 공제조합에 가입할 가입대상자들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되, 예술인들의 직업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사항들에 대해서는 공제사업 정관에 위임하도록 함

- 우선적으로 공제사업에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문화예술위원회에 가입계약을 체결하고 공제부금을 납부할 의무를 지게 됨
- **제40조(예술인공제의 가입)** ①예술인공제에 가입할 수 있는 자는 위원회의 정관으로 정한다. ②예술인공제에 가입하려는 자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공

제6장 예술인 복지모델 운영을 위한 규정 정비 방안

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다음으로는 예술인 공제사업의 내용에 대한 내용을 다음 조항들에 담도록 하며, 예술인 공제사업(법41조)은 크게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음
 - 먼저 ①가입자들에 대한 공제금의 지급, ②예술인공제기금 조성을 위한 사업, ③그 밖에 가입자의 복지·후생을 위한 사업임
 - 가입자들에 대한 공제금 지급은 공제사업의 가장 기본적인 사업이라 할 수 있으며, 공제사업에서 향후 운영하게 될 사업내용은 정관에 담도록 함
 - 공제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는 가입자 및 정부 보조금만으로는 재원이 부족할 수 있어 가입 예술인들과 공동으로 공제조합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들이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예술인공제사업을 통해서는 기본적인 공제상품이외에 연령, 예술인들의 특성에 적합한 추가적인 상품들을 개발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예술인들의 연대감 형성과 안정적인 사업운영이 가능할 것임
 - **제41조 (예술인공제 사업)** 예술인공제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한다.
 1. 가입자에 대한 공제금의 지급
 2. 자금 조성을 위한 사업
 3. 그 밖에 가입자의 복지·후생을 위한 사업
- 법안 42조에서는 공제사업의 또 다른 주요한 골격이라 할 수 있는 공제사업의 재원에 대한 사항들을 담고자 함
 - 예술인 공제회 운영을 위한 재원 조달방안의 마련은 매우 중요한 사항이라 할 수 있음
 - 따라서 법안에서는 큰 골격을 제안하도록 하고 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보조금 및 출연금 납부가 가능하도록 포함
 - 공제사업 자금의 조성은 네 가지 방법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음
 - ①가입자가 납부하는 공제부금, ②정부 또는 지자체의 보조금·출연금, ③기타 민간에서의 출연금, ④공제기금 운용에 따른 수익으로 구성됨
 - 공제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는 사업초반에 정부의 지원이 매우 중요하며, 충분한 재원이 없을 경우 가입자들의 신뢰를 확보할 수 없고, 공제사업의 안정

제6장 예술인복지모델 운영을 위한 규정 정비 방안

적 운영이 어렵다는 점에서 정부 지원은 중요한 사항이라 할 수 있음

- 재원조성을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써 동 조의 2항에서는 문화예술진흥기금 또는 지방문화예술위원회나 재단법인의 보조금을 지원받는 자와 단체로 하여금 보조금의 일부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 즉 보조금 및 기금의 일부 재원을 통해 공제사업의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위한 사항이라 할 수 있음

- **제42조 (자금의 조성)** ①예술인공제에 필요한 자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예술인공제의 가입자가 납부하는 공제부금
2.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출연금
3.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의 출연금
4. 예술인공제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②위원회는 문화예술진흥기금 또는 법 제4조에 따른 지방문화예술위원회나 재단법인의 보조금을 지원받는 자와 단체로 하여금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 받은 보조금의 일부를 예술인공제에 납부하게 할 수 있다.

- 예술인 공제사업을 운영하고 기금 등을 관리하기 위해 기존 문화예술위원회 산하에 별도의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규정하기 위한 법률조항이 43조라 할 수 있음.

- 예술인공제사업의 지속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예술인공제사업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있음

- 공제사업 운영위원회의 구체적 사항은 시행령에서 담도록 하되, 재원의 안전성과 사업의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관련 부처, 예술단체(가입자 대표성 확보)의 대표자 및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할 필요가 있음

- **제43조 (예술인공제운영위원회)** ①제30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술인공제사업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공제사업본부에 예술인공제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마지막으로 공제사업을 위해 규정할 조항으로는 공제가입자들에 납부한 공제부금

제6장 예술인 복지모델 운영을 위한 규정 정비 방안

에 대한 보호와 만일을 대비하기 위한 준비금 및 보험업법 배제 규정이라 할 수 있음

- 먼저 공제가입자들의 공제부금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이를 보장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수급자들의 개인적인 사정 혹은 공제관리조직의 부실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로부터 가입자들의 수급권을 보호할 수 있음(법44조)
- 보험의 경우 “보험업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공제조합은 별도의 법 혹은 민법의 규정에 따르도록 하고 있음. 예술인공제사업은 별도로 운영되는 제도이므로 “보험업법”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음(법46조)
- 책임준비금이란 보험(혹은 조합)회사가 보험(혹은 공제사업)계약상의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적립하는 금액을 의미함
 - 즉 급격한 환경변화, 투자손실로 인한 어려움에도 최소한 공제가입자들이 공제금을 제공할 수 있는 예비금액이라 할 수 있음
 - 시행령에서는 책임준비금 적립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도록 함. 즉 준비금의 적립과 운용에 대한 사항을 담도록 함(법45조)
- 위원회가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가입자 및 관련 재원들에 대한 사항을 파악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 정부 및 지자체 등에 대해 관련 자료를 요청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 법안에 포함되어야 할 것임(법47조)
- **제44조 (수급권의 보호)** 공제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이를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 **제45조 (준비금의 적립)** 위원회는 결산기마다 문화예술인공제의 종류별로 장래에 지급할 공제금에 충당하기 위한 준비금을 계상하고 이를 별도로 적립·운용하여야 한다.
- **제46조 (보험업법의 적용 배제)** 문화예술인공제에 관하여는 「보험업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47조 (자료의 요청)** ①위원회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 등에 대하여 복지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자료를

제6장 예술인복지모델 운영을 위한 규정 정비 방안

제공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제공되는 자료에 대하여는 사용료, 수수료 등을 면제한다.

□ 위의 사항들을 기준으로 법안의 내용을 기술하면 아래와 같음

- **제39조 (예술인 공제사업의 관라운영)** ①위원회는 문화예술인의 창작여건 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문화예술인공제사업을 관라운영한다. ②위원회는 문화예술인공제사업의 효과적 수행을 위하여 공제사업본부를 둔다. ③문화예술인공제사업의 운영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0조 (예술인공제의 가입)** ①예술인공제에 가입할 수 있는 자는 위원회의 정관으로 정한다. ②예술인공제에 가입하려는 자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공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제41조 (예술인공제 사업)** 예술인공제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한다.
 1. 가입자에 대한 공제금의 지급
 2. 자금 조성을 위한 사업
 3. 그 밖에 가입자의 복지후생을 위한 사업
- **제42조 (자금의 조성)** ①예술인공제에 필요한 자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예술인공제의 가입자가 납부하는 공제부금
 2.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출연금
 3.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의 출연금
 4. 예술인공제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②위원회는 문화예술진흥기금 또는 법 제4조에 따른 지방문화예술위원회나 재단법인의 보조금을 지원받는 자와 단체로 하여금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 받은 보조금의 일부를 예술인공제에 납부하게 할 수 있다.
- **제43조 (예술인공제운영위원회)** ①제30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술인공제사업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공제사업본부에 예술인공제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4조 (수급권의 보호)** 공제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이를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6장 예술인 복지모델 운영을 위한 규정 정비 방안

- **제45조 (준비금의 적립)** 위원회는 결산기마다 문화예술인공제의 종류별로 장래에 지급할 공제금에 충당하기 위한 준비금을 계상하고 이를 별도로 적립·운용하여야 한다.
- **제46조 (보험업법의 적용 배제)** 문화예술인공제에 관하여는 「보험업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47조 (자료의 요청)** ①위원회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 등에 대하여 복지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제공되는 자료에 대하여는 사용료, 수수료 등을 면제한다.

3. 시행령 초안

□ 시행령에서는 공제운영위원회, 공제사업본부 및 기타 공제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

- 시행령 A조(예술인공제사업본부) ①예술인공제사업본부는 예술인공제사업 전반에 걸친 관리·운영 업무를 담당하며, 공제운영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도록 한다. ②예술인공제사업본부에는 공제사업 가입자 심사를 위한 회원자격심사위원회를 둔다. ③예술인공제사업본부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산하에 두며,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직원을 둔다.
- 시행령 B조(예술인공제운영위원회) ①예술인공제사업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공제사업본부에 공제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다음의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예술인공제사업의 사업과 업무를 위한 기본 및 세부계획 수립과 변경 등에 관한 사항
 2. 공제사업약관의 수립, 개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예술인공제사업 공제부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4. 예술인공제사업 사업 및 결산보고서에 관한 사항
 5. 가입자들의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의결

제6장 예술인복지모델 운영을 위한 규정 정비 방안

6. 기타 공제사업 운영·집행을 위한 중요한 사항

- ②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1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 중 1인을 선정하며, 구성은 정부대표 2명(문화체육관광부 등 2인), 공제사업 가입자 대표 5인, 전문가 등 3명으로 한다. ④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운영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위원중 선임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⑥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⑧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번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⑨위원이 결원되면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새 위원을 위촉하여야 하며, 새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⑩임기가 만료된 위원은 그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한다. ⑪제1항의 각호와 제4항부터 제10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 시행령 C조(예술인공제기금운용 소위원회) ①예술인공제 운영위원회 산하에 공제기금과 책임준비금 운용상황을 평가할 수 있는 3인 이내의 소위원회를 구성한다. ②소위원회에서는 매년 공제기금과 책임준비금의 운용상황에 대해 평가하고 이를 예술인공제사업 운영위원회에 서면으로 보고한다. ③매 3년에 한번씩 공제기금의 적립, 투자방법, 기금활용 등에 대해 성과평가를 실시하도록 한다.
 - 시행령 D조(공제기금 구분계리) 문화예술위원회는 법36조의 3의 3항에 의한 예술인공제사업에 필요한 기금을 문화예술위원회의 다른 수입금과 구분하여 수입과 지출을 관리하여야 한다.
 - 시행령 E조(공제기금의 조성 등) 안정적 기금조성을 위해 한시적으로 정부보조금을 지급하고, 문화예술진흥기금 중 문화예술단체에 지원되는 보조금의 일부를 회원의 공제료를 보조하는데 사용하되, 구체적인 비율은 예술인공제사업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 책임준비금이란 보험(혹은 조합)회사가 보험(혹은 공제사업)계약상의 책임을 이행

제6장 예술인 복지모델 운영을 위한 규정 정비 방안

하기 위하여 적립하는 금액을 의미함. 즉 급격한 환경변화, 투자손실로 인한 어려움에도 최소한 공제가입자들이 공제금을 제공할 수 있는 예비금액이라 할 수 있음

－ 시행령 F조(책임준비금 적립) 문화예술위원회는 예술인공제사업 공제금에 충당하기 위해 결산기마다 각호의 순서에 따라 법 45조에 따른 책임준비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1. 공제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지급하게 될 예술인공제금에 충당하기 위한 준비금

2. 급격한 경기변동 등에 의한 위험률의 변화가 발생한 경우에 예술인공제금의 지급에 충당하기 위한 준비금

－ 시행령 G조(책임준비금 운용) 문화예술위원회는 F조에 따라 적립된 적립금을 운용할 때는 안정성·유동성·수익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 시행령에서 구체적인 공제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공제사업 약관에 대한 규정을 정하도록 함.

－ 시행령 H조(공제사업약관) ①문화예술위원회는 공제사업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예술인공제사업 운영방법·절차 및 공제계약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공제사업 약관으로 정하도록 한다. ②문화예술위원회는 공제사업 약관을 정하거나 변경시 사전에 문화체육관광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장

결론

제7장 결론

- 누구나 어렸을 때 한 번쯤은 예술에 대한 동경과 호기심으로 멀게는 역사적으로 유명한 예술인들에 대해, 가깝게는 TV나 매체에 많이 알려진 예술인들에게 애정을 가지고 삶의 목표나 위안으로 삼은 경험들이 있을 것임
 - 위와 같이 일반인들이 바라보는 예술의 모습과 그 속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예술인들은 선망과 동경의 대상으로만 바라보면서, 예술활동에서 겪는 역경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음
 - 혹자는 어려운 환경속에서 빛나는 예술작품들이 탄생할 수 있으며 대중들은 이를 기리게 된다고 생각하기도 함
 - 예술과 예술인들에 대한 일반인들의 편견은 예술은 당연히 힘들고 가난한 환경에서만 나타나는 것으로 오해하게 하고, 동경은 하지만 자신들의 자녀들이 예술 활동을 한다고 하면 힘들다고 반대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라 할 수 있음
 - 최근 들어 예술인들 스스로 예술에 대한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가치에 대한 올바른 평가와 그 속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예술인들의 삶의 질 향상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음
- 그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현 정부 들어 작지만 예술인들의 생활을 돕기 위한 복지모델의 하나로 예술인공제사업에 대한 내용이 국정과제로 채택되었으며, 여러 연구들을 통해 공제사업의 모습이 점차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할 수 있음
 - 본 연구는 위와 같은 배경하에 이루어진 예술인 공제사업의 본격적인 시행을 위한 연구라 할 수 있음
- 본 보고서에서는 예술인 공제사업을 위해 미리 선행되었던 연구들과 외국의 주요 예술인 지원사업, 현재 우리나라에서 운영중인 각종 공제회의 주요 내용들을 기초로 하여 향후 운영될 예술인 공제사업의 주요 사항들을 담고 있음
 - 본 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첫째, 예술인 공제사업 시행시 가입하게 될 가입 예술인들의 범위와 결정방법, 둘째, 예술인 공제사업에서 운영하게 될 공제상품과 그 세부설계, 셋째, 예술인 공제사업을 운영하게 될 운영조직에 대한 사항, 넷째, 예술인 공제사업 시행을 위한 법적 검토
- 가입예술인과 관련하여서는 우선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인정하고, 정부

제7장 결론

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예술활동을 하는 예술인들을 1차적 가입대상으로 하고,

- 프리랜서 혹은 자영예술가들은 본인의 예술활동 실적을 기초로 예술인 공제사업에서의 평가를 통해 가입이 결정되도록 하였음

□ 예술인 공제사업에서 운영될 주요 상품은 보장성 공제상품과 적립성 공제상품으로 구분하여,

- 보장성 공제상품은 예술인들이 열악한 환경속에서 예술활동으로 인해 상해를 입었을 경우 최소한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상해와 의료비를 중심으로 설계
- 적립성 공제상품은 예술인 복지실태에서 나타난 욕구를 반영하여 노후소득보장이 가능하도록 적립형 연금상품을 중심으로 상품을 설계
- 여기서 제안된 보장성 및 적립성 공제상품은 본격적으로 공제사업이 운영시 적용할 수 있도록 상품에 대한 주요내용을 담고자 노력하였음

- 본격적으로 예술인 공제사업이 시행되기전 일부 예술 장르를 대상으로 보장성 상품 및 적립성 상품에 대한 시범사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본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보장성 상품과 적립성 상품의 개발에 사용된 기본 가정들은 일반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문화예술인들에게 바로 적용하기에는 한계를 지닐 수 있음
- 즉 문화예술의 직업적 특성에 따라 위험률이 높은 직업군과 낮은 직업군으로 나누어질 수 있으며, 직업에 따라 공제사업 가입의사에도 차이를 보일 수 있음
- 따라서 공제사업 초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방지하고 공제상품 설계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정확한 위험률, 사망률, 해약 등 기초자료에 대한 축적이 필요함
- 시범사업은 6개월에서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전체 장르보다는 특성이 명확한 일부 장르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을 것임

□ 예술인 공제사업의 운영 및 관리조직은 예술인들에게 가능한 많은 혜택이 부여될 수 있도록 별도의 공제회를 설립하기 보다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관련 조직을 신설하여 공제사업을 운영하도록 제안하고 있음

- 공제사업의 특성상 별도의 공제조직을 설립하는 경우 초반에 많은 인력과 비용

제7장 결론

이 소요됨으로써 부가적인 예산지원이 필요하게 됨

- 위와 같은 부가적인 비용을 줄이고 예술인들의 특성을 잘 알고 지속적으로 지원사업을 펼쳐온 문화예술위원회의 조직을 활용할 경우 그 비용과 인력을 최소화함으로써 공제사업의 운영에 효율성을 기할 수 있을 것임

□ 예술인 공제사업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법과 시행령 등에 대한 검토와 법안 마련이 중요함

- 예술인 공제사업에 대한 주요 법적 사항들은 기존 문예진흥법을 활용하여 문예진흥법상에 예술인의 복지증진과 공제사업을 위한 목적을 필두로 공제사업에 필요한 중요 사항들을 담도록 하였음
- 법안에는 문화예술위원회에서 공제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위원회 업무추가, 공제사업 가입자, 관리조직, 재원, 기타 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을 포괄적으로 담고 있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시행령에서 규정하고자 함

□ 이와 같은 예술인 공제사업 시행을 통해 문화예술인들이 겪고 있는 사각지대, 특히 노후소득보장에 있어서의 소득의 불충분성, 불연속성으로 인한 문제를 방지할 수 있음

- 노후 소득 불충분성은 60세 혹은 65세 이후 문화예술인들이 은퇴할 경우 국민연금 가입률이 낮은 현실에 따라 국민연금의 혜택을 받기 어렵고, 국민연금 가입자라고 하더라도 충분한 연금가입기간을 확보하기 어렵고 낮은 보험료 수준에 따라 낮은 급여를 수급하게 되어 노후 소득이 낮아질 수 있음
 - 따라서 예술인 공제사업을 통해 노후소득보장에 있어 소득의 부족현상 즉, 소득 불충분성을 일부나마 해소할 수 있을 것임
- 두 번째 문화예술인들은 일반 근로자들과 달리 소득활동이 주기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며, 소득이 불연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많은 예술인들이 연금의 사각지대에 놓여져 있음
 - 예술인 공제사업의 경우 예술인들의 직업적 특성을 고려한 유니버설공제(자유납 형식)형태로 제도설계가 이루어짐으로써 문화예술인들의 불연속적인 소득활동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음

□ 예술인 공제사업은 지난 시기의 많은 예술인들의 노력이 조금이나마 빛을 발하게

제7장 결론

된 것이라 할 수 있음

- 그러나 예술인 공제사업을 통해 예술인들이 원하는 모든 복지적 내용들을 담기에는 한계를 지니고 있음
 - 예술인들이 노후소득보장 다음으로 원하는 실업에 대한 지원은 예산과 기술적인 문제로 여기서는 담지 못하고 있음
 - 그밖에 주거교육·예술활동 등에 대한 지원 등 많은 복지사업들이 있을 수 있지만 단기간에 모든 것을 예술인 공제사업에서 시행하는 것은 무리라 할 수 있음
- 따라서 추가적인 복지사업들에 대해서는 예술인 공제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많은 예술인들이 공제사업에 동참할 경우 공감대가 형성되고 이를 통해 재원의 문제가 일정부분 해결될 경우 가능할 것으로 보임
- 예술인 공제사업의 모형은 사회보장의 사각지대에 놓인 예술인들 스스로가 사회적 위험에 대비한다는 점에서 다른 계층유형의 사람들에게 복지모델의 좋은 본보기가 될 것으로 보임
- 또한 예술활동, 창작이라는 공통된 목표하에 자신들의 분야에서 묵묵히 일을 하고 있던 많은 예술가들이 연대를 통해 경제적, 사회적 위험을 대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예술계의 통합과 연대감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임

□ 본 보고서는 예술인 공제사업을 위한 기초연구로 일부 연구에 있어서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할 수 있음

- 예술인 공제사업을 위한 하나의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것으로, 향후 추진단 혹은 기획단계에서 좀 더 많은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예술인들의 의견을 좀 더 수렴함으로써 알차고 완벽한 공제사업의 모형이 만들어질 것을 기대함

참고문헌

참고문헌

1. 국민연금공단(2009), 『국민연금통계연보 2008』 .
2. 김수환강길환 외(2002), 『소상공인공제제도 도입방안』 , 중소기업연구원.
3. 김원식이순재권순일(2004), 『국회의원 연금공제제도의 도입에 관한 연구』 , 춘계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학술대회.
4. 김태완이태진 외(2008), 『영화인 복지정책 효율화 방안』 , 한국영화인복지재단.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책08-27.
5. 문화관광부(2008), 『2007년 문화산업통계보고서』 .
6. 문화관광부.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2006), 『문화예술인실태조사』 .
7. 목수정(2006), 「프랑스의 예술인 사회보장제도 - 프랑스 공연예술비정규직(Intermittents du Spectacle)사례를 중심으로-」 , 민주노동당 정책연구원
8. 박경일(2008), 『사회복지정책론』 , 공동체.
9. 박영장-공혜영(2008), 『예술인공제회 설립에 대한 예술인인식 및 복지수요조사』 , 문화체육관광부.
10. 박영장-공혜영(2008), 『문화예술인공제회 설립을 위한 기초연구』 , 정책2008-25, 한국문화관광연구원.
11. 예술정책포럼(2007), 『예술인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포럼』 , 12월.
12. 이규석(2007), 『예술인 복지 증진을 위한 정책연구』 , 2007예술정책연구보고서, 예술경영지원센터.문화관광부.
13. 이용하(2009), 「한국의 국민연금과 예술인의 가입현황」 , 『독일 예술인사회보험제도 검토와 우리나라에의 시사점 도출을 위한 세미나』 , 한국보건사회연구원.독일 노동사회부 방한대표단.
14. 정강영-조현성-김영범-신효진(2003), 『예술인 사회보장제도 연구』 ,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15. 정문경(2005), 『국민연금기금 성과평가체계에 대한 국제성과평가기준(GIPS) 적용에 관한 연구』 , 정책 05-05, 국민연금연구원.
16. 조성한-김용하-석재은-성-류-건-식-박-영-정 외(2008), 『예술인 공제회 설립 및 운영방안 연구용역』 , 문화체육관광부.
17. 최진욱(2007), 「한국영화산업 실업급여제도 개선 방안」 , 『예술인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포럼』 자료집, 예술정책포럼.
18. 통계청(2008), 『2007 생명표』 .
19. 한국FPSB(2009), 『위험관리와 보험설계』 .
20. 황준욱-안주엽-이상만-김도하-김은경(2006), 『문화산업 전문인력 형성구조와 정책지원』 , 한국노동연구원.
21. 허 권(2006), 『유네스코 예술가지위에 관한 권고의 배경과 시사점』 , 『법학논문집』 , 제30집 제2호,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소.
22. 허은영(2006), 『문화예술인실태조사』 ,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23. 예단협(2008), 『형성 19년도 결산보고』 .

참고문헌

-
24. EU(2006), *The Status of Artists in Europe*.
 25. Eurostat(2007), *Eurostat Labour Force Survey*.
 26. Hellmark, Ann-Britt(2003), *Report highlights artists' social security problems*, European Foundation for the Improvement of Living and Working Conditions.
 27. Peschner, J.(2009), "The German Artist Social Insurance(Künstlersozialversicherung: KSV)", *International Seminar on The German Artist Social Insurance and Its Implications for Korea*, KIHASA · Ministry of Labour and Social Affairs of Germany.
 28. 한국은행, 홈페이지(www.bok.or.kr).

부록

- <부록 1> 예술인 복지관련 과거 논의 현황
- <부록 2> 예술인 공제 정관(안)
- <부록 3> 예술인 공제사업 약관(안)
- <부록 4> 직업분류 및 위험등급표

부록

〈부록 1〉 예술인 복지관련 과거 논의 현황

연도	내용
1981	예술인 의료보험조합 설립
1984	영화인복지재단 설립
2002	한국문화예술인복지조합 설립 추진 (민족문학작가회의, 한국문인협회, 민예총, 예총)
	문화예술인 복지조합 설립 공약(한나라당 16대 대선)
2003	전국문화예술노동조합 출범
2004	<새예술정책> ① 4대 보험 개선을 통한 예술인 복지 증진 ② 가칭 ‘한국예술인공제회’ 설립 운영 ③ 예술인의 사회적 신분보장을 위한 제도 도입
	예술인 공제회 제도 도입 공약(열린우리당 17대 총선)
	‘예술인 공제회 설립 및 운영지원 방안’을 중심으로 ‘예술인복지제도’ 도입 방안 제시 (문광위 이광철의원, 보건복지위 유시민의원)
2004	문화예술인의 최소생계 유지를 위한 법안 마련 공약 (민주노동당 17대 총선)
2005	연극인복지재단 출범
2005	전국영화산업노조 출범
2006	예술인복지방안 모색을 위한 세미나 (서울연극협회, 한국연극인복지재단)
2007	전국미술인노동조합 출범
2007	(재)전문무용수지원센터 설립
2007	전국영화산업노조 산별교섭 타결
2007	예술인 복지 증진을 위한 정책 포럼 (예술경영지원센터, 한국연극인복지재단, 전문무용수지원센터)
2008	영화인 노후 복지지원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 (한국영화인복지재단, 영화진흥위원회)
2008	예술인 복지법 제정을 위한 대토론회(한국연극인복지재단, 정병국의원)
2009	예술인 복지제도 도입을 위한 토론회

부록

<부록 2> 예술인 공제 정관(안)

1. 개요

- 예술인 공제사업 운영을 위한 정관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정관에 공제사업 관련 장을 추가하는 방법을 활용함
- 공제사업 법안 체계는 기존의 문화예술진흥법에 관련 조항을 추가 삽입하는 것으로 하고 있으며, 관련 조직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내에 설치하여 예술인 공제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이에 공제사업 관련 정관 또한 별도로 두는 것보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정관 내에 포함하는 것이 적절함.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정관 중 “제-장-” 다음에 공제사업 관련 “제-장 공제사업” 장을 추가하도록 하며,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함

2. 정관(안)

제○조 (목적) 위원회는 문화예술인의 창작여건 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문화예술인 공제사업을 관리·운영한다.

제○조 (회원) ①공제사업의 가입대상으로 분류되는 장르의 범위는 문예진흥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등 10개 분야에 종사하는 자로 한다.

②공제사업의 가입대상이 되는 직업의 범위는 문예진흥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장르에서 활동하고 있는 창작예술가, 실연예술가, 예술교육가, 예술활동 지원인력으로 하되, 예술교육가와 예술활동 지원인력은 다음 각 호의 경우로 한정한다.

1. 예술교육가는 ‘예술강사’의 직함으로 예술활동을 하면서 학교문화예술교육이나 사회문화예술교육에 종사하는 경우만을 포함하며, 대학의 예술학과 교수, 중·고등학교 예술교과 담당교사, 사설 예능학원 강사인 경우는 제외한다.
2. 예술활동 지원인력은 기획·경영인력이나 기술인력의 경우에는 피고용자의

부록

지위이든 프리랜서로 활동하든 관계없이 가입대상에 해당하지만, 행정관리인력은 예술사업체의 피고용자 지위에 있는 경우에만 포함한다.

③공제사업의 가입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속인 국공립 예술단체에 종사하는 자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정받은 전문예술법인·전문예술단체에 종사하는 자
3. 최근 3년간 1회 이상 심의를 거쳐 국고나 지방비 및 문예진흥기금을 보조받은 실적이 있는 단체에 소속된 자
4. 그 밖에 위원회에서 정한 자격심사에 합격한 자

④공제사업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가입절차에 의하여 위원회와 공제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최초의 공제금을 납입한 날에 그 자격을 취득한다.

⑤제3항 각 호의 구체적인 기준과 제4항의 공제계약 성립·유지 및 공제금 납부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공제사업약관으로 정한다.

제○조 (조직) ①위원회는 공제사업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하여 위원회 산하에 공제사업본부를 두고, 공제사업본부의 조직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공제운영위원회
2. 회원자격심사위원회
3. 공제사업팀
4. 회원관리팀
5. 복지급여팀
6. 기금관리팀
7. 전산정보팀

②제1항 제1호의 공제운영위원회에 대한 사항은 다음의 제○조에 따른다.

③제1항 제2호의 회원자격심사위원회는 공제사업 가입희망자 중 명확히 예술인임을 증명하기 어려운 자를 대상으로 자격을 심사하는 조직으로서, 본 위원회와 산하 위원회로 구성하며 각 위원회의 구성 및 역할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본 위원회는 공제사업 가입희망자에 대한 산하위원회의 결과를 토대로 가입 여부를 결정하거나 산하위원회 결정에 불복한 가입희망자에 대해 추가심사를

부록

하는 역할을 하며, 본 위원회의 구성과 의결은 다음의 각 목과 같다.

가. 본 위원회는 공제운영위원회 위원 중 1인이 위원장을 맡고, 공제사업본부장 1인과 예술관련 전문가 2인을 포함하여 총4인으로 구성한다.

나. 본 위원회에서 의안에 대한 의결은 위원 과반수 참석에 과반 이상이 찬성한 경우 예술인 공제사업의 가입자로 인정한다.

다. 산하위원회의 판정결과에 불복하여 재심사를 요청한 자는 본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2. 산하위원회는 예술인 공제사업 가입신청자가 작성한 신청서와 지난 3년간의 예술활동 실적, 작품, 추천서 등을 기준으로 공제사업가입 여부를 판정하는 역할을 하며, 산하위원회의 구성은 다음의 각 목과 같다.

가. 산하위원회는 공제사업 가입대상 장르별 10개 소위원회를 둔다.

나. 각 소위원회는 각각의 장르별 전문가 3인으로 구성한다.

④제1항 제3호의 공제사업팀은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공제상품 및 사업 총괄
2. 장단기적 공제사업운영계획 수립
3. 공제운영위원회 지원
4. 공제사업 약관 설계, 변경 및 개정에 관한 공제운영위원회 지원
5. 공제사업관련 국회 및 정부부처에 대한 대외협력지원
6. 콜센터 운영지원, 지역위원회 및 지역문화재단과의 업무협약의 추진
7. 추가적인 예술인 복지후생관련 상품개발
8. 공제사업 및 상품에 대한 홍보 방안 마련
9. 장기적인 재정확보 방안 마련

⑤제1항 제4호의 회원관리팀은 회원자격심사위원회를 지원하며,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회원 가입 및 탈퇴 관리 총괄
2. 공제금 납부·연체 등 회원관리
3. 회원자격심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접수·판정, 공제사업팀 연계, 결과 통보
4. 재무관리를 두고 가입자들에 대한 재무관리 및 상담
5. 회원 확충방안 수립

부록

⑥제1항 제5호의 복지급여팀은 다음 각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공제사업 기금에 대한 준비금 적립
2. 회원에 대한 적립 및 보장성 상품 공제금 등 지급과 대출
3. 회계장부 및 전표 관리와 정산·결산
4. 매년 변동되는 회원명부를 기준으로 보장성 보험 가입 지원
5. 기타 추가 회원복지사업 시행시 관련 사업 담당

⑦제1항 제6호의 기금관리팀은 기금관리운용지침에 따라 공제부금 및 정부출연금 을 다음의 각 호와 같이 관리·운용하며, 공제부금 자산운용 평가결과를 공제사업운 영위원회에 보고한다.

1. 자산운용 총괄
2. 자산운용전략 기획
3. 신규투자처 발굴
4. 투자기획
5. 주식운용
6. 대체투자
7. 자금 및 실적 관리

⑦제1항 제7호의 전산정보팀은 공제사업 가입-징수-급여 관련 전산시스템과 정보 관리망을 운영한다.

제○조 (공제운영위원회) ①예술인공제사업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 하기 위하여 공제사업본부에 공제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두 며 다음의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예술인공제사업의 사업과 업무를 위한 기본 및 세부계획 수립과 변경 등에 관한 사항
2. 공제사업약관의 수립, 개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예술인공제사업 공제부금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4. 예술인공제사업 사업 및 결산보고서에 관한 사항
5. 가입자들의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의결
6. 기타 공제사업 운영·집행을 위한 중요한 사항

②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1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다음과

부록

같이 선정한다.

1.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 중 선정한 위원장 1인
 2. 정부대표 2인(문화체육관광부 등 2인)
 3. 공제사업 가입자 대표 5인
 4. 전문가 등 3인
- ③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1.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위원 중 선임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2.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4. 기타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④운영위원회는 산하에 3인 이내의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다음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한다.
1. 소위원회는 매년 공제기금과 책임준비금의 운용상황에 대해 평가하고, 이를 운영위원회에 서면으로 보고한다.
 2. 소위원회는 매 5년에 한번씩 공제기금의 적립, 투자방법, 기금활용 등에 대해 성과평가를 실시한다.
- ⑤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번에 한해 연임할 수 있음

제○조 (사업) ① 예술인 공제사업은 다음의 각호와 같다.

1. 가입자에 대한 공제금의 지급
 2. 자금 조성을 위한 사업
 3. 그 밖에 가입자의 복지후생을 위한 사업
- ②제1항 각 호 사업의 구체적인 사항은 공제사업 약관으로 정한다.

제○조 (자금조성 및 관리) ①공제사업 자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공제사업 가입자가 납부하는 공제부금
2.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출연금 및 제2항에 따른 납부금

부록

3.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의 출연금 및 제3항에 따른 납부금
 4. 공제사업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문예진흥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문화예술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하는 보조금의 일부를 공제하여 문화예술인공제에 납부하여야 한다.
 - ③문화예술진흥기금 또는 문예진흥법 제4조에 따른 지방문화예술위원회나 재단법인의 보조금을 지원받는 자와 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 받은 보조금의 일부를 문화예술인공제에 납부하여야 한다.
 - ④위원회는 문예진흥법 제36조의 3의 제3항에 의한 예술인공제사업에 필요한 기금을 위원회의 다른 수입금과 구분하여 수입과 지출을 관리하여야 한다.
 - ⑤안정적 공제기금의 조성을 위해 한시적으로 정부보조금을 지급하고, 문화예술진흥기금 중 문화예술단체에 지원되는 보조금의 일부를 회원의 공제료를 보조하는데 사용하되 구체적인 비율은 예술인공제사업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 ⑥위원회는 결산기마다 장래에 지급할 공제금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을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계상 및 별도 적립하여야 한다.
 1. 공제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지급하게 될 예술인공제금에 충당하기 위한 준비금
 2. 급격한 경기변동 등에 의한 위험률의 변화가 발생한 경우에 예술인공제금의 지급에 충당하기 위한 준비금

<부록 3> 예술인 공제 약관(안)

제1관 공제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1조 (공제계약의 성립)

- ① 예술인공제계약은 공제계약자의 청약과 공제사업자인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승낙으로 체결되며 공제계약의 체결로써 공제에의 가입이 이루어집니다(이하 예술인공제계약은 계약, 공제계약자는 계약자,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위원회라 합니다).
- ② 계약의 청약을 하려면 부금액을 정하여 이에 상당하는 청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 청약금은 계약이 체결된 해당 월의 부금으로 충당됩니다.
- ③ 위원회는 계약의 청약을 받은 때에는 청약일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를 하여야하며 승낙한 때에는 공제가입증서를 교부하여 드립니다.
- ④ 위원회가 계약의 청약을 승낙한 때에는 청약금을 납부한 날을 계약일로 보며 그 날부터 계약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⑤ 위원회가 청약금을 받고 승낙을 거절한 경우에는 거절통지와 함께 받은 금액을 돌려드리며, 청약금을 받은 기간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정한 이율을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2조(청약의 철회)

- ① 계약자는 청약을 한 날 또는 청약금을 납부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② 위원회는 제1항에 의한 계약자의 청약철회 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미 납부한 청약금을 돌려드리며, 청약금 반환이 지체된 기간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정한 이율을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예술인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분야에 종사하는 자를 말합니다.

2. 부금

부록

계약자가 이 계약에 따라 위원회에 납부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3. 부금액

계약자가 위원회 납부하기로 약정한 부금액을 말합니다.

4. 부금납부회수

부금의 납부를 마친 회수를 말합니다. 다만, 미리 납부한 부금의 회수를 제외합니다.

5. 부가공제기준일

계약일의 다음 날부터 매 1년이 되는 각 날을 말합니다.

6. 부금납부기일

계약자가 부금을 납부하기로 지정한 날을 말합니다.

7. 공제금

제15조의 공제사유가 발생한 경우 위원회가 계약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8. 해약환급금

계약의 해지에 따라 위원회가 계약자에게 환급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제4조(공제가입대상)

① 공제에 가입하려면 예술인이면서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속인 국공립 예술단체에 종사하는 자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인정받은 전문예술법인·전문예술단체에 종사하는 자
3. 최근 3년간 1회 이상 심의를 거쳐 국고나 지방비 및 문예진흥기금을 보조받은 실적이 있는 단체에 소속된 자
4. 그 밖에 위원회에서 정한 자격심사에 합격한 자

② 제1항 4호에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회의 자격심사위원회에서 정합니다.

제5조(공제가입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4조(공제가입대상)에 불구하고 공제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1. 부금의 납부를 12개월 이상 연체한 자
2.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제금 또는 해약환급금의 지급을 받았거나 지급 받으려고 하여 위원회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부록

제6조(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 ① 위원회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에게 약관을 드리고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 ② 위원회가 제1항에 의해 제공될 약관을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아니하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아니한 때 또는 계약 체결 시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날인(도장을 찍음))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자는 청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③ 제2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위원회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부한 부금을 돌려드리며, 부금을 받은 기간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정한 이율을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7조(계약해지)

- ① 계약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② 위원회는 다음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가 부금의 납부를 12개월 이상 연체 한 때
 2. 계약자가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공제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으려고 한 때

제2관 공제부금의 납부(계약자의 주된 의무)

제8조(부금액)

공제사업의 1회 부금액은 최저 20,000원부터 10,000원단위로 합니다.

제9조(부금의 납부)

- ① 계약자는 부금액을 처음 위원회와 약정한 때 부금납부기일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부금납부기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 영업일을 부금납부기일로 합니다.
- ② 부금액(부금을 분기별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기의 부금액)은 이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없습니다.
- ③ 계약자는 부금납부기일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10조(부금액의 변경)

- ① 계약자가 부금액의 증액을 신청한 경우 위원회는 이를 승낙하여야 합니다.
- ② 계약자가 부금을 3개월 이상 납입한 후 개인사정 등을 사유로 부금액의 감액을 신청한 경우 위원회는 이를 승낙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금액을 감액한 후 2년 이내에는 다시 감액할 수 없습니다.

제11조(부금납부의 중지)

위원회는 계약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부금을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각호에서 정하는 기간의 범위 내에서 부금의 납부를 중지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사유가 종료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 중지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1. 재해 : 6개월
2. 입원치료 : 6개월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절차의 계속(繫屬): 1년

제12조(부금선납)

계약자는 신청에 의하여 해당 연도분의 부금을 미리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6개월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제13조(부금연체의 통지)

위원회는 계약자가 일정기간 부금을 연체한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그 연체사실을 알려 드립니다.

제14조(사후부금의 반환)

위원회는 계약자가 제15조 공제사유가 발생한 후에 납부한 부금이 있을 경우에는 그 부금을 납부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정한 이율을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반환하여 드립니다.

부록

제3관 공제금의 지급(위원회의 주된 의무)

제15조(공제사유)

① 위원회는 계약자에게 다음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공제금을 지급합니다.

1. 사망
2. 질병 또는 부상에 의해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
3. 만 60세 이상으로 부금납부회수가 120회 이상인 계약자의 공제금 지급청구

제16조(공제금)

① 위원회가 지급하는 공제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의 합계액으로 합니다.

1. 제15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공제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가입자가 납부한 공제부금과 각종기금을 통한 보조금액의 합계액
2. 부가공제기준일에 제15조의 공제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제1호를 적용한 금액에 각 부가공제기준일이 속하는 연도의 부가지급률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

② 제1항 제2호의 부가지급률은 매년마다 “납입공제금과 보조금액”의 총액, 공제자금의 운용수입액·예상액 및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해당연도의 전년도말까지 위원회가 정하며 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알려드립니다.

제17조(공제금의 지급을 받을 자)

① 공제금의 지급을 받을 자는 제1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계약자로 하고, 동항 제1호의 경우에는 계약자의 상속인으로 합니다.

② 공제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문화예술진흥법 제44조(수급권의 보호)(안)에 의하여 이를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18조(결격)

① 고의의 범죄행위로 계약자를 사망하게 한 자는 공제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계약자의 사망 전에 그 사망에 의하여 공제금을 지급받을 자를 고의의 범죄행위로 사망하게 한 자도 또한 같습니다.

② 공제금의 일부를 지급받을 자가 제1항의 범죄행위자인 경우에는 그 자에 해당하는 공제금을 제외한 나머지 공제금을 다른 공제금을 지급받을 자에게 지급합니다.

제19조(공제금 등의 반환)

위원회는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공제금 또는 해약환급금의 지급을 받은 자에게 해당 공제금 등을 반환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제20조(사망의 인정)

제15조 제1항 제1호(사망)에는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하며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를 포함 하며,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등 민법 제27조(실종의 선고) 제2항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 또는 재해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정부기관이 인정하여 관공서의 사망보고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경우에는 그러한 사고가 발생한 때를 사망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제21조(해약환급금)

- ① 계약이 해지된 경우 위원회는 계약자에게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 ② 해약환급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으로 합니다.
 1. 제7조(계약해지) 제1항 또는 제2항 제1호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부 가입자 납부 공제부금에 각종기금을 통한 보조금액과 기준이자율에 따른 금액
 2. 제7조(계약해지) 제2항 제2호에 따라 위원회가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제1호에 따라 산정된 금액의 80%

제4관 공제금 지급 등의 절차**제22조(기준이율의 결정 및 공시)**

- ① 이 계약에 관한 지급이율 등 제(諸) 이율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이율(이하 “기준 이율”이라고 합니다)은 위원회가 정합니다.
- ② 기준이율은 「매 분기 초일」에 정하여 매 3개월간 적용합니다. 다만, 시장금리가 급격히 변동하여 기준이율과의 금리차가 현격하게 된 경우에는 적용기간 중에도 기준 이율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③ 기준이율의 최저한도(이하 “최저보증이율”이라고 합니다)는 위원회에서 정하는 기

부록

준에 따릅니다.

④ 위원회는 기준이율을 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알려드립니다.

제23조(공제사유 발생의 통지)

계약자(계약자에게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공제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 등)는 제15조의 공제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24조(주소변경통지)

① 계약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변경내용을 위원회에 알려야 합니다.

② 제1항에서 정한대로 계약자가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자가 위원회에 알린 최종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시일이 지난 때에 계약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봅니다.

제25조(공제금 등 청구 시 구비서류)

① 수급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공제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위원회 양식)
2. 공제사유 등을 증명하는 서류(사망진단서, 질병·부상진단서, 가족관계등록부의 제 증명서, 제적등본 등)
3. 공제가입증서
4.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5. 기타 수급권자가 공제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② 병원 또는 의원에서 발급한 제1항 제2호의 사망진단서 등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국외의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26조(공제금 등의 지급)

① 공제금 또는 해약환급금은 연금 혹은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부록

- ② 위원회는 제25조(공제금 등 청구 시 구비서류)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5영업일 이내에 공제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공제금의 경우 공제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영업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 ③ 위원회는 공제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공제사유 발생일 또는 계약해지일의 다음 날부터 공제금 또는 해약환급금의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정한 이율을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 ④ 계약자 또는 수급권자는 제1항의 공제사유의 조사와 관련하여 의료기관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찰서 등 관공서에 대한 위원회의 서면에 의한 조사요청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실 확인이 끝날 때까지 위원회는 공제금 지급지연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⑤ 위원회가 공제사유의 조사 및 확인을 위하여 제2항의 지급기일 이내에 공제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사유, 지급예정일에 대하여 계약자 또는 수급권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드립니다.

제27조(공제금의 분할지급)

-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제26조(공제금등의 지급) 제1항에 불구하고 계약자의 청구에 의하여 공제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할방식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1. 분할방식으로 지급받으려는 공제금액이 5천만원 이상일 것
 2. 계약자에게 제15조 제1항 제3호의 공제사유가 발생한 날에 그 자가 만 60세 이상일 것
- ② 계약자가 공제금의 일부액을 분할방식으로 지급받으려는 경우 제1항의 청구는 분할방식으로 지급받으려는 공제금(이하 “분할지급대상액”이라 합니다)을 정하여야 합니다.
- ③ 분할방식에 의한 공제금의 지급은 매년 3월, 6월, 9월 및 12월에 합니다.
- ④ 분할방식에 의한 공제금의 지급기간(이하 “분할지급기간”이라 합니다)은 계약자의 선택에 의하여 제1항의 청구 후 최초의 지급일로부터 5년, 10년 또는 15년으로 합니다.
- ⑤ 분할공제금은 공제금(공제금의 일부액을 분할방식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분할지

부록

급대상액)을 분할지급횟수로 균등분할한 금액으로 하며, 분할공제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공제사유 발생일의 다음 날부터 분할공제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정한 이율을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⑥ 제1항에 따라 공제금의 일부액을 분할방식으로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당해 공제금 전액에서 분할지급대상액을 차감한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제28조(분할공제금의 일괄지급)

① 위원회는 공제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할방식으로 지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각 호에서 정하는 자에게 잔여 분할공제금을 일괄하여 지급합니다.

1. 계약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상속인
2. 계약자가 제11조 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유에 해당하여 잔여분할공제금의 일괄지급을 청구한 때에는 그 계약자

② 제1항의 잔여 분할공제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공제사유 발생일의 다음 날부터 일괄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정한 이율을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29조(계약내용의 교환)

위원회는 계약의 체결 및 관리 등을 위한 판단자료로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약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공제사업자보험회사금융회사 및 공제보험금융관련 단체 등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회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등)의 규정을 따릅니다.

1. 계약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계약일, 부금 등 계약내용
3. 공제금과 각종 급부 금액 및 지급사유 등 지급내용
4. 계약자의 질병·부상에 관한 정보

부록

제5관 분쟁조정 등

제30조(분쟁의 조정)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계약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은 위원회에 설치된 「예술인공제운영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31조(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은 위원회의 본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위원회와 계약자가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제32조(상해보험의 가입)

① 위원회는 계약자의 상해사망, 상해후유장해 및 상해의료 발생시에 계약자가 추가 보험금의 지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보험계약조건으로 단체보험에 가입하여 드립니다.

1. 보험기간은 공제계약일 24시부터 탈퇴일(공제사유 발생일 및 공제계약의 해지일을 말합니다)까지로 합니다.
2. 보험가입금액은 상해사망, 상해후유장해, 상해의료비를 기준으로 매년 위원회가 정합니다.
3. 기타 보험계약조건은 위원회가 정하며 보험기간 중에 변동 될 수 있습니다.

② 계약자가 부금납부를 연체한 경우에는 제1항의 단체보험계약이 해지되거나 재가입이 안될 수 있습니다.

제33조(준거법)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한민국 법령을 따릅니다.

부록

<부록 4> 직업분류 및 위험등급표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위험 등급
1 행정, 금융, 사무관리, 법률 관련 분야	11 행정, 금융, 사무관리, 법률 관련 전문가	111 경영 및 사무 관리자	1113 교육, 의료, 종교, 문화 예술, 스포츠, 사회복지 관련 관리자	11134A 문화예술기관단체 관리자	1
2 자연과학, 공학, 컴퓨터 및 통신 관련분야	21 자연과학, 공학, 컴퓨터 및 통신 관련 전문가	212 공학 관련 전문기술자 (엔지니어, 컴퓨터 및 통신 제외)	2122 건축가	21221B 건물건축가 21222B 조경건축가 21229B 기타 건축가 및 도시계획	2 2 2
3 교육, 의료, 종교, 문화예술, 스포츠, 사회복지 관련 분야	31 교육, 의료, 종교, 문화예술, 스포츠, 사회복지 관련 전문가	311 교육 전문직 종사자	3111 대학교수	31110A 대학교수	1
			3112 대학강사(시간강사)	31120A 대학강사(시간강사)	1
			3113 중고등학교 교사	31130A 중고등학교 교사	1
			3114 초등학교 교사	31140A 초등학교 교사	1
		312 인문사회 연구직 종사자	3120 인문 사회 과학 관련 연구소 연구원	31201A 인문 사회 과학 관련 연구소 연구원	1
		315 문화예술 관련	3151 학예사(큐레이터)	31512A 학예사(큐레이터)	1

부록

		전문가			
	3152	작가 및 관련 전문직 종사자	31521A	작가	1
			31522A	평론가	1
			31523A	도서 및 잡지 편집인	1
			31524A	카피라이터(광고문 작성가)	1
			31525A	번역가	1
			31526A	통역가	1
			31527A	칼럼리스트	1
			31529A	기타 작가 및 관련 전문직 종사자	1
	3154	창작 및 공연 예술 전문직 종사자	31541A	미술가	1
			31542B	조각가	2
			31543A	만화가 및 애니메이터	1
			31544A	사진작가	1
			31545A	작곡가 및 지휘자	1
			31546A	성악가	1
			31547A	기악 연주자	1
			31548A	국악인	1
			31549A	안무가 및 무용가	1
	3155	디자이너	31551A	제품 디자이너	1
			31552A	패션 디자이너	1
			31553C	인테리어 디자이너	2

부록

					31554A	시각 디자이너	1	
				3156	감독 및 연출자	31561B	방송 프로듀서(PD)	2
						31562B	영화 감독	2
						31563B	CF 및 뮤직비디오 감독	2
						31564B	무대감독(연극, 오페라, 뮤지컬)	2
				3157	아나운서 및 리포터	31571A	방송 아나운서	1
						31572A	방송 리포터	1
						31573A	성우	1
		323	방송공연 관련 전문가	3231	연예인	32311C	연기자(배우)	2
						32312C	코미디언 및 개그맨	2
						32313C	연예프로 진행자 및 디스크자키	2
						32314C	대중가요 가수	2
						32315C	대중업소 악사	2
						32316C	대중업소 무용수	2
				3232	영화, 연극 및 방송관련기사 (촬영, 음향, 조명 등)	32321B	촬영감독 및 기사	2
						32322B	음향감독 및 기사	2
						32323B	조명감독 및 기사	2
						32324B	녹음기사	2
						32325B	무대기사	2
						32326A	영상기사	1
				3233	연예인 매니저	32330C	연예인 매니저	2

부록

				3239	기타 연예 및 방송 공연 관련직 종사자	32391C	마술사	2
						32392E	곡예사, 차력사	3
						32393C	엑스트라(대역배우)	2
						32394E	스턴트맨	3
8	화학, 섬유, 식품, 설비 및 기타제조 (기능, 생산직 관련 분야)	83	화학, 섬유, 식품, 설비 및 기타 숙련 기능직 종사자	834	정밀 기구 및 공예, 유리관련 숙련 기능직 종사자	8345	공예원	2
						83451C	목공예원	2
						83452C	등죽공예원	2
						83453C	인장공예원	2
						83454C	종이공예원	2
						83455E	석공예원	3
						83456C	조화공예원	2
						83457C	양초공예원	2
						83458C	자개세공원	2

<적용상의 유의사항>

1. 1급 또는 2급에 해당되는 직업종사자가 실질적으로 2급 또는 3급의 위험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2급, 3급의 보험료(율)를 각각 적용할 수 있다.
2. 중복적용이 가능한 직업분류에 대하여는 그 중 높은 위험등급을 적용한다.
3. 위 표는 손해보험사와 생명보험사에서 공통적으로 적용하는 "특종보험참조 순보험료율(보험개발원, 2009.4)"에 따른 것이고 실제 가입상담과정에서 개별적으로 변동될 수 있음